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072-10

경제백서 2017

기획재정부

발간사

2017년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딛고 새 정부가 출범한 해이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원년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물적투자 중심의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계속 저하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2017년 초부터 북핵 이슈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현안,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또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규제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등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불공정 거래관행·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기반 마련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고, 대외신인도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 성장잠재력 둔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혁신을 전 방위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가시적 민생 개선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62년 첫 발간 이후 57번째 발간되는 이번 경제백서가 우리 경제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원고 집필에 참여해주신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목 차

제1장 2017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 1

제2장 2017년 거시경제 개관 ····· 7

제1절 세계경제동향 ····· 9

1. 개관 ····· 9
2. 선진국 경제동향 ····· 12
3. 신흥국 경제동향 ····· 16
4.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 ····· 19
5. 국제금융시장 동향 ····· 21

제2절 국내경제동향 ····· 25

1. 개관 ····· 25
2. 경제성장 ····· 27
3. 소비 및 투자 ····· 31
4. 수출입·경상수지 ····· 34
5. 고용 ····· 43
6. 물가 ····· 46
7. 재정 ····· 48
8. 금융시장 ····· 50
9. 외환시장 ····· 56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 59

제3장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 65

제1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67

제2절 소득주도 성장 ····· 70
1.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 ····· 70
(1)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70
(2) 핵심생계비 경감 ····· 73
① 주거비 ····· 73
② 의료비 ····· 74
③ 교통비 ····· 75
④ 통신비 ····· 76
⑤ 교육비 ····· 77
2. 사회안전망 확충 ····· 78
3. 교육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 ····· 82
제3절 일자리 중심 경제 ····· 86
1. 일자리 정책 로드맵 수립 ····· 86
2. 일자리 카라반 ····· 91
3.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 94

제4장 혁신성장 ····· 97
제1절 산업생태계 혁신 ····· 99
제2절 혁신성장 거점 구축 ····· 104
제3절 규제혁신 ····· 109
제4절 혁신자본·혁신안전망 확충 ····· 114
제5절 4차 산업혁명 대응 ····· 118

제5장 공정경제 ····· 123

제1절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125

제2절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130

제3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 133

제4절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 137

제5절 사회적 경제 활성화 ····· 141

제6장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 145

제1절 경제활력 제고 ····· 147

제2절 대외 건전성 관리 ····· 151

제3절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157

제4절 부동산시장 안정화 ····· 162

제5절 가계부채 관리 강화 ····· 166

제6절 산업·기업 구조조정 ····· 170

제7장 2018년 예산 ····· 175

제1절 2018년 예산 편성 ····· 177

1. 2018년 예산의 모습 ····· 177
2. 2018년 중점 추진과제 ····· 182

제2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194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94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196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 199

제8장 2017년 세법개정안 ····· 201

제1절 세법개정 기본방향 ····· 203

제2절 일자리 지원 ····· 204

제3절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210

제4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218

제9장 재정혁신 가속화 ····· 229

제1절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 231

1. 양적 지출구조조정 ····· 231
2. 질적 지출구조조정 ····· 233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235

제3절 재정사업 관리 강화 ····· 237

제4절 재정정보 공개 확대 ····· 242

제5절 국민참여예산제도 시범 도입 ····· 247

제10장 국고 관리 패러다임 전환 ····· 251

제1절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 253

제2절 조달제도 혁신 ····· 259

제3절 국고채 시장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 262

제11장 공공기관 혁신 ····· 267

제1절 공공성·효율성 조화 ····· 269

제2절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 274

제3절 채용비리 엄정대응 등 윤리경영 확립 ····· 279

제12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 283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 285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 ····· 285
2.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한 신시장 진출 확대 ····· 288
3.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 지원 ····· 292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 295

1. 아시아 및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 ····· 295
2. 상생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296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 300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 300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 303
3.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 ····· 306

❖ 부 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 311
2. 주요 경제 통계 ····· 337

표 목차

〈표 2-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 11
〈표 2-2〉 미국경제 주요지표 ····· 13
〈표 2-3〉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 14
〈표 2-4〉 일본경제 주요지표 ····· 15
〈표 2-5〉 중국경제 주요지표 ····· 16
〈표 2-6〉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 17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18
〈표 2-8〉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 19
〈표 2-9〉 주요 비철금속·곡물 가격 추이 ····· 20
〈표 2-10〉 주요국 환율절상률(미달러화 대비) ····· 24
〈표 2-11〉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 26
〈표 2-12〉 경제활동별 성장률 ····· 27
〈표 2-13〉 지출항목별 성장률 ····· 28
〈표 2-1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 28
〈표 2-15〉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 29
〈표 2-16〉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 29
〈표 2-17〉 GDP 디플레이터 ····· 30
〈표 2-18〉 총저축률 및 투자율 ····· 30
〈표 2-19〉 소비 증가율 ····· 31
〈표 2-20〉 부문별 가계소비 ····· 32
〈표 2-21〉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33
〈표 2-22〉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33
〈표 2-23〉 수 출 ····· 34
〈표 2-24〉 수 입 ····· 35
〈표 2-25〉 연도별 무역수지 ····· 35
〈표 2-26〉 품목별 수출 ····· 36
〈표 2-27〉 품목별 수입 ····· 37
〈표 2-28〉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 38

〈표 2-29〉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 39
〈표 2-30〉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 40
〈표 2-31〉 경상수지 ····· 41
〈표 2-32〉 상품수지 ····· 42
〈표 2-33〉 서비스수지 ····· 42
〈표 2-34〉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 43
〈표 2-35〉 취업자 증감 ····· 45
〈표 2-36〉 주요 고용지표 ····· 46
〈표 2-37〉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 48
〈표 2-38〉 '17년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부채 비율 ····· 49
〈표 2-39〉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 51
〈표 2-40〉 주식시장 동향 ····· 52
〈표 2-41〉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유가증권) 추이 ····· 53
〈표 2-42〉 금융기관 수신 추이 ····· 54
〈표 2-43〉 기업자금사정 ····· 55
〈표 2-44〉 기업자금조달 ····· 56
〈표 2-45〉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 57
〈표 2-47〉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 59
〈표 2-48〉 2017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 59
〈표 3-1〉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추이 ····· 72
〈표 3-2〉 일자리 카라반 현장방문 일정 ····· 92
〈표 4-1〉 혁신도시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 105
〈표 4-2〉 유연한 입법방식 유형 ····· 111
〈표 4-3〉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 118
〈표 4-4〉 혁신성장동력 ····· 121
〈표 5-1〉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 133
〈표 5-2〉 순환출자 고리수('17.12.31. 기준) ····· 134
〈표 5-3〉 사회적경제 진출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 과제 ····· 143

〈표 6-1〉 외채 현황 추이 ····· 152
〈표 6-2〉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 155
〈표 6-3〉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157
〈표 6-4〉 국내 우편요금 조정내역 ····· 158
〈표 6-5〉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 ····· 158
〈표 6-6〉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 162
〈표 6-7〉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164
〈표 6-8〉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중과 ····· 164
〈표 6-9〉 8.2 대책 LTV·DTI 규제 비율 ····· 165
〈표 6-10〉 가계부채 동향 ····· 166
〈표 6-11〉 기업 경영지표 추이 ····· 170
〈표 6-12〉 2017년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 171
〈표 6-13〉 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 171
〈표 7-1〉 2018년 총수입 전망 ····· 178
〈표 7-2〉 2017년 총지출 규모 ····· 179
〈표 7-3〉 재정수지 ····· 180
〈표 7-4〉 국가채무 ····· 180
〈표 7-5〉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 181
〈표 7-6〉 중기 재정수입 전망 ····· 196
〈표 7-7〉 중기 재정지출 계획 ····· 197
〈표 7-8〉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전망 ····· 198
〈표 8-1〉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금액 ····· 204
〈표 8-2〉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 205
〈표 8-3〉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 210
〈표 8-4〉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 218
〈표 8-5〉 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219
〈표 9-1〉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주요 성과 ····· 234
〈표 9-2〉 AHP 평가체계 조정 연혁(건설공사 사업) ····· 241
〈표 9-3〉 설문조사 결과 및 '18년 예산안 반영사업 ····· 248

〈표 10-1〉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 ····· 262
〈표 10-2〉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 ····· 263
〈표 10-3〉 2017년 주요 추진 정책 ····· 265
〈표 11-1〉 사회적 가치 배점 변화(공기업 기준) ····· 271
〈표 11-2〉 '18년도 공공기관 증원 현황 ····· 275
〈표 11-3〉 2016년 비정규직 현황 ····· 276
〈표 11-4〉 비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 277
〈표 11-5〉 1단계 기관 비정규직 현황('16년말 기준) ····· 277
〈표 11-6〉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17년말 기준) ····· 278
〈표 11-7〉 공공기관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 ····· 281
〈표 12-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7.12월 기준) ····· 286
〈표 12-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 297
〈표 12-3〉 2017년 G20 주요의제 ····· 300
〈표 12-4〉 2017년 G20 관련 회의 일정 ····· 301

그림 목차

[그림 2-1] VIX 및 CDS프리미엄 ····· 21
[그림 2-2] 신흥국·선진국 MSCI 및 주요국 금리 ····· 23
[그림 2-3] 장단기 금리 추이 ····· 51
[그림 2-4] 회사채 금리 추이 ····· 51
[그림 2-5] 주가지수 추이 ····· 53
[그림 2-6] KOSPI지수·외국인 유가증권 순매수 ····· 53
[그림 2-7] 2017년중 원/달러 - 원/엔 환율 동향 ····· 58
[그림 4-1] 지역별 성장 거점군 및 혁신산업 안(예시) ····· 106
[그림 4-2]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 109
[그림 4-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 110
[그림 4-4] 벤처투자액 ····· 114
[그림 4-5] 혁신모험펀드 ····· 116
[그림 4-6] 벤처투자 확대 및 성장과실 공유 ····· 116
[그림 5-1]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 전략 ····· 141
[그림 9-1] 국가채무의 비교 ····· 235
[그림 9-2] 재정정보 충실성 제고 ····· 244
[그림 9-3] 맞춤형 정보 확대 ····· 245
[그림 9-4] 재정정보 접근성 개선 ····· 246

01

2017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

제 1 장

2017년 우리경제의 종합 평가[1)]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세 지속

2017년 우리 경제는 중국 등과에 통상마찰, 북한 리스크,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경제 회복, 추경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3.1% 성장하며 3년만에 3%대의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부문별로는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와 일자리 추경 등을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2.5→2.6%)된 가운데, IT업황 호조 등에 따른 기업 투자여건 개선으로 설비투자도 큰 폭 증가하였다.(△1.0→14.6%)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토목건설이 부진하며 증가세가 축소(10.3→7.6%)되었고,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한 5,737억불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고용시장은 조선 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고용 부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건설업 고용 호조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전년대비 32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도 6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 리스크와 중국과의 마찰, 美 금리인상과 브렉시트, 가계부

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산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대내외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구조조정·가계부채 등 취약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하였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는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온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네가지 틀을 중심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위해 가계의 실질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고, 사회안전망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일자리 중심 경제 구축을 위해 고용친화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였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해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여 우리경제가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 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수요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성장,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의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반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하여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소득주도성장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였다. 우선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재정을 통해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갔다.

실업, 빈곤 등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와 EITC 확대 등을 병행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실업안전망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 혁신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도 병행 추진하였다.

정부는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화 구조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일자리 중심 경제' 구축에도 힘썼다.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는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투자 유치제도를 통합·개편하고, 지역별 일자리 창출 거점을 구축하여 세제와 금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비정규직 차별행위를 철폐하고,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혁신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람중심 투자'와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할 조건이 '생산성 제고'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성장'을 추진하였다. 협력과 혁신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고, 고부가 서비스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한편,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장의 기본전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신산업·융합서비스 창출 및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지역별 맞춤형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와 진입장벽을 재검토하고, 특정지역에 대해 과감한 맞춤형 규제개혁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포용적 대외개방 및 전략적 해외진출 등 대외경제정책 차원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 FTA의 전략적 고도화 등 새정부 통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40% 달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정경제

소득·일자리·혁신성장은 공정경제의 기반위에서만 작동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하기로 하였다.

우선 시급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을 추진하였다.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하였다. 협력이익배분제,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협력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기업-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담합을 엄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대주주-소액주주간에 있어서도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

02

2017년
거시경제 개관

제 2 장

2017년 거시경제 개관

제1절 세계경제동향

1. 개 관[2)]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3.3%)에 비해 크게 상승한 3.8%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저성장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유로 등 선진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신흥국도 중국과 브라질·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의 회복세가 강화되며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회복세를 보였다.

선진국 경제는 2.4% 성장하며 전년(1.7%)보다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미국은 기업투자가 크게 개선되며(△1.3→4.8%) 성장세 회복(1.6→2.2%)을 이끌었으며, 유로존도 양호한 고용상황과 내수를 바탕으로 회복세(2.0→2.4%)를 보였다. 일본경제는 주택투자는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회복세가 확대(1.0→1.9%)되었다.

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신흥국 경제는 4.7% 성장하며 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경제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6.7→6.8%)되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는 국재원자재가격 상승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국제유가는 상반기 중 셰일오일 생산 증가로 배럴당 40달러대 초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중동지역 정정불안, 글로벌 수요 증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말에는 60달러대 초반까지 상승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은 비철금속이 수요증가로 크게 상승한 반면, 농산물은 품목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완화적 금융여건 등에 힘입어 주요국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통화정책 변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브렉시트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 연준은 고용 호조, 자산시장 호황 등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ECB와 BOJ는 물가 상승 견인을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유로지역과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2-1〉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단위 : %, 전년동기비, 전기비연율, 전기비)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세계경제	3.3	-	-	-	-	3.8	-	-	-	-
선진국	1.7	-	-	-	-	2.4	-	-	-	-
미 국 (전기비연율)	1.6	1.5	2.3	1.9	1.8	2.2	1.8	3.0	2.8	2.3
유 로 (전기비)	2.0	0.7	0.3	0.3	0.8	2.4	0.7	0.7	0.7	0.7
일 본 (전기비)	1.0	0.7	0.0	0.2	0.2	1.9	0.9	0.4	0.6	0.4
개발도상국	4.4	-	-	-	-	4.7	-	-	-	-
중 국 (전년동기비)	6.7	6.7	6.7	6.7	6.8	6.8	6.8	6.8	6.7	6.7

자료 : IMF, 블룸버그 등

2. 선진국 경제동향

(1) 미국경제[3)]

2017년 미국 경제는 2.2% 성장하면 전년(1.6%)에 비해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성장률이 1.8%(전기비연율)을 기록하였고, 2/4분기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며 3.0%, 3/4분기는 2.8% 성장하였고, 4/4분기는 수입 증가에 따른 순수출 기여도 하락으로 2.3%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그간 부진하던 기업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순수출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고용시장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4/4분기 4.1%) 완전고용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시장은 주가가 기업실적 호조, 법인세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였으며, 달러화 가치는 주요국 정치상황 전개 및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이후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상승 전환 하였다.

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표 2-2〉 미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연율, 전년동기비, %, 십억달러)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1]	1.6	1.5	2.3	1.9	1.8	2.2	1.8	3.0	2.8	2.3
민간소비	2.7	2.4	3.4	2.7	2.6	2.5	1.8	2.9	2.2	3.9
기업투자	0.5	△1.2	3.8	4.6	0.0	5.3	9.6	7.3	3.4	4.8
주택투자	6.5	13.7	△1.0	△1.7	7.7	3.3	11.1	△5.5	△0.5	11.1
정부지출	1.4	3.4	△0.8	1.0	0.2	△0.1	△0.8	0.0	△1.0	2.4
수 출	△0.1	△2.4	3.4	6.1	△3.6	3.0	5.0	3.6	3.5	6.6
수 입	1.9	0.5	0.8	4.9	6.2	4.6	4.8	2.5	2.8	11.8
경상수지	△432.9	△111.9	△103.1	△109.3	△108.6	△449.2	△107.7	△121.8	△103.5	△116.2
소비자물가[2]	1.3	1.0	1.1	1.2	1.8	2.1	2.5	1.9	2.0	2.1
실업률	4.9	4.9	4.9	4.9	4.8	4.4	4.6	4.4	4.3	4.1

주 : 1」전기비연율 2」전년동기비
자료 : 미 상무부, 블룸버그 등

(2) 유로지역 경제[4)]

2017년 유로존 경제는 2.4% 성장하며 전년(2.0%)보다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고장자산투자와 확장적 재정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분기별로는 1/4분기~4/4분기 모두 각각 전기비 0.7%씩 성장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0.2%)보다 크게 증가하여 1.5%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다.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4/4분기에는 8.7%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국별로는 프랑스가 1.2%→2.2%, 이태리 1.1%→1.6%로 모두 성장세가 확대되었고, 독일이 2.2%→2.2%, EU와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 중인 영국이 1.8%→1.8%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표 2-3〉 유로지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십억유로)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1」]	2.0	0.7	0.3	0.3	0.8	2.4	0.7	0.7	0.7	0.7
- 민간소비	2.0	0.6	0.2	0.4	0.6	1.6	0.4	0.5	0.5	0.2
- 고정투자	4.0	0.8	1.2	0.6	1.6	2.6	△0.7	2.1	△0.1	1.3
- 정부지출	1.3	0.8	0.3	0.2	0.4	1.8	0.2	0.4	0.5	0.2
- 수출	5.2	0.6	1.2	0.4	1.5	3.0	1.8	1.0	1.3	2.2
- 수입	3.9	0.7	1.1	0.5	2.0	4.2	0.4	1.3	0.1	1.8
소비자물가[2」]	0.2	0.1	△0.1	0.3	0.7	1.5	1.7	1.5	1.4	1.4
실업률	10.0	10.3	10.2	9.9	9.7	9.1	9.5	9.2	9.0	8.7
독일 GDP[1」」]	2.2	0.9	0.4	0.2	0.4	2.2	1.1	0.5	0.6	0.5
프랑스 GDP[1」]	1.2	0.7	△0.2	0.2	0.6	2.2	0.8	0.7	0.6	0.7
이태리 GDP[1」]	1.1	0.2	0.2	0.3	0.5	1.6	0.5	0.3	0.4	0.4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유로통계청, 블룸버그 등

(3) 일본경제[5)]

2017년 일본경제는 연간 1.9% 성장하며 전년(1.0%)보다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주가상승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기업심리 개선과 실적호조로 설비투자가 지속 증가

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하고, 對중국·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마이너스(△0.1%)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0.5%)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완전고용 수준인 2.8%를 기록하였다.

〈표 2-4〉 일본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조엔)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1]	1.0	0.7	0.0	0.2	0.2	1.9	0.9	0.4	0.6	0.4
- 민간소비	△0.1	0.4	△0.5	0.5	0.0	1.1	0.6	1.0	△0.8	0.5
- 설비투자	△1.5	△1.0	△0.7	△0.3	1.3	3.9	1.5	0.9	1.7	0.7
- 정부지출	1.4	1.1	0.9	0.4	0.1	0.3	0.3	△0.1	0.3	0.0
- 수출	1.7	0.3	△0.6	2.6	2.7	6.8	1.7	△0.1	2.5	2.2
산업생산	0.2	0.0	△0.7	1.3	1.3	2.9	△0.3	1.9	△0.1	1.2
소비자물가[2]	△0.1	0.0	△0.4	△0.5	0.3	0.5	0.3	0.4	0.6	0.6
실업률	3.1	3.2	3.2	3.0	3.0	2.8	2.9	2.9	2.8	2.7
무역수지(십억엔)	3,994	323	1,450	956	1,264	2,907	303	707	1157	740
경상수지(십억엔)	21,062	6,064	4,894	6,071	4,034	21,952	6,021	4,599	7,006	4,326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통계청, 후생노동성, 블룸버그

3. 신흥국 경제동향

(1) 중국경제[6)]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던 중국 경제는 2017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6.7%) 보다 상승한 6.8%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소매판매는 2016년 10.4%에서 2017년 10.2%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수출은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탈출하여 7.9% 성장하였고, 고정자산 투자는 제조업 투자 부진으로 7.2%로 하락하며 1999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시장은 위안화 달러대비 가치가 연간 1.1% 하락하며 2년 여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상하이종합지수는 4분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대형주를 중심으로 4% 넘게 반등하며 2개월여만에 3,400선을 회복하였다.

〈표 2-5〉 중국경제 주요지표

(단위 : 전년동기비, %)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6.7	6.7	6.7	6.7	6.8	6.8	6.8	6.8	6.7	6.7
산업생산1」	6.0	5.8	6.1	6.1	6.1	6.6	6.8	6.9	6.3	6.2
소매판매2」	10.4	10.3	10.2	10.5	10.6	10.2	10.0	10.8	10.3	9.9
고정자산투자2」(누계)	8.1	10.7	9.0	8.2	8.1	7.2	9.2	8.6	7.5	7.2
경상수지(억달러)	2,022	459	662	754	147	1,951	214	566	459	712
수출	△7.7	△9.7	△5.2	△6.7	△5.1	7.9	△3.2	6.6	6.1	9.4
수입	△5.5	△13.3	△6.6	△4.6	2.2	15.9	23.6	13.8	15.1	13.2
소비자물가1」	2.0	2.1	2.1	1.7	2.2	1.6	1.4	1.4	1.6	1.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블룸버그,
1」 분기증가율: 월평균 증가율의 평균 2」 명목

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2)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7)]

2017년 인도경제는 신규 상품·서비스세제(GST) 도입에 따라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8.2→7.1%) 브라질 경제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소비 개선 및 투자부진 완화에 힘입어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3.3%)을 벗어나 1.1% 성장했다.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와 내수회복에 따라 1.6% 성장하며 전년(0.3%)보다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표 2-6〉 기타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비, %)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인도[1」]	8.2	9.3	9.2	8.7	7.4	7.1	6.1	6.0	6.8	7.7
브라질	△3.3	△5.1	△3.2	△2.5	△2.3	1.1	0.1	0.6	1.4	2.2
러시아	0.3	△0.5	△0.4	△0.2	0.4	1.6	0.6	2.5	2.2	0.9

자료 : 블룸버그 등
1」 인도 연간GDP는 회계연도 기준

(3) 동아시아지역 경제[8)]

2017년중 동아시아 지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만은 스마트폰 수요 증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1.5→3.1%) 필리핀은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 확대, 내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6.9→

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6.7%).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효과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였다.(5.0→5.1%) 싱가포르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증가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2.8→3.9%) 홍콩은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활성화로 성장세가 확대(2.2→3.8%)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전년도 실물경기 둔화를 회복하며 성장률이 상승하였다.(4.2→5.9%)

〈표 2-7〉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비, %)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대만	1.5	△0.1	1.2	2.1	2.8	3.1	2.9	2.5	3.4	3.5
홍콩	2.2	1.1	1.8	2.3	3.4	3.8	4.4	4.0	3.6	3.5
싱가포르	2.8	2.1	2.0	1.7	3.7	3.9	3.8	3.1	5.1	3.7
말레이시아	4.2	4.1	4.0	4.3	4.5	5.9	5.6	5.8	6.2	5.9
필리핀	6.9	6.7	7.0	7.1	6.7	6.7	6.4	6.6	7.2	6.6
인도네시아	5.0	4.9	5.2	5.0	4.9	5.1	5.0	5.0	5.1	5.2

자료 : 블룸버그 등

4.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동향[9)]

2017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53.2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년(41.4달러)대비 28.4% 상승했다. OPEC 감산합의로 16년말 50달러 초반까지 상승한 국제유가는 연초 50달러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6~7월중에 산유국 감산규모 확대 부결, 미국 셰일오일 증산 등으로 40달러 중후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이라크내 쿠르드족 독립분쟁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말에는 60달러대 초반까지 상승하였다.

〈표 2-8〉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 기간 중 평균)

	2016년	2017년				
			1/4	2/4	3/4	4/4
두바이유 (Dubai)	41.4	53.2	53.0	49.7	50.4	59.3
브렌트유 (Brent)	45.1	54.7	54.6	50.8	52.2	61.5
서부텍사스유 (WTI)	43.5	50.9	51.8	48.1	48.2	55.3

자료 : 한국석유공사

2017년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증가, 공급이슈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 상승하였다. 구리(26.7%), 알루미늄(23.2%), 아연(37.9%), 납(23.6%), 주석(11.6%)이 중국 등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니켈(8.5%)은 전기차 베터리 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각각

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엄태균 과장(한국은행 파견)

상승하였다. 광산의 파업 및 중국의 감산정책 등 공급이슈도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산물 가격은 품목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옥수수(1.4%), 소맥(0.9%)은 미국 등 주산지의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대두(△0.9%)는 남미지역의 기록적인 생산량 증가 등으로 하락하였다.

〈표 2-9〉 주요 비철금속·곡물 가격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2016년	2017년 (전년비,%)				
				1/4	2/4	3/4	4/4
구리	($/톤)	4,864	6,165 (26.7)	5,831	5,662	6,354	6,803
알루미늄	($/톤)	1,606	1,977 (23.2)	1,882	1,909	2,013	2,103
니켈	($/톤)	9,603	10,420 (8.5)	10,271	9,233	10,545	11,591
아연	($/톤)	2,095	2,889 (37.9)	2,764	2,596	2,950	3,236
납	($/톤)	1,869	2,310 (23.6)	2,278	2,162	2,334	2,461
주석	($/톤)	18,010	20,103 (11.6)	20,027	19,966	20,568	19,839
옥수수	(¢/부셸)	359	364 (1.4)	366	370	372	349
소맥	(¢/부셸)	438	442 (0.9)	433	440	466	430
대두	(¢/부셸)	989	980 (△0.9)	1,024	944	973	979

자료 : Korea PDS

5. 국제금융시장 동향[10)]

(1) 개관

2017년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완화적 금융여건 등에 힘입어 주요국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및 통화정책 변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진정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브렉시트, 미국의 세제개혁 등도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1] VIX 및 CDS프리미엄

V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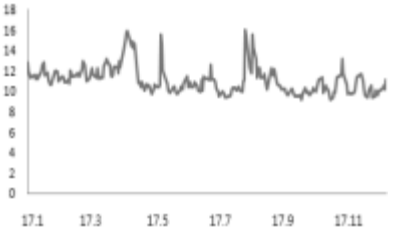

CDS프리미엄

* 자료: 블룸버그

2017년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글로벌 동반 강세를 보였다. 주가가 선진국은 17%, 신흥국은 26% 상승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동반성장, 원자재가격 회복, 달러

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신태섭 사무관

약세 및 물가안정 등으로 위험자산 강세의 최적조건이 형성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브라질, 인도, 남아공, 한국 등 다수 신흥국 주가가 사상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흥국 가산금리와 미국의 회사채 스프레드 등도 수년래 최저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정책적 불확실성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주요국들은 예측가능하면서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만 자국우선주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교역둔화 가능성과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불안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2) 주가

선진국 주가는 경제 회복,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큰 폭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럽은 유로존 경기 호조와 글로벌 경기전망 긍정, 일본은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신흥국 주가 또한 경제성장 기대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선진국 주가와 달리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3) 금리

주요국 장기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주요 선진국 장기 국채금리는 인플레 둔화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미국의 세제개혁 통과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미 연준은 고용 호조, 자산시장 호황 등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ECB와 BOJ의 물가상승 견인을 위한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유로지역과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 제로금리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림 2-2] 신흥국·선진국 MSCI 및 주요국 금리

MSCI 선진국·신흥국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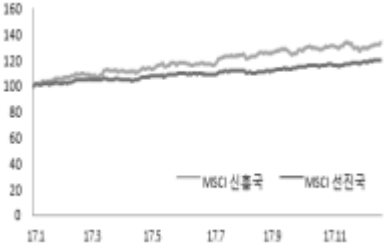

주요국 금리(10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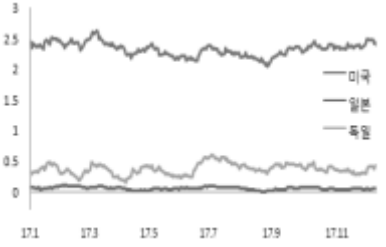

* 자료: 블룸버그 ** 2017.1.1.= 100

(4) 환율[11)]

2017년도 상반기에는 미 보호무역주의 및 금리인상 지연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서는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ECB 테이퍼링 기대 등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특히, 원화의 경우 10월 이후 글로벌 달러약세 속에 북한 리스크 완화, 금통위 금리인상 기대, 韓-케 통화스왑 체결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용준 사무관

〈표 2-10〉 주요국 환율절상률(미달러화 대비)

(단위 : %)

	미국	일본	유로	중국	호주	인도	인니	한국
상반기중	△6.4	+4.1	+8.6	+2.4	+6.7	+5.2	+1.1	+5.6
하반기중	△3.7	△0.3	+5.1	+4.2	+1.6	+1.1	△1.8	+6.9
연간	△9.9	+3.8	+14.2	+6.7	+8.3	+6.4	△0.7	+12.8

※ 자료 : Bloomberg
※ 미국은 달러화 인덱스

제2절 국내경제동향

1. 개관[12)]

2017년 우리 경제는 중국 등과의 통상 마찰, 북한 리스크,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경제 회복, 추경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의 성장세 회복했다.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인 5천737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5.8%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시장 호조로 크게 증가했고, 선박과 석유류 등 대부분 주력 품목들도 증가했다. 경상수지는 중국 관광객 감소 여파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확대돼 2016년보다 낮은 7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기상 악화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다만 근원물가는 국내 경기의 회복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1%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고용의 경우 건설 경기 호조,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32만 명 증가했으며, 고용률(15~64세 기준)은 역대 최고치인 66.6%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은 기업구조조정과 일부 대형 제조업체의 임금협상 타결 지연 등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 임금이 크게 줄어 2016년보다 낮은 2.6% 상승했다.

---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 사무관

2017년 금융시장은 금리와 주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금리는 하반기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기조 정상화 가능성으로 큰 폭 상승했으나,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주가는 상반기 중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2016년 연말보다 크게 상승했다. 다만 3분기 북한 리스크와 연말 차익실현 등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국내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11월 중 1.25%에서 1.5%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됐다.

〈표 2-11〉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만명, 억달러)

	'15년	'16년	'17년p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	2.8	2.9	3.1	2.9	2.8	3.8	2.8
- 민간소비	2.2	2.5	2.6	2.1	2.4	2.6	3.4
- 설비투자	4.7	△1.0	14.6	16.1	17.9	16.3	8.6
실질 GNI	6.5	4.2	3.1	2.3	1.8	5.0	3.0
취업자증감	28.1	23.1	31.6	35.3	36.7	27.9	26.5
실업률	3.6	3.7	3.7	4.3	3.8	3.4	3.2
소비자물가	0.7	1.0	1.9	2.2	1.9	2.2	1.5
경상수지	1,051	979	752	160	145	259	189
수출(통관)	5,268	4,954	5,737	1,321	1,470	1,511	1,435
- 증가율	△8.0	△5.9	15.8	14.6	16.7	24.0	8.4
수입(통관)	4,365	4,062	4,785	1,164	1,178	1,209	1,234
- 증가율	△16.9	△6.9	17.8	24.1	18.6	17.9	11.6

자료: 한국은행

2. 경제성장[13)]

2017년 우리경제는 3.1% 성장하며 전년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0.3%), 제조업(4.4%) 성장세가 전년보다 확대되었으나, 건설업(7.1%), 서비스업(2.1%) 성장세는 전년보다 둔화되었다.

〈표 2-12〉 경제활동별 성장률

(단위 : %)

	2015	2016년 (전기대비)					2017년p (전기대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2.8	2.9	0.6	0.8	0.4	0.7	3.1	1.0	0.6	1.4	△0.2
- 농림어업	△0.4	△2.8	1.5	△3.2	△1.4	△1.1	0.3	3.9	△0.3	△1.8	0.2
- 제조업	1.8	2.4	0.0	1.3	△0.1	1.8	4.4	1.7	0.1	2.7	△1.7
- 건설업	5.7	10.1	3.7	2.0	2.3	2.2	7.1	4.8	△1.6	1.0	△1.6
- 서비스업	2.8	2.5	0.6	0.6	0.4	0.4	2.1	0.4	0.7	1.0	0.3

자료 : 한국은행

지출 부문별로 보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확대(3.5→4.7%p)되었고, 순수출 성장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은 전년에 비해 확대(△0.6→△1.7%p)되었다. 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며 전년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2.5→2.6%). 설비투자도 14.6% 증가하며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건설투자는 하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보다 둔화되었다.(10.3→7.6%)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함진우 사무관

〈표 2-13〉 지출항목별 성장률

(단위 : %)

	2015	2016년 (전기대비)					2017년p (전기대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2.8	2.9	0.6	0.8	0.4	0.7	3.1	1.0	0.6	1.4	△0.2
- 민간소비	2.2	2.5	△0.2	0.8	0.5	0.3	2.6	0.5	1.0	0.8	1.0
- 설비투자	4.7	△1.0	△7.1	2.7	1.6	6.5	14.6	4.5	4.3	0.2	△0.7
- 건설투자	6.6	10.3	5.6	3.2	2.2	1.0	7.6	4.2	0.9	1.1	△2.3
- 수 출	△0.1	2.6	△0.2	0.8	1.4	△0.6	1.9	2.1	△2.7	5.6	△5.3
- 수 입	2.1	4.7	△1.3	2.3	2.4	0.1	7.0	4.9	△1.0	3.2	△2.9

자료 : 한국은행

〈표 2-14〉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전기비, %p)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2.9	0.6	0.8	0.4	0.7	3.1	1.0	0.6	1.4	△0.2
내 수	3.5	0.0	1.3	0.8	1.1	4.7	1.8	1.4	0.3	1.0
- 민간소비	1.2	△0.1	0.4	0.3	0.1	1.3	0.3	0.5	0.4	0.5
- 정부소비	0.7	0.3	0.1	0.1	0.1	0.5	0.1	0.2	0.3	0.1
- 건설투자	1.5	0.8	0.5	0.3	0.2	1.2	0.7	0.1	0.2	△0.4
- 설비투자	△0.1	△0.6	0.2	0.1	0.5	1.2	0.4	0.4	0.0	△0.1
순수출	△0.6	0.5	△0.5	△0.3	△0.3	△1.7	△0.8	△0.7	1.2	△1.2
- 재화와 서비스 수출	1.2	△0.1	0.4	0.6	△0.3	0.8	0.9	△1.1	2.3	△2.3
- 재화와 서비스 수입	1.8	△0.6	0.9	0.9	0.0	2.5	1.7	△0.4	1.1	△1.1

자료 : 한국은행

2017년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실질 GDP 성장률과 동일하였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무역이익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년보다 축소되었다.

〈표 2-15〉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단위 : 전기비, %)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1/4	2/4	3/4	4/4
교역조건지수[1]	3.2	6.1	△2.8	△2.1	0.8	0.6	3.2	△1.6	1.0	△2.7
실질 GNI	4.2	3.3	△0.1	△0.5	0.8	3.1	2.3	△0.6	2.4	△1.2

주 : 1)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디플레이터 기준, SA 기준, 2010년=100
자료 : 한국은행

2017년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730.4조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하였으며, 미국 달러기준으로는 8.2% 증가한 1조 5,3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363.6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으며, 미국 달러기준으로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29,745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16〉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단위 : 당해년도 가격기준)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p
국내총생산(GDP)	조원	1,486.1	1,564.1	1,641.8	1,730.4
	억달러	14,110	13,824	14,147	15,302
1인당 GNI	만원	2,937.7	3,074.4	3,212.4	3,363.6
	달러	27,892	27,171	27,681	29,745

자료 : 한국은행

한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2.0%)보다 0.3%p 높은 2.3%를 기록했다.

〈표 2-17〉 GDP 디플레이터

(단위 : 2010년=100,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p
GDP 디플레이터	104.1	106.6	108.7	111.2
(상승률)	0.6	2.4	2.0	2.3

자료 : 한국은행

총저축률은 36.3%로 전년(36.1%)대비 0.2%p 상승하였다. 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전년에 비해 5.1% 증가한 반면, 최종소비지출은 이를 소폭 하회하는 4.7%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민간총저축률은 전년(28.2%)보다 0.3%p 하락한 27.9%를 나타냈으며, 정부총저축률은 8.4%로 전년(7.9%)에 비해 0.5%p 상승하였다. 한편, 국내총투자율은 전년(29.3%)보다 1.9%p 증가한 31.2%를 기록하였다.

〈표 2-18〉 총저축률 및 투자율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p
총저축률	34.5	35.6	36.1	36.3
민간	27.6	28.6	28.2	27.9
- 가계	7.3	8.4	8.0	7.9
- 기업	20.3	20.2	20.2	20.0
정부	6.9	7.0	7.9	8.4
국내총투자율	29.3	28.9	29.3	31.2

자료 : 한국은행

3. 소비 및 투자

(1) 민간소비[14)]

2017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 및 소비심리의 큰 폭 개선, 일자리 추경을 비롯한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2.5%) 대비 개선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분기별로는 탄핵 소추안 의결('16.12월) 등으로 둔화되었던 민간소비가 내수활성화 대책(2월), 일자리 추경(7월) 등으로 점차 개선되었고, 남북관계 개선 및 평창올림픽 기대감 등으로 4/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전년대비 3.4%)를 기록하였다.

〈표 2-19〉 소비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2015년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민간소비	2.2	2.5	2.6	2.1	2.4	2.6	3.4
- 가계소비	2.2	2.4	2.7	2.2	2.5	2.6	3.5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소비	2.3	5.1	0.8	△0.2	0.9	1.5	1.1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가계국내소비는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소비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27.9%)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음식·숙박업 부진 등 영향으로 서비스 소비가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요균 사무관

쳤고, 의류·신발 등 비구재 소비는 전년대비 1.0% 감소하였다. 한편 내구재 소비 증가폭이 전년대비 확대되며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하였다. 재화 소비는 미세먼지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가전제품 판매가 전년대비 14.3% 확대되는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표 2-20〉 부문별 가계소비

(단위 : 전년동기비, %)

	2015년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가계 국내소비	1.5	2.5	1.7	1.2	1.1	2.4	2.1
- 내구재	11.4	3.4	4.6	4.3	1.4	11.5	1.6
- 준내구재	△1.7	1.9	△0.2	△1.2	△1.3	△0.2	1.7
- 비내구재	1.2	4.6	2.1	1.4	1.6	1.3	3.8
- 서비스	0.6	1.5	1.3	0.9	1.2	1.6	1.5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15.0	9.6	9.9	15.2	8.1	△0.5	19.1
(공제)비거주자 국내소비	△8.7	20.8	△27.9	△22.1	△41.2	△16.7	△29.6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2) 설비투자[15)]

2017년 설비투자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글로벌 IT 업황 호조 등으로 기업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큰 폭 증가하였다. 기계류 투자는 대규모 반도체 장비 도입으로 23.0% 증가한 반면, 운송장비는 선박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며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는 민간부문 증가(24.1%)의 영향으로 전년에 이어 증가를 지속하였다.

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채윤 사무관

〈표 2-21〉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5년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설비투자	4.7	△1.0	14.6	16.1	17.9	16.3	8.6
- 기계류	2.9	△0.8	23.0	28.9	29.3	23.4	12.5
- 운송장비	8.7	△1.5	△3.2	△8.0	△2.1	△1.3	△1.4
국내기계수주	△3.9	4.7	19.7	22.1	23.7	32.0	4.6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3) 건설투자[16)]

2017년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감소하였으나 건물건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대비 7.6% 증가하였다. 건물건설은 2015~16년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점차 건설되며 전년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토목건설은 SOC 예산 감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조정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수주가 증가한 반면, 주택 등 건축수주가 감소하며 연간 3.1% 감소하였다.

〈표 2-22〉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5년	2016년	2017년p				
				1/4	2/4	3/4	4/4
건설투자	6.6	10.3	7.6	11.3	8.5	8.0	3.8
- 건물건설	10.0	16.2	12.1	16.7	13.8	11.9	7.5
- 토목건설	0.3	△1.8	△3.5	△1.5	△3.6	△3.3	△4.8
건설수주	48.4	8.1	△1.7	△1.1	18.3	△8.2	△10.8
- 건축건설	50.5	14.4	△4.7	△10.6	9.1	△5.8	△10.4
- 토목건설	42.6	△10.5	9.6	29.0	62.1	△17.3	△12.3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산업활동동향)

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채윤 사무관

4. 수출입·경상수지[17)]

2017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5,73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7.4%), 석유제품(32.4%), 석유화학(23.6%), 철강(19.9%), 선박(23.1%), 디스플레이(9.0%), 컴퓨터(9.2%), 일반기계(11.1%) 등 주력품목 대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도 미국(3.2%), 중국(14.2%), EU(15.9%), CIS(31.8%), 아세안(27.8%), 일본(10.1%), 중남미(10.5%) 등 주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표 2-23〉 수 출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수출액	5,596	5,727	5,268	4,954	5,737	1,321	1,470	1,511	1,435
증감률	2.1	2.3	△8.0	△5.9	15.8	14.7	16.7	24.0	8.4

자료 : 관세청

2017년 수입(통관기준)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4,78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용도별로는 원자재(22.0%), 자본재(16.2%), 소비재(9.2%)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2.5%), 미국(17.4%), 일본(16.1%), 사우디(24.4%), 독일(4.4%), 호주(26.3%), 베트남(29.5%) 등 주요 수입 국가 대부분에서 증가하였다.

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병철 사무관

〈표 2-24〉 수 입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수입액	5,156	5,255	4,365	4,062	4,785	1,164	1,178	1,209	1,234
증감률	△0.8	1.9	△16.9	△6.9	17.8	24.1	18.6	17.9	11.6

자료 : 관세청

2017년 수출입차는 952억달러로 2009년 이후 9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다. 월별로는 2012년 2월 이후 2017년 12월까지 71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하였다. 지역별로는 중국(443억달러), 베트남(316억달러), 미국(179억달러), 인도(101억달러) 등에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28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144억달러), 카타르(△108억달러), 독일(△113억달러) 등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2-25〉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수출입차	440	472	903	892	952	156	292	302	201

자료 : 관세청

〈표 2-26〉 품목별 수출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7,354	7,790	5.9
2. 원료 및 연료	32,987	43,103	30.7
- 석유제품	26,813	35,447	32.2
3. 경 공 업 품	35,425	35,961	1.5
- 섬유사	1,327	1,405	5.9
- 직물	5,285	5,222	△1.2
- 의류	2,047	2,019	△1.4
- 고무타이어 및 튜브	3,613	3,623	0.3
- 금	1,152	558	△51.6
- 기타	10,507	11,779	12.1
4. 중화학공업품	419,661	486,840	16.0
- 화공품	55,308	65,683	18.8
- 철강제품	39,945	46,881	17.4
- 기계류와 정밀기기	55,173	63,285	14.7
- 전기·전자제품	159,393	191,994	20.5
(가 전 제 품)	9,811	8,258	△15.8
(정보통신기기)	38,710	32,142	△17.0
〈컴퓨터 및 주변기기〉	7,666	8,457	10.3
〈무선통신기기〉	26,201	20,251	△22.7
(반도체)	62,700	100,465	60.2
- 수송장비	100,968	108,768	7.7
(승용자동차)	37,496	38,831	3.6
(선박)	33,467	41,363	23.6
총 계	495,426	573,694	15.8

자료 : 관세청

〈표 2-27〉 품목별 수입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1. 소 비 재	67,353	73,575	9.2
- 곡 물	6,172	6,006	△2.7
- 직접소비재	17,790	19,732	10.9
(담배)	129	229	77.5
(주류)	806	922	14.4
- 내구소비재	26,951	29,981	11.2
(가전제품)	4,433	4,945	11.5
(승용차)	9,342	9,670	3.5
(금)	912	2,192	140.4
(골프용품)	336	367	9.2
- 비내구소비재	16,441	17,856	8.6
(의류)	8,422	9,052	7.5
2. 원자재	191,028	233,093	22.0
- 연 료	80,572	108,710	34.9
(원 유)	44,295	59,603	34.6
- 광 물	15,512	20,273	30.7
- 경공업원료	7,638	8,454	10.7
- 유 지	963	1,152	19.6
- 섬 유 류	4,189	4,102	△2.1
- 화 공 품	39,067	44,023	12.7
- 철 강 재	18,854	20,321	7.8
- 비철금속	10,716	12,062	12.6
- 기 타	13,517	13,996	3.5
3. 자본재	147,812	171,810	16.2
- 기계류와 정밀기기	47,813	63,076	31.9
- 전기·전자기기	84,870	95,800	12.9
(정보통신기기)	24,016	27,204	13.3
(반도체)	37,728	42,529	12.7
- 수송장비	12,984	10,798	△16.8
- 기 타	2,145	2,137	△0.4
총 계	406,193	478,478	17.8

자료 : 관세청

〈표 2-28〉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전체수출	495,426	573,694	15.8
미국	66,462	68,610	3.2
일본	24,355	26,816	10.1
EU	46,610	54,038	15.9
호주	7,501	19,862	164.8
캐나다	4,885	4,718	△3.4
동남아	119,521	149,259	24.9
(홍콩)	32,782	39,112	19.3
(싱가폴)	12,459	11,652	△6.5
(대만)	12,220	14,898	21.9
중동	26,228	24,380	△7.0
중국	124,433	142,120	14.2
중남미	25,442	28,113	10.5
CIS	6,985	9,266	32.7
동구권	11,458	11,922	4.0

자료 : 관세청

〈표 2-29〉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 통관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전체수입	406,193	478,478	17.8
미국	43,216	50,749	17.4
일본	47,467	55,125	16.1
EU	51,902	57,280	20.0
호주	15,176	19,160	26.3
캐나다	3,943	5,043	27.9
동남아	62,337	73,774	18.3
(홍콩)	1,615	1,879	16.3
(싱가폴)	6,806	8,905	30.8
(대만)	16,403	18,073	10.2
중동	54,126	70,153	29.6
중국	86,980	97,860	12.5
중남미	15,223	17,082	12.2
CIS	9,499	13,699	44.2
동구권	2,835	3,040	7.2

자료 : 관세청

〈표 2-30〉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통관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액
전 체	89,233	95,216	5,983
미국	23,246	17,860	△5,386
일본	△23,112	△28,309	△5,197
EU	△5,292	△3,243	2,049
호주	△7,675	702	8,377
캐나다	942	△325	△1,267
동남아	57,184	75,485	18,301
(홍콩)	31,168	37,233	6,065
(싱가폴)	5,652	2,747	△2,905
(대만)	△4,183	△3,175	1,008
중동	△27,898	△45,773	△17,875
중국	37,453	44,260	6,807
중남미	10,219	11,031	812
CIS	△2,514	△4,433	△1,919
동구권	8,622	8,882	260

자료 : 관세청

(2) 경상수지

2017년 경상수지는 752.3억달러 흑자로 1998년 이후 20년 연속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2-31〉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경상수지	1,051.2	979.2	752.3	159.8	144.6	259.4	188.5
- 상품수지	1,202.8	1,164.6	1,135.9	247.0	273.0	330.9	285.0
(수 출)	5,430.8	5,119.3	5,803.1	1,396.0	1,429.9	1,496.6	1,480.7
(수 입)	4,228.1	3,954.6	4,667.2	1,149.0	1,156.8	1,165.6	1,195.7
- 서비스수지	△146.3	△173.4	△367.3	△93.9	△81.1	△86.2	△106.1
(수 입)	975.0	948.1	897.0	216.0	219.1	229.3	232.6
(지 급)	1,121.2	1,121.5	1,264.4	309.9	300.2	315.5	338.8
- 본원소득수지	44.5	45.7	53.4	15.6	△31.1	39.4	29.4
(수 입)	251.0	264.7	294.7	58.7	81.3	76.4	78.4
(지 급)	206.5	219.1	241.4	43.1	112.3	37.0	48.9
- 이전소득수지	△49.9	△57.7	△69.6	△8.8	△16.3	△24.7	△19.8
(수 입)	88.4	87.4	97.1	31.5	21.7	21.0	22.9
(지 급)	138.3	145.1	166.7	40.3	38.0	45.7	42.7

자료 : 한국은행 ECOS

상품수지는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 등으로 수출 및 수입이 동반 증가하며 2016년(1,165억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1,1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18)]

18) 통관수출입과 경상수지 상의 상품수출입은 수출입 거래인식 시점, 운임·보험료 포함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표 2-32〉 상품수지

(단위 : 억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상품수지	1,203	1,165	1,136	247	273	331	285
- 수 출(FOB)	5,431	5,119	5,803	1,396	1,430	1,497	1,481
〈통관수출〉	5,268	4,954	5,737	1,321	1,470	1,511	1,435
- 수 입(FOB)	4,228	3,955	4,667	1,149	1,157	1,166	1,196
〈통관수입〉	4,365	4,062	4,785	1,164	1,178	1,209	1,234

자료 : 한국은행 ECOS

서비스수지는 지재권사용료수지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가공·운송·여행·건설수지 등이 악화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다('16: △173억달러 → '17: △367억달러)

운송수지는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건설수지는 2010년 이후 해외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흑자폭이 축소되었다.

〈표 2-33〉 서비스수지

(단위 : 억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서비스수지	△146.3	△173.4	△367.3	△93.9	△81.1	△86.2	△106.1
- 가 공	△61.0	△57.6	△69.6	△16.7	△15.9	△19.0	△18.0
- 운 송	46.5	△13.3	△54.2	△13.7	△13.9	△12.9	△13.7
- 여 행	△104.7	△103.6	△183.2	△41.4	△43.9	△46.5	△51.4
- 건 설	96.4	95.6	78.8	18.6	19.9	20.3	20.0
- 지재권사용료	△35.0	△24.9	△24.1	△8.4	△1.8	△5.6	△8.4
- 기타사업서비스	△92.9	△77.2	△122.1	△31.6	△27.3	△23.9	△39.3

자료 : 한국은행 ECOS

본원소득수지는 53.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16년(45.7억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급료 및 임금수지는 적자폭이 2016년보다 확대되었으며,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수지는 흑자폭이 증가하였다.

이전소득수지는 △7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58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표 2-34〉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단위 : 억달러)

	2015년	2016년	2017년				
			연간	1/4	2/4	3/4	4/4
본원소득수지	44.5	45.7	53.4	15.6	△31.1	39.4	29.4
- 급료및임금	△4.0	△8.8	△12.1	△2.8	△2.8	△2.1	△4.3
- 투자소득	48.6	54.4	65.4	18.4	△28.3	41.5	33.8
이전소득수지	△49.9	△57.7	△69.6	△8.8	△16.3	△24.7	△19.8

자료 : 한국은행 ECOS

5. 고용[19]

2017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32만명 증가하였고,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15~64세 고용률도 6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 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건설업 고용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며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

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정효경 주무관

분기별 흐름을 보면 1·2분기는 30만명 중반의 높은 증가가 지속되었으나, 3·4분기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며 20만명 중반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확대되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경기 호조가 이어지면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 안정성 높은 상용직 취업자가 30만명대 중반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일용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도 증가 전환되었다. 다만, 임시직 근로자는 큰 폭 감소로 전환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반면, 청년 및 30~40대 취업자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인구변화가 고려된 고용률의 경우 청년 등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하였다.

〈표 2-35〉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전체 취업자 증감	28.1	23.1	31.6	35.3	36.7	27.9	26.5
· 공공행정	△2.2	5.5	5.5	4.0	2.6	6.8	8.4
· 민간부문 (공공행정제외)	30.3	17.6	26.1	31.3	34.1	21.1	18.1
〈산업별〉							
제조업	14.6	△2.1	△1.8	△12.0	△2.1	3.0	4.1
건설업	2.5	1.5	11.9	13.6	16.3	8.4	9.2
서비스업	21.0	29.9	20.9	36.0	22.4	14.4	10.3
· 보건·사회복지업	7.3	8.0	6.1	7.8	5.7	5.3	5.4
· 전문·과학기술업	2.1	4.7	△0.9	2.1	△0.8	△3.3	△1.7
· 사업시설관리·지원	8.7	6.0	△1.7	△2.1	△2.1	0.1	△2.5
· 도소매·숙박음식업	5.9	3.3	3.8	12.6	5.0	△1.1	△1.2
농림어업	△10.9	△6.5	0.6	△2.5	0.1	2.1	2.8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44.4	26.7	26.5	19.1	31.2	29.1	26.5
· 상용직	39.7	34.6	36.6	31.7	34.7	41.7	38.2
· 임시·일용직	4.7	△7.8	△10.1	△12.5	△3.4	△12.6	△11.7
비임금근로자	△16.3	△3.6	5.1	16.1	5.5	△1.2	0.0
· 자영업자	△9.8	△0.9	6.8	16.8	5.9	2.3	2.0
· 무급가족종사자	△6.6	△2.7	△1.7	△0.7	△0.5	△3.5	△2.0
〈연령별〉							
청년층(15~29세)	6.3	4.3	△0.1	1.6	3.1	△0.7	△4.2
30대	△7.6	△5.7	△2.9	△5.3	△2.7	△1.8	△1.7
40대	△0.5	△5.9	△5.0	△4.1	△4.8	△5.5	△5.4
50대	12.1	8.2	15.2	17.7	15.9	13.9	13.4
60대 이상	17.8	22.3	24.2	25.4	25.1	22.1	24.3

자료 : 통계청

〈표 2-36〉 주요 고용지표

(단위 : 만명,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5세 이상 인구	4,324	4,361	4,393	4,382	4,390	4,397	4,404
경제활동인구	2,715	2,742	2,775	2,726	2,799	2,796	2,778
· 경제활동참가율	62.8	62.9	63.2	62.2	63.8	63.6	63.1
취업자	2,618	2,641	2,673	2,610	2,692	2,700	2,688
· 고용률(15세 이상)	60.5	60.6	60.8	59.6	61.3	61.4	61.0
· 고용률(15~64세)	65.9	66.1	66.6	65.8	66.9	67.0	66.9
실업자	98	101	102	116	107	96	89
· 실업률	3.6	3.7	3.7	4.3	3.8	3.4	3.2
비경제활동인구	1,609	1,619	1,618	1,656	1,591	1,601	1,626

자료 : 통계청

6. 물가[20)]

2017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16년에 이어 중기 물가안정목표 2% 내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압력으로 인해 전년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석유류·농산물 등 공급측 변동요인을 제거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1.5% 상승하여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소비자 체감지표 성격을 갖는 생활물가 지수의 경우 전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손정혁 사무관

년대비 2.5% 상승하였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5.5% 상승하여 전년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농산물은 여름철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며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축산물은 조류독감 등으로 전년대비 6.5% 상승하였으며.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의 생산 감소로 6.8% 상승하였다.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대비 1.4%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7.7% 상승하며 공업제품 가격상승을 주도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 전환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16.12월~ △11.6%) 등으로 △1.4% 하락하여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집세는 신규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6% 상승하며 전년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공공서비스는 전년대비 1.0% 상승하며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열차료(전년대비△1.7%), 방송수신료(전년대비△0.5%) 등이 하락하며 상승폭 둔화에 기여하였다.

개인서비스는 전년대비 2.5% 상승하며 상승폭이 축소되었다..외식비와 외식비를 제외한 서비스 모두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해외단체여행비(전년대비△2.6%), 치과보철료(전년대비△0.5%) 등이 하락하며 상승폭 둔화에 기여하였다.

〈표 2-37〉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 전년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비자물가	1.3	0.7	1.0	1.9
농축수산물	△2.7	2.0	3.8	5.5
(농산물)	△10.1	1.2	3.8	4.6
(축산물)	9.5	3.7	4.4	6.5
(수산물)	2.0	1.0	2.9	6.8
공업제품	1.3	△0.2	△0.5	1.4
(석유류제품)	△4.3	△19.2	△8.1	7.7
전기·수도·가스	3.9	△7.4	△9.2	△1.4
(전기료)	2.2	△1.7	△4.1	△6.3
(도시가스)	6.4	△15.8	△17.3	3.5
집세	2.3	2.5	1.9	1.6
공공서비스	0.7	1.2	1.5	1.0
개인서비스	1.7	1.9	2.7	2.5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2.0	2.2	1.6	1.5
생활물가	0.8	△0.2	0.7	2.5

자료 : 통계청

7. 재정[21)]

2017년 정부 통합재정수입은 추경 기준(391.2조원)대비 12.7조원 많은 403.8조원이며, 통합재정지출은 추경 기준(378.2조원) 대비 1.6조원 많은 379.8조원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13조원)보다 11조원 증가한 2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김문수 사무관

적자로 추경 기준(△28.9조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10.4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1%로 추경 기준(△1.7%)보다 0.6%p 개선되었다.

2017년말 기준 국가채무(중앙 · 지방정부채무)는 660.2조원(GDP 대비 38.2%)으로 추경 기준 669.2조원(GDP 대비 39.6%)보다 9조원(GDP 대비 1.5%p)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OECD Economic Outlook '18.11).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기준 재정수지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7년 각각 2.7%와 42.5%로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평균 △2.3%,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평균 110.9%다.

〈표 2-38〉 '17년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부채 비율

(단위 : GDP 대비, %)

	한국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2.7	△1.1	△4.3	△1.9	△3.7	△2.3
부채 비율	42.5	93.8	105.1	117.0	224.2	110.9

* OECD Economic Outlook('18.11) 한국은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D2) 기준

8. 금융시장[22)]

(1) 금리동향

2017년 들어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에 영향을 받았다. 국내외 경기회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이 혼재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연말에는 주요 금리가 모두 상승하였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1.25%('16.6월) → 1.50%('17.11월)

국고채 금리 등 시중금리는 연초에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국과 유럽의 정치상황 등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다. 6월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증대 등으로 완만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 들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큰 폭 상승하였다. 다만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추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단기 금리는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던 중 연말 국내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상승하였으나, 장기 금리는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되어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장단기 금리차는 연중 확대되다 11월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다시 축소되었다.

회사채 수익률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 신채용 사무관

우량물(AA-)과 비우량물(BBB-)간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39〉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단위 : %, 기말기준)

	'16	'17.1	2	3	4	5	6	7	8	9	10	11	12
콜(1일)	1.22	1.24	1.23	1.23	1.23	1.23	1.24	1.24	1.23	1.25	1.24	1.26	1.51
CD(91일)	1.54	1.50	1.49	1.48	1.43	1.39	1.38	1.39	1.39	1.38	1.38	1.45	1.66
국고채(3년)	1.69	1.64	1.67	1.71	1.68	1.69	1.67	1.74	1.78	1.79	2.03	2.15	2.10
회사채 (3년, AA-)	2.16	2.10	2.13	2.21	2.20	2.22	2.21	2.28	2.32	2.33	2.57	2.71	2.65
회사채 (3년, BBB-)	8.28	8.28	8.33	8.41	8.41	8.44	8.44	8.52	8.57	8.58	8.82	8.96	8.91
수신금리[1]	1.56	1.51	1.49	1.49	1.48	1.48	1.49	1.48	1.48	1.53	1.63	1.79	1.81
여신금리[2]	3.44	3.51	3.45	3.48	3.42	3.45	3.44	3.45	3.43	3.46	3.46	3.55	3.62
장단기금리차[3]	0.15	0.14	0.18	0.23	0.25	0.30	0.29	0.35	0.39	0.41	0.65	0.70	0.44
회사채프리미엄[4]	0.47	0.46	0.47	0.50	0.52	0.53	0.54	0.54	0.54	0.55	0.55	0.56	0.55
회사채 신용등급별 금리차[5]	6.12	6.18	6.20	6.21	6.22	6.23	6.24	6.24	6.25	6.24	6.25	6.25	6.26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2) 예금은행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3) 국고채(3년) - CD(91일)
4)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5) 회사채(3년, BBB-) - 회사채(3년, AA-)

[그림 2-3] 장단기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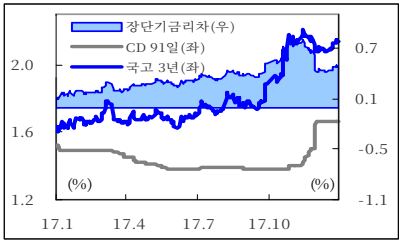

[그림 2-4] 회사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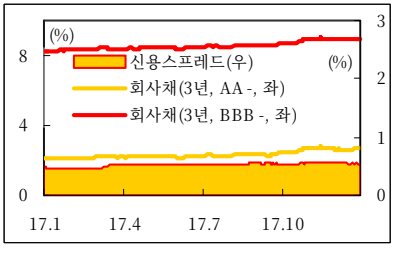

(2) 주식시장 동향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대내외 여건이 호전되면서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기업실적 개선 기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에 힘입어 11월 3일 사상 최고치 2,558pt 을 기록했다.

연중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북한 6차 핵실험(9월) 등 잇따른 도발, 북·미간 대결 양상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조정되는 등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월 들어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월 연고점 이후 큰 폭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7년말 코스피는 전년말 대비 21.8%상승한 2,467pt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10월까지 코스피에 비해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11월) 이후 급등세를 나타내며 2016년말 대비 26.4% 상승한 798.4pt로 장을 마감했다.

〈표 2-40〉 주식시장 동향

	'16년	'17년				
		연중	1/4	2/4	3/4	4/4
종합주가지수(기말)	2026.5	2,467.5	2,160.2	2,391.8	2,394.5	2,467.5
거래량(일평균, 억주)	3.7	3.3	3.9	3.6	2.7	3.1
코스닥 지수(기말)	631.4	798.4	619.3	669.0	652.8	798.4
거래량(일평균, 억주)	6.9	7.4	8.3	7.0	6.0	8.2

[그림 2-5]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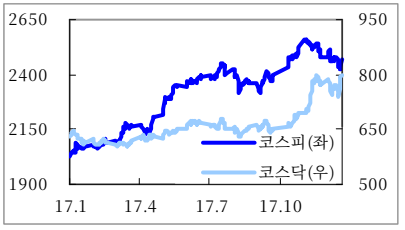

[그림 2-6] KOSPI지수·
외국인 유가증권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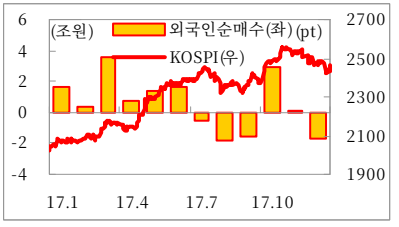

외국인 유가증권 주식투자는 차익실현, 북한 리스크 등으로 3분기 중 일시적인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연중으로는 지속된 자금유입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전반적인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외국인 유가증권 보유규모는 2016년말 461조원(시가총액 대비 35.2%)에서 2017년말 597조원(37.2%)로 증가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지난해에 이어 순매도를 지속하였으며. 개인도 9.3조원을 순매도하며 작년에 이어 최대 폭의 순매도를 경신했다.

〈표 2-41〉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유가증권) 추이

(단위 : 조원, 체결기준)

	'16년	'17년				
		연중	1/4	2/4	3/4	4/4
외국인	11.3	6.6	5.5	3.8	△4.0	1.3
기관투자가	△5.2	△2.4	△4.9	△3.3	4.8	1.0
개인	△8.6	△9.3	△2.7	△1.4	△1.4	△3.8

(3) 자금흐름

2017년중 은행수신은 정기예금 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폭 축소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바젤Ⅲ의 단기유동성 지표(LCR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기준 강화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조달 노력 강화 등도 정기예금 및 시장성 수신 증가폭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전년대비 27.9조원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는 주가 상승 등으로 증가 전환한 반면, 채권형 펀드는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발생 우려 등으로 감소하였다. MMF도 금리 상승 등으로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자금이 유출되었다.

〈표 2-42〉 금융기관 수신 추이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16년	'17년				
		연중	1/4	2/4	3/4	4/4
은행[1]	80.8	79.5	△7.2	35.9	35.0	15.8
(수시입출식[2])	60.2	34.0	△5.1	17.8	11.6	9.8
(정기예금)	19.8	31.8	3.3	6.0	19.1	3.4
(단기시장성[3])	△5.0	3.2	△0.6	8.0	1.1	△5.3
(은행채)	8.9	14.4	△1.3	3.6	3.9	8.3
자산운용사	47.6	27.9	17.0	7.3	7.7	△4.2
(MMF)	10.9	△7.0	13.9	△8.0	△3.3	△9.7
(주식형)	△7.7	4.2	△4.5	△0.2	2.5	6.3
(채권형)	18.7	△8.6	△1.1	2.9	△0.9	△9.6
(신종펀드)[4]	29.6	45.3	11.2	14.4	10.0	9.7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예금 제외 기준
2)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3) CD, RP, 표지어음 기준
4)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4) 기업자금사정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은 상승하였지만 부도업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 지속 등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표 2-43〉 기업자금사정

	'16년	'17년				
		연중	1/4	2/4	3/4	4/4
어음부도율(%)	0.11	0.15	0.11	0.28	0.10	0.11
부도업체수(개)	555	494	136	131	102	125
기업대출 연체율[1](%)	1.1	0.7	0.8	0.8	0.7	0.7

1) 기말기준

은행의 기업대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이 확대되고, 대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폭은 축소되었다.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회사채는 금리인상 전 선발행 수요에 의해 상반기까지 순발행되었다가 하반기 만기도래 증가 등에 따라 순상환으로 전환되었다. CP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단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순발행 전환되었다. 한편, 주식발행 규모는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표 2-44〉 기업자금조달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

	'16년	'17년				
		연중	1/4	2/4	3/4	4/4
은행대출[1]	19.3	38.1	31.2	7.4	14.9	2.6
(대기업)	△11.2	△3.5	2.8	△3.3	0.6	△3.7
(중소기업)	30.5	41.6	10.3	10.7	14.3	6.3
직접금융	7.1	12.7	2.2	7.6	4.0	△1.1
(회사채 순발행)[2]	△6.7	△3.5	0.2	2.7	△1.6	△4.7
(CP 순발행)[3]	△2.1	2.3	0.5	0.4	2.5	△1.0
(주식발행)[4]	15.9	13.9	1.6	4.5	3.2	4.6

1) 신탁대출 포함, 2)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3) 증권·종금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4)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

9. 외환시장[23)]

(1) 환율동향

2017년말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070.5원으로 마감하여 전년말(1,207.7원)에 비해 137.2원 하락(12.8% 절상)하였으며, 연평균 환율은 1,130.5원으로 전년(1,160.4원)에 비해 29.9원 하락(2.6% 절상)하였다.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폭 및 변동률은 각각 4.4원과 0.38%로 2016년(6.0원 및 0.51%)에 비해 축소되었다.

2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성진규 사무관

〈표 2-45〉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 원, %)

	2015	2016	2017				
				1/4	2/4	3/4	4/4
전일대비 변동폭	5.3	6.0	4.4	5.7	4.2	4.2	3.2
변동율	0.47	0..51	0.38	0.49	0.37	0.38	0.29

시기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1분기 美 보호무역주의 및 금리인상 지연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약세,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 등으로 3월말 1,118.4원까지 하락했다.

다만, 2분기 北·시리아 리스크 부각, 美 금리인상 기대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강세 등의 영향으로 6월말 1,144.1원으로 반등했다.

3분기에는 ECB 테이퍼링 기대 등으로 유로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가 나타났지만, 北 리스크 지속, 美 금리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9월말 1145.4원으로 40원대를 유지했다.

4분기에는 글로벌 달러약세 속에 北 리스크 완화, 금통위 금리인상 기대, 韓-케 통화스왑 체결,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 등으로 12월말 1070.5원으로 하락했다.

한편, 원/엔 환율(100엔당)은 2017말 949.3원으로 전년말(1,035.4원) 대비 86.1원 하락(9.1% 절상)하였으며, 연평균 환율도 1,008.5원으로 전년(1,068.8원)에 비해 60.3원 하락(6.0% 절상)하였다. 원/위안 환율은 163.2원으로 2016말 173.1원 대비 9.9원 하락(6.1% 절상)하였으며, 연평균 환율도 167.4원으로 전년(174.1원)에 비해 6.7원 하락(4.0% 절상)하였다.

[그림 2-7] 2017년중 원/달러 - 원/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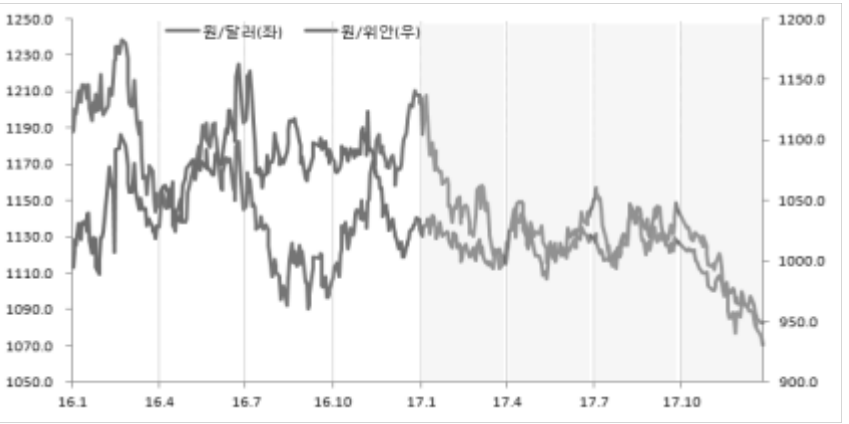

(2) 외환시장 동향

2017년중 은행간 시장의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중개회사 경유분 기준)는 일평균 228.5억달러로, 전년(225.5억달러)에 비해 3.0억달러 증가하였다. 상품 종류별로는 외환스왑(109.3억달러), 현물환(91.2억달러), 기타 파생상품(23.5억달러, 통화스왑 및 옵션 등), 선물환(4.5억달러)의 순이었다.

〈표 2-46〉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2015	2016	2017				
				1/4	2/4	3/4	4/4
현 물 환	109.0	102.7	91.2	91.2	89.3	94.5	89.4
선 물 환	1.4	2.5	4.5	4.4	4.2	4.9	4.4
외환스왑	108.3	100.2	109.3	105.1	112.1	111.7	108.2
기타파생상품	17.2	20.1	23.5	23.4	25.1	23.4	22.0
계	235.8	225.5	228.5	224.1	230.7	234.5	224.1

10.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1) 외환보유액[24)]

2017년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893억달러로 전년 대비 182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러시아, 홍콩, 인도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2-47〉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달러)

97말	98말	07말	08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89	485	2,622	2,012	2,916	3,064	3,270	3,465	3,636	3,680	3,711	3,893

〈표 2-48〉 2017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단위 : 억달러)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1,399	6	러 시 아	4,327
2	일 본	12,643	7	홍 콩	4,313
3	스 위 스	8,112	8	인 도	4,091
4	사 우 디	4,964	9	한 국	3,893
5	대 만	4,515	10	브 라 질	3,740

또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7년말 기준 단기외채의 약 3.4배, 경상지급액의 7.5개월분에 해당하는 등 질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이다.

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김연대 사무관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17년 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 국가신용등급[25)]

2017년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치상황 관련 불확실성으로 신평사·해외투자자·외신 등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으며, 북한 핵실험, 사드 배치 문제, 美 금리인상, 中 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대외부문의 리스크 요인 또한 산재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신용평가사와의 스킨십을 강화하여 신용평가사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 사항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정기 연례협의는 물론 고위급 면담, 수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정책방향,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대비 건전한 우리 경제의 재정·대외건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가계부채, 북한 리스크 등 신용평가사들이 다소 우려를 표명한 이슈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였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견조한 경제성장, 양호한 재정건전성, 견실한 대외채무구조를 높이 평가했으며, 구조조정·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았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신태섭 사무관

다. 각 신용평가사와의 연례협의 및 등급평가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S&P, AA(전망: 안정적)으로 유지

정부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S&P와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S&P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가계부채, 공공기관 부채, 재정동향, 남북관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연례협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성장-고용-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은 대화채널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이며, 정권이 안정되어 있어 갑작스런 체제붕괴나 전쟁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S&P는 8.18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였다(전망 : 안정적). S&P는 '17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한국경제의 기초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을 유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산업이나 특정 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되어 있는 강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나. Moody's, Aa2(전망: 안정적)으로 유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일간 Moody's와도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Moody's는 특히 최근 경제동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등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가계부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이 매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 단기외채 수준 및 비중 감소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하되, 세원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적극 관리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지정학적 리스크 모두 충분히 관리가능한 리스크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무디스측은 10.18일 우리나라의 현행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경제의 경제·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또한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원화가치가 안정세이며, 외국인 자금도 특별한 변동이 없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다. Fitch, AA-(전망: 안정적)으로 유지

정부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Fitch와 연례협의를 실시하였다. Fitch는 특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가계부채와 함께 당시 북한 핵실험 진행에 따른 한반도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수요측면에서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측면에서 규제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이를 위한 기반으로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한 공정경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은 하되, 세원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적극 관리할 것이

라고 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관련하여, 취약차주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 관련하여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북한의 도발이 진행되었으나, 한국경제의 견조한 경제기초여건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Fitch는 10.11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전망: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Fitch는 금번 등급유지 재확인은 북한 리스크 관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거시경제 여건, 대외건전성 등과 양호한 재정·대외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세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질적개선 노력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03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제 3 장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제1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우리경제는 '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완만히 둔화되었으나, '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반면 선진국들은 경제가 성숙하면서 안정적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즉, 우리경제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는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을 지속한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가계와 기업 간의 불균형이 야기되었다. 또한 양적 성장을 중시하여 대기업·제조업·수출 지원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확대되었으며, 내수·수출의 불균형도 야기되었다. 한편, 추격형 성장전략은 모방·추격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유효성이 상실되었다. 즉, 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주요국과 달리 정책기조 전환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였다. 먼저,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였다. 그간 가계와 기업, 가계간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도 미흡하였다.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 위축으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가계를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가계 소득 확충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핵심 생계비 경감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을 보장하였으며,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 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리 중심 경제를 추진하였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제도로 인해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를 추진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 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이유로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 추구 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경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가 유지되도록 혁신성장을 추진하였다.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

약하였고, 고용의 8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역량이 약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하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제체질을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유도하여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제2절 소득주도 성장

1.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

(1)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26)]

1988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금액 기준으로 OECD 27개국 중 16위, 상대금액 기준으로는 14~16위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4%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과 최저임금 심의 시기가 맞물리며 유력 대선후보 모두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제1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4월 6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의결 안건으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되었다. 두 달여간의 현장방문과 전문위원회, 주요 경제지표 분석 등을 종료

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이상용 사무관

한 이후 6월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 6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안건 중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전과 동일하게 시급(時給)으로 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월환산액(月換算額)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최초 제시안의 경우 근로자위원은 전년 대비 54.6% 인상된 1만원, 사용자위원은 2.4% 인상된 6,625원을 제시하여 양 측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듯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의 입장 차이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초과하여 7월까지 연장되었다.

이후 7월 5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일부 업종에 대한 인상률 경감 등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였으나, 표결 결과 위원 17명이 단일 최저임금을 지지함으로써, 전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7월 15일 제11차 전원회의까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 입장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위원장은 최종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자위원은 7,530원, 경영계는 7,3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최종안에 대한 위원 전원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안 15표, 사용자위원안 12표가 나옴으로써 2017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 2018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

〈표 3-1〉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추이

구 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최초안	10,000	54.6	6,625	2.4
1차 수정안	9,570	47.9	6,670	3.1
2차 수정안	미제출	-	제출(비공개)	-
3차 수정안	8,330	28.7	6,740	4.2
최종안	7,530	16.4	7,300	12.8

정부는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7.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신설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했다.

또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최대한 가입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등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병행 추진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가 과거 5년 평균인상률 7.4%를 초과하는 부분인 9%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정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2) 핵심생계비 경감

① 주거비

정부는 11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계획인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으로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5년간 청년주택 총 5만실을 공급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둘째,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했으며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과 함께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했다. 셋째, 고령가구를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5만호를 공급하고, 생활자금 마련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을 병행했다. 넷째, 저소득층에게 총 41만호 규모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정부는 또한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 등록 추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장기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 등 임대차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의료비[27)]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한다. 즉, 미용 ·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되, 비용 ·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관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은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이숙경 주무관

한편,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였다.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등급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및 중증치매 관련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③ 교통비

가계소비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12.1%로 교통비 경감은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교통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2017년 추석연휴를 앞두고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했다.

또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100개 시·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일명 100원 택시를 운영했으며,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률적인 재정 보조 방식이 아닌 정기권 도입 등 제도 설계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2017년 11월~2018년 5월)으로 향후 출퇴근, 통학 등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생활권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출퇴근 이용객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을 위해 2017년 12월에 광역급

행버스(M-버스) 노선을 7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정체 완화와 수도권 외곽지역 이용객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2017년 7월에 수인선 등 4개 노선의 급행열차를 확대하여 이용객 통행시간을 20분 단축했다.

④ 통신비

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으로 통신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하여 2017년 6월에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9월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이더라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25%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확산되는 경우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25% 상향 이전 대비 약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부터 통신요금 월 11,000원 추가 감면을 시행했다. 동 제도 개편으로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명까지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41만명)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12만명)
현 행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개편 후	26,000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11,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뿐만 아니라, 알뜰통신이 저렴한 요금제를 지속하여 출시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에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알뜰통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의 면제를 1년 연장('17.9~'18.9월)했으며, 2017년 11월에는 알뜰통신 사업자가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했다.

* 종량 도매대가 : 전년대비 음성 12.6%, 데이터 16.3% 인하/
주요LTE 정액요금제 도매대가 비율 :평균 7.2%p 인하

⑤ 교육비[28)]

정부는 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령인구별로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국민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첫째, 유아·초등학생 교육비 투자를 확대했다.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약속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증축 및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운영

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전유석 사무관

비 기준 단가를 실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했으며, 3~6학년 대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시범학교 17개교를 운영했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했다. 또한, 교습비 초과 징수, 과대·거짓광고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등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하고, 신입생 지방인재장학금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17년 1학기에는 소득3분위 이하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했다. 2017년 2학기에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하여 130만여명의 학생들에게 94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했다.

2. 사회안전망 확충

(1) 기초생활보장 강화[29)]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의 빈곤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5년 7월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이해인 사무관

개편한 맞춤형 급여를 시행한지 2년차를 맞이하여 수급자 실태조사와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금번 종합계획에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와 함께 주거 · 교육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수급자를 2016년 인구의 3.2% 수준인 163만 명에서 2020년 인구의 4.8% 수준인 252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첫 단계로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과 '障-障 부양'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는 158만 명이다.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기 전인 2015년 6월 기준 수급자 132만명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하였지만, 2016년 수급자 163만 명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2) 실업안전망 확충[30]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7년 10월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

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정다운 사무관

도부터 한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2017년 최대 150만원과 비교할 때 월 30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원이다. 이번 인상 조치로 인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2017년 12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의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역시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급 수준을 10% 상향되고, 지급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210일로 30일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018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추진

① 아동[31)]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수당법 등 법률안을 제안하고 2018년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청년[32)]

2017년 6월 일자리 추경을 통해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 집중취업알선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11만명이 신청하였다.

③ 어르신[33)]

노후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최대 월 20만원으로 도입된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라 2016년 최대 월 20.4만원에서 2017년 최대 월 20.6만원으로 약 2천원 인상되었으나, 2018년 9월부터는 최대 월 2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박근형 사무관
3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이해인 사무관
33) 집필자 :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이해인 사무관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했다. 2016년 38.7만개 일자리를 2017년 43.7만개로 늘렸으며, 6월 일자리 추경을 통해 3만개 일자리를 추가하여 총 46.7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을 2016년 월 20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시군구에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3. 교육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34)]

(1)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정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령 단계별 교육제도 혁신을 추진했다.

첫째, 지식 위주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했다. 2020년까지 전 학교급, 전 학년에 적용할 새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새롭게 반영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토론, 토의, 탐구, 실험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강조한다.

3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전유석 사무관

둘째,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맞춤형 교원연수 대상을 중학교 1학년 교원에서 전 학년 교원으로 확대하고,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를 80개교에서 406개교로 확대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학습 증가에 대응하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2018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는 2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셋째,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함으로서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종합 추진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대학(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융합전공 등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고, 해외분교 설립 없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령을 개정했다.

(2)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정부는 첨단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직업훈련·성인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첫째, SW 능력 교육과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했다. SW 중심대학을 14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고, SW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초·중·고등학교 744개교에서 1,200개교로 확대했다. 한편,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34개 대학·전문대를 사회맞춤

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으로 선정하여 지원했다.

둘째,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고급·신기술 훈련을 확대했다. 폴리텍에 신기술분야 학과를 신설하고 고학력 청년층 대상의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했으며, 역량있는 민간 훈련기관이 신산업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했다. 2018년부터는 홈 IoT, 드론 제어 등 12개 신기술 분야 훈련 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셋째, 신기술분야 성인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도대학 10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분야 지정강좌를 확대했으며, 180여개 강좌를 신규 개발했다. 또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을 통해 필요한 직무능력을 선택하여 습득하는 단기 교육과정인 '한국형 나노디그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3)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정부는 재학생부터 근로자까지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훈련 지원을 통해 구직역량을 강화했다.

첫째,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을 확대했다.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6개교에서 186개교로 확대했다. 또한, 도제학교 졸업생이 고교 단계 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융합·최신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을 시범 도입했다.

둘째, 근로자의 능력 향상 및 이·전직을 위한 훈련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자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훈련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

카드 지원규모를 31만여명에서 39만여명으로 확대하고, 카드 유효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전직훈련의 경우 연령·근무년수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 위탁훈련도 허용했다.

셋째, 취약계층 훈련 지원을 강화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증설하고 직업훈련과정도 690개에서 790개 과정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훈련수당과 훈련비를 일반 직업훈련 수준으로 상향하고,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증설하는 등 장애인 훈련 지원도 확대했다.

제3절 일자리 중심 경제

1. 일자리 정책 로드맵 수립[35)]

(1) 로드맵 수립 배경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도 일자리 창출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경쟁 틀이 바뀌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생산 무인화가 이뤄지면서 중숙련 이하 일자리 감소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여건과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자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다.

(2) 로드맵 수립 과정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실을 신설하고 민관 합동의 로드맵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일자리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이수현 사무관

수석실을 신설하였다. 일자리 상황,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및 경제지표 등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17년 세법개정안, '18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였다.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조율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작업반은 일자리인프라,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노동시장 분과 등으로 구분하였고, 총괄분과는 일자리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KDI, 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포함시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협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일자리정책 로드맵 작업반 회의를 각 분과별로 개최하였고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로드맵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선정 및 부처 간 이견을 협의하고 조정하였다. 일자리정책 T/F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로드맵 준비상황을 점검하였고 균형된 시각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노동계와는 비정규직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 상생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고, 경제계와는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성장역량 확충과 같이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관련 부처, 유관단체, 민간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3) 로드맵 주요 내용

일자리 로드맵의 기본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에 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여 일자리를 늘

리고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 및 세제 등 정책수단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연결되도록 국정시스템을 재설계한다. 이전직과 실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을 경감하고 재취업 기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

둘째,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규제 및 자본에 대한 부담 없이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활용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확충한다.

셋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한다. 비정규직 감축,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대상별 맞춤형 정책대응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애로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여건을 조성한다.

일자리 로드맵의 의의는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는 데 있다.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인 '일자리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다. 로드맵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에 포함된 일자리 중심 경제 및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부문 등 일자리와 관련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또한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 정부의 정책 지침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특징이 있다. 5년간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앞으로 추가 발굴될 일자리 정책과제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여, 로드맵에 포함된 기존 정책과제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업무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 역량을 결집했다. 일자리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협업, 전문가 참여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통해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로드맵 수립에 주력했다. 향후 5년간의 실천 계획과 추진 일정표를 제시하여 국민과의 약속 이행 책임을 명확하게 했으며, 정책 모니터링의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위원회,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했고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과제를 추가, 보완하도록 했다.

〈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

▪ 일자리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 선정

◦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일자리 관련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자리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선정

◦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의 양 확대, 질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분야로 하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점

▪ 10대 중점과제를 뒷받침할 100개 세부 추진과제 제시

◦ 10대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100개 세부 추진 과제 구성, 향후 별도의 대책수립 과정을 통해 구체화

◦ 연차별 이행목표와 법령 제·개정, 별도대책 수립 등 이행계획을 설정하여 차질없이 실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 자원 개발	10개
일자리 창출	공공	③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7개
	민간	④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개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⑦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일자리 질 개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2. 일자리 카라반[36)]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 전국 국가산업단지 20곳을 집중 방문하는 일자리 카라반을 가동했다.

일자리 카라반은 통상적인 행사 위주의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장급 실무자를 팀장으로 팀을 운영하였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도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주로 기업의 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 청년·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복지 실태 등을 주로 점검했다. 또한, 점검방식을 기존 간담회 형식의 현장방문에서 벗어나 근로체험, 호프 미팅, 산학현장 대학생 토론과 같이 다양한 채널을 활용했으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바라보기 위해 대학생기자단 등 청년층도 동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주로 경기여건 악화, 숙련 근로자 이직, 인건비부담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 등에 대한 피해보전, 산업별 특화된 맞춤형 규제개선,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의견이 주요 현장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구직 청년들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산학클러스터 등 지원사업의 연속성 부족,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의 미스매치, 현장실습 기회 부

3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이상용 사무관

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장 구직자들의 경우 구직 의사가 충분한 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충분한 구직기간과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부족, 통근버스·지하철 등 교통 접근성 부족 등 산업단지 근로환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주로 제기했다. 특히 문화생활을 즐길 여건이 부족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표 3-2〉 일자리 카라반 현장방문 일정

번호	지역	일정	단지명
1	경남	10.12(목)	창원국가
2	광주	10.12(목)	광주첨단국가
3	충남	10.23(월)	아산국가
4	충북	10.23(월)	오송생명국가
5	부산	10.25(수)	녹산국가
6	경북	10.26(목)	구미국가
7	경북	10.26(목)	포항국가
8	전남	10.27(금)	여수국가
9	인천	10.27(금)	부평국가
10	경기	11. 1(수)	파주탄현국가
11	경기	11. 2(목)	서울디지털
12	경기	11. 2(목)	반월국가
13	경기	11. 2(목)	시화국가
14	전북	11. 6(월)	군산국가
15	전북	11. 6(월)	익산국가
16	울산	11. 7(화)	온산국가
17	울산	11. 7(화)	울산미포국가
18	강원	11. 8(수)	북평국가
19	인천	11.10(금)	남동국가
20	서울	12. 6(수)	서울디지털

이러한 논의 사항을 토대로 하여 12월에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일자리 카라반 마무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마무리 간담회에는 그간의 일자리 카라반 현장에서 주요 애로사항을 건의한 기업인, 근로자, 청년, 교사들을 직접 초빙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 경영여건과 관련해 233개 성장유망업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의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기존의 3명당 1명 지원에서 인원에 비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간 물품구매 입찰 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단지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0.6조원 규모로 운영중인 산단환경 개선펀드사업을 확대해 2022년 1조원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실직자 자녀의 경우에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대상에 포함해 실직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를 각각 확대하고 7년 이상 장기재직 일시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장기재직 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경로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 임금요건도 완화해 가입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그리고 일학습병행제를 종합 개편해 전담직원 채용, 기업발굴 지원, 참여기업 재정지원 신설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3.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공공서비스 수요는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소득수준 향상, 맞벌이 증가 등 생활양식 변화로 돌봄·요양과 같은 복지 수요가 증가했고, 안전·환경·여가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커졌다.

반면,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소방·경찰·사회복지 등 국민생활접점 분야의 현장민생공무원은 기대 수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었다. 2016년 행정안전부 대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소방·재난 분야 85.1%, 사회복지 64.1%, 경찰 60.1%였다. 국공립 보육·용양시설 비율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1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우리나라가 7.6%로 평균 18.1%의 절반에 못 미쳤으며, 조사대상 27개국중 26위에 불과했다. 노르웨이(30.0%), 덴마크(29.1%), 스웨덴(28.6%) 등 복지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30%에 육박했다.

한편,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의 질 제고도 필요했다. 공공부문 종사자 중 21.5%(42.2만명)가 비정규직이며 파견·용

역 등 간접고용도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했다('15년 11.5→ '16년 12.1→ '17년 17.6만명).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증가는 자칫 숙련 기회 감소,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종합해볼 때 공공부문 일자리의 양과 질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등 향후 4~5년간 청년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역할 강화는 청년층의 고용애로 완화와 함께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2018년 10월 일자리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2022년까지 현장 민생공무원 17.4만개,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의 직접전환 등을 통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공무원 충원 등 구체적으로 확정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 확충을 취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경찰·부사관·교원·생활안전·헌법기관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충원계획을 마련했다. 취약계층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을 2.3만명을 충원하고, 군병력의 간부 중심 전환 및 전문 기술군 양성을 위한 군 부사관을 2.6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비교과교사 인력 보강 및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교원 충원(2만명), 임금체불 신고·소포물량·감염병 발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안전 공무원(근로감독관, 집배원, 감염병 대응 인력 등) 3.1만명을 충원한다. 이를 위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에는 공무원 9,450명 증원 예산이 반영됐다.

소방·사회복지 등 지방직 공무원 7.4만명도 충원할 계획이다. 긴급구조역량 강화 및 화재·안전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방공무원

2만명을 충원하고, 선진국 수준의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1.9만명 확대한다. 그 외 재난안전·가축 간염병 예방 등 지역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3.5만명 충원한다.

보육·영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우선적으로 17만개 마련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 확대 등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일자리를 6.4만개 제공하고, '치매 국가책임' 등 국가가 책임지는 요양서비스 구축을 위해 치매예방·관리 인력 등 노인돌봄 일자리를 4.1만개 확대한다. 그 외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충 일자리 2.4만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3.5만개, 생활체육·공공도서관 등 여가활용 일자리 0.6만개를 만든다.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위한 2단계로서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 공단을 운영하여 국공립 시설을 수탁·운영하거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업무를 3단계에 걸쳐 5년간 총20만명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전환하되, 대규모 컨설팅팀을 구성해 중재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기업·준정부·기타 공공기관 인력을 2022년까지 6~8만명 충원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04

혁신성장

제 4 장
혁신성장

제1절 산업생태계 혁신

1.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37)]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융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격한 기술발전과 짧은 수명주기로 인해 개별기업이 시장경쟁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보유하기 곤란해졌다. 이에 따라 핵심역량을 보유한 혁신주체간 '네트워크'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간의 협업(수평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상생형), 대학·연구소·소비자와의 연계(개방형) 등 기업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중이다. 2017년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지원 사업을 개별기업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고, 11월에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글로벌 산업경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연구개발·금융·판로 등 지원체계를 협업기

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선아 사무관

업 중심으로 구축할 것이다. 특히 기술개발환경의 복잡화로 증가하는 단독 R&D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네트워크형 기술개발[38]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소기업이 밸류체인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근로자에게 그 성과가 공유되는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을 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실효성 있는 성과공유, 상생결제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기업 내부 R&D 활동 중심에서 대학·연구소·소비자 등 외부자원과 연계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지난 1월 판교 테크노밸리에 중소·중견기업기술혁신센터」를 개소했고,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확산방안」을 마련하여 22년까지 참여·융합형 창작활동 공간(Creative-lab)을 35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2.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생산 프로세스 혁신[39]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품종 유연생산 등 제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등을 지원중이고, 2014년~2017년 4년간

38) 기획 단계에서는 공동개발기관 매칭, 사업화 전략수립, 상호협력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체를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을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3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선아 사무관

5,003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했다[40]. 2018년에는 스마트 수준을 고도화·첨단화하고, 민간·지역 중심의 보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결과, 구축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은 30.4% 향상되었고, 불량률은 45.3% 감소, 원가는 15.5% 절감, 납기는 16.4% 단축되었다. 산업재해율도 22%가 감소하는 등 근로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구축기업은 평균 2.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3.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추진[41]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핀테크, 공유경제 등 성장잠재력이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2016년 7월 마련·발표했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276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서비스발전전략에 따른 제도정비, 규제개선 등 대부분의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물류 등의 새로운 시장형성 기반이 마련되었고, 서비스가 다양화,

40) 정부 지원 3,495개, 민간 지원(대기업 출연) 1,508개
4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이우형 사무관

고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비과세·감면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부터는 서비스업종에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했다. 또한, 중장기 서비스 R&D 투자 확대계획을 수립('17.2월)하고, 시장 진출입행위 등 업종별 주요규제를 개선·정비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세제혜택 도입 등 시장활성화를 적극 지원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핀테크산업의 경우 2015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핀테크 혁신을 추진중이다.

소규모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핀테크기업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2017년말 기준으로 274개 기업이 452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금융권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다. 아울러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들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17년말 기준으로 약 1조 3천억원의 여신을 지원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마련중이다. 기존의 백화점식 종합대책보다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분야별 혁신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2018년도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비스혁신을 위해 시급하

고 파급력이 있는 ‘서비스 R&D 혁신’과 ‘신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국내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현황과 관련 규제·이슈 등 공유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 하반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교통, 숙박, 공간, 금융 등 분야별 제도정비 방안과 과세, 참여자 보호, 기업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2절 혁신성장 거점 구축

1. 개 관[42)]

새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월 발표)」에 따른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존 산단을 개선하여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17년말 기준, 10개 혁신도시의 준공이 완료되고, 이전 공공기관 153개 중 147개가 이전하여 혁신도시의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상당 부분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혁신도시 정책이 기관 이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균형발전 거점화하는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2.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우선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17년 9월에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하고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7년 10월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

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정혜경 서기관

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법 명칭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의무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관 내 계획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동시에 혁신도시 지역거점화를 위한 정책마련 작업도 진행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시즌2」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강화와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표 4-1〉 혁신도시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시즌1 ('05.~'17.)	시즌2 ('18.~'30.)
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방식)	지방정부 (Bottom Up방식)
정책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7.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략’이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동 안건을 통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산업단지,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하여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보조금, R&D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클러스터내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LAB)’을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제도를 통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산업과 산학 연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그림 4-1] 지역별 성장 거점군 및 혁신산업 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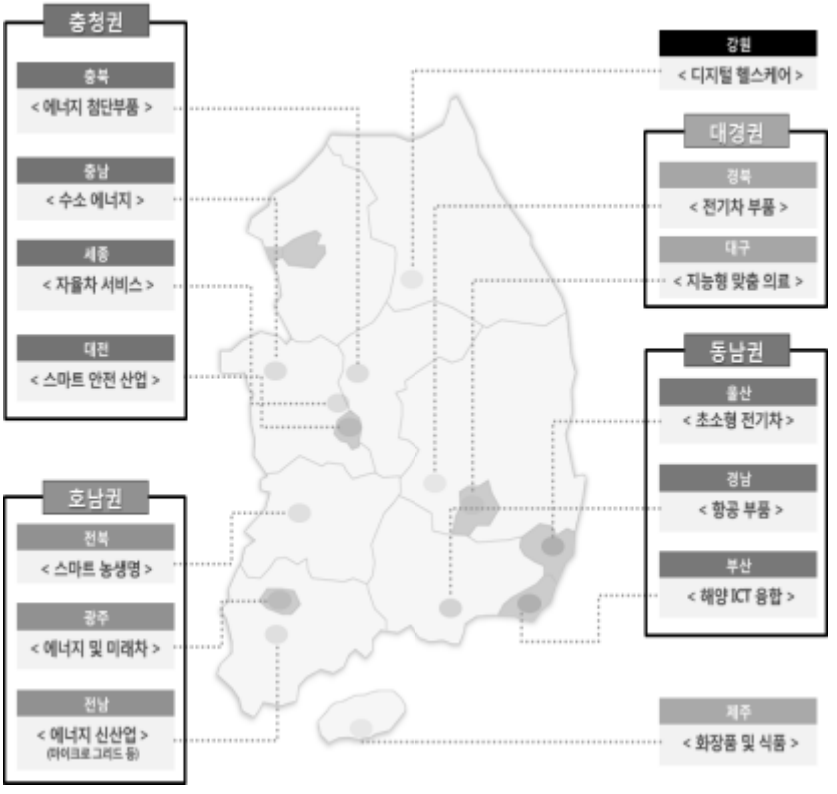

3.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거점 클러스터 육성

산업단지는 '16년 기준 제조업 고용의 48%(216만명), 생산의 71%(985조원), 수출의 80% (3,687억불)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를 제조업 혁신공간으로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22년까지 13,000개를 목표로 산업단지 내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청년과 여성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복지·주거·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간 고용부(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체육·보건시설), 국토부(근로자 임대주택 보급), 문체부(문화예술 활동 지원), 산업부(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 등에 분산되어 추진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이 통합지원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 주관의 정부합동공모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4. 참여형 혁신창업 기반 확산

세계 주요국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빠른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이커 활동이 확산되고 있었다. 국내의 메이커 활동은 공공주도로 물리적 공간은 조성되고 있었으나, 사업화·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자생적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메이커 활동공간을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과 체험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양산 및 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이러한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17.11월 관계부처 합등으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8년 중 전국에 총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설치될 계획이다.

제3절 규제혁신[43)]

1.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혁신성장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므로, 민간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혁신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필수 전제요건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신제품·서비스의 창출도 보다 다양화되는 현 시점에서 규제혁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도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4-2]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목표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추진전략	■ 新산업·新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 출처 :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 국무조정실)

4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성기웅 사무관

2.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토대 마련

법령에 나열된 방식만을 허용하고 이외의 형태는 금지하는 현행 포지티브(positive)식 규제체계가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현행 포지티브식 규제들을 "우선 허용-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준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17.10월)을 마련하였다.

[그림 4-3]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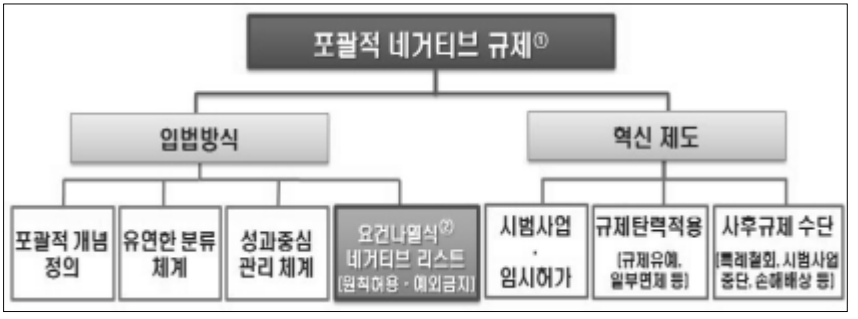

* 출처 :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17.10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그림 0-0상의 ①)에는 네거티브 리스트(협의의 네거티브 규제, 그림0-0상의 ②)를 포함한 다양한 입법방식과 혁신제도를 포함하고 있다.[44]

44) 본래 네거티브식 규제의 의미는 "열거된 금지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방식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실제 이 방식으로 구현 가능한 규제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부는 기존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입법방식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정립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모든 규제들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부터 우선 검토하여 신속히 전환하고, 다른 분야의 규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 4-2〉 유연한 입법방식 유형

구 분	주요 내용
포괄적 개념정의	요건·기준과 결합된 한정적·열거적 정의 개선 * (예) 유가증권 종류 열거 → 증권 개념을 원칙 중심 정의 (자본시장법 제4조)
유연한 분류체계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 * (예) EU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 + 기타유형 L7로 분류
성과기준 규제	투입요소 사전규제 → 결과중심 기준 규제로 전환 * (예) 배출총량 기준 대기오염 관리(수도권 대기환경법 제16조)
네거티브 리스트 (협의의 네거티브)	일반적 허용원칙-예외적 금지조건 제시,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모두 허용 * (예) 폐기물 재활용원칙 명시, 금지사항 규정(폐기물법 제13조2)

(2) 혁신제도 :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규제 입법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더러 신속히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제한된 환경하에서 신제품·서비스의 테스트를 우선 테스트를 허용하고 사후에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45]'를 도입하기로 했다.

45) '샌드박스(Sandbox)'는 나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모래를 담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을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되면 혁신사업자는 신제품·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임시허가 기회를 부여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규제를 유예하거나 일부 면제하는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현재 드론[46]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개별법상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신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마련을 준비중에 있다.

(3)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 착수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로드맵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혁신성장 옴부즈만 : 상향식(Bottom-up) 혁신성장 지원창구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혁신기업이 원하는 바를 즉각 인지하고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경제단체·기업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소통을 지속하였지만,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부와 혁신

46)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 공역에서 금지된 규제(고도제한, 비가시권 비행, 야간 비행 등)들을 시범공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항공안전법 제129조)

현장의 민간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원할 지원단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내년 1월 위촉을 목표로 적임자를 검토중에 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민간인으로 기업 혁신과 규제관련 전문가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임기는 총 3년이다.[47]

47) "혁신성장 옴부즈만 운영규정"('17.12.12, 제정)

제4절 혁신자본·혁신안전망 확충

1. 개 관[48)]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히 창업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안전망 확충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벤처투자가 2.3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혁신자본 공급이 늘어나고,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되는 등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림 4-4] 벤처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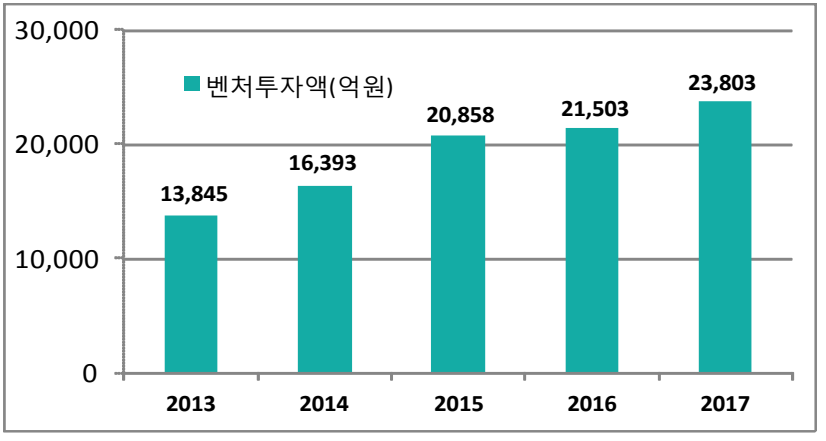

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낙현 사무관

2. 주요 대책

정부는 2017년 4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대책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1,000억원)' 등을 신규 조성하고 보상형(reward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M&A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400억원)를 신규 조성하는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하여 혁신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다.

6월에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하였다. 또한,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내규를 개정하여 법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모태펀드 내에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3,000억원)'를 조성하여 창업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였다.

11월에는 혁신자본·안전망 확충 방안 등을 담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관계부처 합동, '17.11월)을 발표하였다. 혁신자본 확충을 위해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20조원 규모의 연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추경예산 등을 활용하여 모태펀드에 8,6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4-5] 혁신모험펀드

벤처투자 확대 및 성장과실 공유를 위해 엔젤투자 및 우리사주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하는 한편,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벤처특별법 및 창업지원법 통합을 통한 벤처투자제도 통합, 창투사 자본금 요건 완화 및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벤처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그림 4-6] 벤처투자 확대 및 성장과실 공유

'창업 → 실패 → 재도전'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창업 7년 내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실패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로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재창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상향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 재기기업인 체납처분·징수유예 기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2월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벤처투자 컨벤션 실시, 대학창업 성과 전시,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등 중기부·미래부(현 과기정통부) 등 부처별 행사를 연계하는 한편, 기존 창조경제박람회 및 벤처창업대전을 통합하여 민간 중심의 벤처 페스티벌인 '벤처창업 페스티벌'을 11월 개최하는 등 혁신자본 공급을 비롯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향후 정책방향

신설법인·벤처투자 등 양적 지표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혁신 창업생태계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정부는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스케일업(Scale-up) 지원,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제5절 4차 산업혁명 대응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가의 대응[49)]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강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일본 신산업구조비전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공적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을 준비했다.

〈표 4-3〉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구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주요 정책	· AI R&D 계획('16.10) · AI 미래 준비('16.11) · AI, 자동화와 경제 ('16.12)	· 첨단기술전략('10.7) · Industry 4.0('11.4) · 플랫폼 인더스트리4.0 ('15.4)	· 초스마트화사회 전략('16.1) · AI 산업화 로드맵('16.11) · 신산업 구조 비전('17.5)	· AI 3개 실행계획('16.5) · 차세대 AI 발전계획('17.7)
추진 목표	· AI 분야 경쟁력 확보 · 사회적 혜택 강화	· 디지털 경제 변화 대응 · 스마트공장 선도	· 전 분야의 기술혁신 · 경제·사회문제 해결	· AI 차세대 성장동력화 · 경제·사회문제 해결
주요 내용	· AI R&D 전략방향 제시 · 교육 및 고용구조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방향 제시	· 글로벌 표준화 추진 · R&D 지원 · IT 인프라 보안 강화 · 새로운 인력교육 방식 도입	· 4개 전략분야 선정 (이동, 생산, 건강, 생활) · 데이터, 규제, R&D, 보안, 인재, 고용,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 인공지능 기술선도 · AI 국가연구소 설립 · 산업 스마트화 · 스마트사회 건설 (의료, 건강/양로, 교통,)

출처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김도익 사무관

2.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R&D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정부는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발표를 통해 지능화 혁신,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 가시화하고 새로운 융합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사회 전 영역의 지능화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화 기반의 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 의료, 제조업 디지털 혁신(스마트공장, 제조로봇), 스마트 이동체(자율차, 자율운항선박), 미래형 에너지 혁신(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금융(핀테크), 스마트 농수산업 등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시티(지능형 스마트홈), 스마트 교통(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복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 안전(풍수해, 소방, 지진), 스마트 국방(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 등 사회·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과 연계한 맞춤형 집중지원, 연구자 중심의 R&D체계 혁신 등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통한 새로운 혁신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R&D 프로세스 개편,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 등 R&D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성장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5G 조기 상용화와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지원하고, IoT 전용망 구축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데이터 구축, 개방, 유통·활용 전과정에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넷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창의인재 육성, 전직·재직자 교육훈련 강화, 고용보험·실업급여 체계 개편 등 고용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전망 강화 및 AI 오작동 등 역기능을 예방을 위한 인간 중심의 윤리 정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2) 혁신성장동력 추진

정부는 2017년 10월「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12월「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등의 발표를 통해 지난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통합하여 R&D 관련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표 4-4〉 혁신성장동력

지능화 인프라	무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① 빅데이터	④ 자율주행차	⑥ 맞춤형헬스케어	⑩ 지능형반도체*
② 차세대통신*	⑤ 무인기	⑦ 스마트시티	⑪ 첨단소재*
③ 인공지능*		⑧ 가상증강현실	⑫ 혁신신약*
		⑨ 지능형로봇	⑬ 신재생에너지

* 원천기술 확보분야(5개), 나머지는 조기상용화 분야(8개)

첫째 선정된 혁신성장동력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는 분야는 여건조성, 수요창출 등 조기상용화를 지원하고,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는 기술성숙도에 맞게 원천기술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신규분야 발굴·기획에서부터 연구개발 사업·추진체계 개편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성장동력 성과 분석·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셋째 성장동력 분야의 실증, 시연 및 국민체험을 증대하고, 재난안전 영역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국민체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05

공정경제

제 5 장
공정경제

제1절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50)]

1. 개요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가맹분야('17.7월)를 시작으로 유통('17.8월), 기술탈취('17.9월), 하도급('17.12월) 분야 대책을 차례로 발표하였고 내년 상반기 대리점 분야 발표를 끝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기업회계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지속해나기로 했다.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정지운 사무관

2. 주요 거래분야별 대책

(1)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17.7.18)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가맹점주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 특성에 기인한 구조적 취약성이 불공정관행을 유발한다고 보고 1)정보공개 강화 2)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3)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4)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상의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 조정을 요구하거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미리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세한 가맹점주가 사후에도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 소위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등 위법한 관행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2)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17.8.10)

그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현장 의견과 유통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1) 불공정행위 처벌 및 단속 강화 2)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 3) 자율 상생협력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새롭게 마

련하였다.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조치 등의 경우 최대 3배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조정(위반액 30~70% → 60~140%) 및 정액과징금 상한 인상(예: 5 → 10억)을 추진하여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각지대에 있는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대상을 기존 백화점 · 홈쇼핑 ·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 · 아울렛까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대형유통업체가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고 각 시 · 도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자율상생을 촉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3)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17.9.1)

대기업의 빈번한 기술유용으로 인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 강소기업이 등장하기 힘들고 혁신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여 기술유용행위를 적극예방 ·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벗어나 선제적 직권조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공정위 내에 설치하고, 기술유용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편법적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받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의 조사시효를 '납품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17.12.20)

불공정한 거래조건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아 종합적인 공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요구행위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제도상 가점제도를 활용하여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까지 개선을 유도하는 등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3 → 10배 이내) 등 처벌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 자본시장 교란행위 근절

금융부문에도 반복되어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분식회계 방지 등 회계의 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기 위

해 외부 감사대상 확대(주식회사 → 유한회사 추가)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외부감사법, '17.10월)하였다. 나아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 시효 및 벌금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제2절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51)]

1. 개요

담합 방지 및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효용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확충했다.

2.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경쟁 촉진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먹거리·생필품·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7월)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의 유통과 산림레포츠시설 내 휴게음식점·매점 설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레저용 항공기 대여 서비스업·마리나 선박대여업 등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여 레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중소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양식용 민물장

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정지운 사무관

어 치어 수입의 연중 허용, 저도수 돋보기 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등 관계부처·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던 과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 총 18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확정(12월)했다. 금년 마련한 개선 방안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담합행위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게 되면 피해자중 일부가 소송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담합 대신 경쟁에 나서도록 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도 폭넓게 구제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세한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보호·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1단계 정식 가동(3월)했다. 한편 소비자 권익증진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정책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증원하여 소비자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4월, ‘18.4월 시행)하여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우선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급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그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감시·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모바일 숙박앱(4월), 온라인 쇼핑몰(8월) 등 온라인·모바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홍콩·싱가포르 등 확대, ‘17.5월)하여 온라인 해외구매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제3절 기업 소유 · 지배구조 개선[52)]

1. 개요

편법적 지배력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제 전반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 소유 ·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우리경제 성장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시책이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자산 규모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4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적용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각종 공시 · 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한다.

〈표 5-1〉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집단구분	적용시책	비고
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 이상)	①공시 의무, ②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 적용	공정거래법 개정('17.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공시대상집단 적용시책 + ③상호 · 순환출자 금지, ④채무보증 금지 ⑤금융 · 보험사 의결권 제한	시행령 개정 ('16.9월)

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정지운 사무관

3.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세 과세 기준 및 대상을 종전보다 강화('17년 세법)했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17.9월)하였다.

4. 순환출자 해소

또한 순환출자 해소 등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했다. 순환출자는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 집단을 소유하고 위기발생시 계열사의 연쇄부실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17.6월, '17.11월)를 개최하여 자발적 개선을 협조하는 자리를 가졌다. '17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수는 8개 집단 93개에서 '17년말 기준 8개 집단 28개로 줄어드는 등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2〉 순환출자 고리수 ('17.12.31. 기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7	4	8	1	2	1	3	2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5. 공정거래법 · 상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궁극적으로는 기업 소유 ·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현황 의무공시, 지주회사의 보유지분율 · 부채비율 등 행위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 마련 및 주주권 강화를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 시장에서 주주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그간 투자가 주목적인 기관투자자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산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연기금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중이다.

7.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

마지막으로 금융분야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13년 동양그룹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그룹내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융그룹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 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검토,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위험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8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4절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1. 동반성장 촉진[53)]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낙수효과 약화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현을 위한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극복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 유도를 위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였다.

성과공유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2·3차 협력사까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 누적 기준으로 현금성 모델(현금배분, 물량확대, 시제품구매보상, 기술료배분) 유형은 총 2,688건, 1조 1,166억원이 수탁기업으로 공유되었고, 비현금성 모델(단가반영, 지식재산권공유, 성과귀속, 거래기간연장, 판로보장, 입찰기회부여)은 총 4,586건이 수탁기업에 공유되었다.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확대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율 상향(7%→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기금 사용목적(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해외시장진출, 온실가스 및 에너지

5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오성태 사무관

절약)을 폐지하고 전면 개방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인력교류,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용도로 기금을 출연(2011년~2017년 누적 기준 178개 기업으로부터 8,054억원)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 관계에 있어 2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운용액은 184조 8,738억원, 구매기업은 331개, 거래기업은 152,296개가 활용하고 있으며, 총 9개 은행이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기업 간에 상생결제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확산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0.1%~0.2%)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그간 제조업 또는 하도급 구조 위주의 성과공유제를 보완하고 유통·IT·플랫폼 업종 등에 적합한 새로운 이익공유모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2. 골목상권 보호 강화[54)]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은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최저임금 인상, 카드수수료, 임차료 상승 등으로 인한 각종 비용·지출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소득부진·영업이익률 하락과 폐업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형마트·SSM·편의점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운용중인 적합업종, 사업조정 등 보호제도가 이행강제력 부족으로 사업영역 및 골목상권 보호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발표 후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등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인건비·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세금, 금융채무 등 각종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정적인 상가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료 인상율 상한을 5%(現 9%)로 낮추고,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범위인 환산보증금을 50% 이상 수준으로 상향(서울은 4억원에서 6.1억원, 부산·과밀억제권역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 확대, 제3의 기관에서 작성 대행 등 현 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하였으며,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2회

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오성태 사무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된 이래 2017년까지 총 73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사업 진출·확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동반성장위원회) 자율 기반의 한시적 권고(3+3년)로 운영되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대기업 사업제한을 강제할 경우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의 검토를 선행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연구용역('17.4월)을 통해 적합업종 법제화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2017년 국회에서도 적합업종 법제화 취지 법안이 다수 발의(4개 법안/이훈 의원·정유섭 의원·이현재 의원·이언주 의원)된 바, 정부는 각 법률안 심사과정을 통해 연구용역 시 도출된 정책 방안이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2018년 중에 특별법 제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이 완비되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5절 사회적경제 활성화[55)]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채택해,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2017년 10월,「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사회적경제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 ②사회적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분야로의 진출 확대 등 Two-Track 전략을 제시했다.

[그림 5-1]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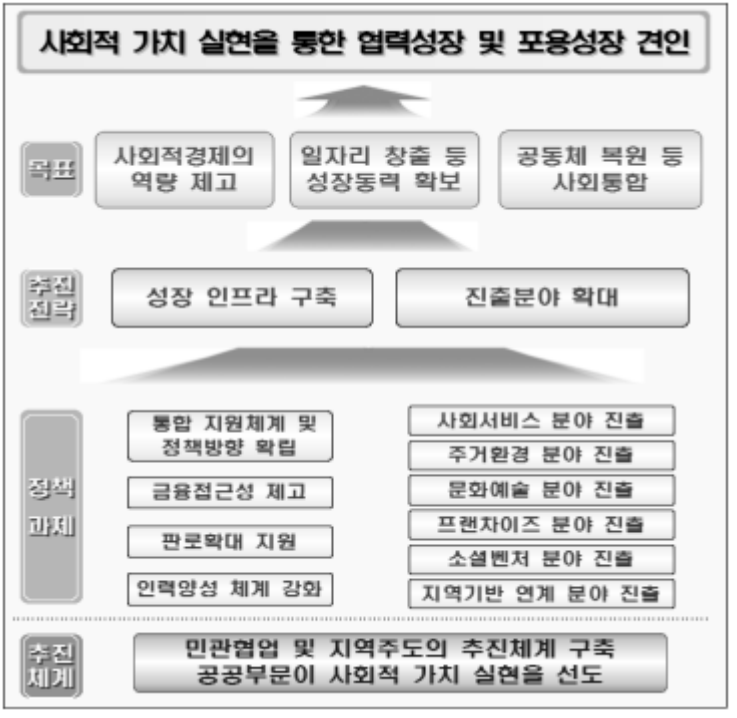

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장현중 사무관

2.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1) 통합 지원 체계 확립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 부처 협의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안도 제시했다.

(2) 금융 접근성 제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보·지신보 보증 확대, 정책 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목표 신설 등 공적 금융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펀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환경도 개선하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3) 판로 확대 지원

국가계약법상의 공공 조달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 책임 조달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지자체·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4) 인력 양성 체계 강화

초·중등교육, 직업훈련, 공무원 교육 등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 참여형 학습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

축, 청년 창업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특성과 분야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6개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동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표 5-3〉 사회적경제 진출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 과제

분야	주요 정책 과제
사회 서비스	• 시장 진입 장벽 해소 • 사회 서비스 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 지역복지 서비스 품질 제고 •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및 서비스 표준화 • 新사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사업화
주거·환경	•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 • 도시 재생·임대주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촉진
문화·예술	• 창작 활동 기반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문화 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 관광·체육 진흥 사업 활성화
프랜차이즈	•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 성과 달성이 용이한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소셜 벤처	• 임팩트(Impact) 투자 펀드 조성 • 소셜 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팁스(TIPS) 운영사 선정 • 민간 임팩트 투자 활성화 지원 • 소셜 벤처·창업 등 관련 종합 정보 제공
지역 기반 연계	• 마을기업 육성, 유휴 공유재산 대부 등 지자체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 농어촌 기반 특화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06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제 6 장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제1절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민간 활력을 제고하여 경기 개선세를 확산시키고, 대내외 위험 요인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경기회복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 내수 활성화 방안

정부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 출범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방안을 추진하였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하였다.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구조조정 업종,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업 안정망을 확충하였다. 아울러,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주거비·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 등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였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철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진료비 정책제고를 개선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2.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

새정부 출범 이후 고용·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추석 전 70%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다만, 고용은 '17년 8월 중 양적 개선세가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고, 가계소득도 저소득층의 어려운 일자리 여건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집행을 보다 가속화하여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

로 집행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하여 대상자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확충, 전월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보료 체납에 따른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확충하였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안전 관련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장기화 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업,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간 피해 업계를 대상으로 금융·예산·세제 지원 등을 시행하였으나, 피해가 누적되며 경영애로가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여행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세제·예산 지원 등 업종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 완화에 총력을 다했다.

먼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관광업계를 지원하였고, 중소 면세점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금융·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자동차 업계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미래차 R&D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정인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

대금리 적용을 농림 수산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유망품목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역직구 전자상거래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해 우체국 EMS 등 요금할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품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특정 지역·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다변화를 지원하였다. 고위급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스마트시티·철도·원전 등 인프라 수주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투자 개발형 사업 확산 등 글로벌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전략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서비스 해외진출 1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투자심리의 신속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통신·방송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유망 분야 중심으로 조기 착수 가능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제2절 대외 건전성 관리

1. 선제적인 위험요인 점검[56)]

정부는 2017년 중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 노력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미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금리인상 지연 우려 등 다양한 위험요인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정부는 美 연준의 FOMC, 영국 브렉시트 진행 등 주요 이벤트를 전후하여 시장 상황의 변화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외국인자금 유출입 등에 대한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선행성과 민감도를 지속 보완함으로써 위기를 예측하고 시장상황 변화를 적기에 포착하는 능력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 대비해 나갔다.

또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 FOMC 기준금리 동결, 북한 핵실험 직후 등 매월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대내외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시장에 일관된

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재우 사무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24시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외환시장, 국내 금융시장, 금융기관 익스포져 등 각 세부 분야에 대한 일별 점검·보고체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2.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57)]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외채 급증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그 이후 단기외채가 감소하고 외채의 만기구조는 장기화 되는 등 외채 구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표 6-1〉 외채 현황 추이

구 분		'11말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 외채(억불)		4,000	4,089	4,235	4,243	3,961	3,809	4,188
	단기외채	1,398	1,280	1,118	1,164	1,043	1,052	1,159
	장기외채	2,603	2,810	3,117	3,079	2,917	2,758	3,029
단기외채/총외채(%)		34.9	31.3	26.4	27.4	27.1	27.6	27.7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2017년 1월에는 그간 모니터링 지표로 운영되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 LCR : Liquidity Coverage Ratio)을 공식 규제로 도입하였다. 그동안의 외화 유동성 규제체계는 평상시의 만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외화 자금조달이 어려운 위기시에는 대응하

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재우 사무관

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도입한 것으로,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시 모든 은행이 외화 유동성 규제를 충족하였으나, 실물부문에 외화 공급이 감소하는 등 외화 유동성이 부족했었던 경험 등에 바탕한 것이다. 외화 LCR 규제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등 모든 국내은행이 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외화부채 - 외화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대외 충격시에도 실물 부문에 외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국내 은행들이 외화 LCR 준수 과정에서 외화자산을 선진국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다변화 하는 등 다양한 외화자산 운용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화 LCR 규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다. 일반 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60%, 70%, 80% 비율을, 기업·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40%, 60%, 80%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규제체계를 외화 LCR 중심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 실효성이 낮은 규제,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들에 대한 정비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7일 만기불일치 비율, 외화 여유자금비율, 외화 안전자산보유 비율 등은 폐지되었고, 외화 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은 1개월 만기불일치 비율,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의 경우 기존 요율(10bp)이 유지되는 가운데, 2017년 7월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어 급격한 자금유출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영[58)]

정부는 환율이 외환수급, 경제 펀더멘털 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쏠림현상에 의한 급격한 변동을 완화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연중 이어지는 한편, 북한 리스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등 대내 요인들이 대외요인과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내외 불안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주요 이벤트를 전후로 투기적 움직임에 따른 쏠림현상이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였다. 환율의 상승/하락 어떠한 방향으로든 과도한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환율 급변시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였다.

4. 다층적 금융안전망 강화[59)]

가. 통화스왑

정부는 유사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다층적

5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용준 사무관
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신태섭 사무관,
기획재정부 지역금융팀 이정아 사무관

인 금융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과의 양자간 통화스왑 체결과 더불어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이라는 ASEAN+3 국가와의 다자간 통화스왑 구축을 통해 다층적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7.11월에는 6대 기축통화국 중 하나인 캐나다와 최고한도가 정해져있지 않고, 계약기간이 따로 없는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위기시 외화 유동성 관련 우려를 크게 불식시켰다고 평가된다. '17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약 1,200억불+a 규모의 양자 및 다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시 제2선의 외환보유액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표 6-2〉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양자 통화스왑						다자 통화스왑
	한-중 (원↔위안)	한-UAE (원↔다르함)	한-말련 (원↔링깃)	한-호주 (원↔호주달러)	한-인니 (원↔루피아)	한-캐나다 (원↔캐나다달러)	CMIM (달러 ↔ 자국통화)
규모	560억불 상당 (3,600억 위안 /64조원)	54억불 상당 (200억 디르함 /5.8조원)	47억불 상당 (150억 링깃 /5조원)	77억불 상당 (100억 호주달러 /10.7조원)	100억불 상당 (115조 루피아 /10.7조원)	무제한	384억불 인출가능
만기	'20.10월	'16.10월 (연장협의중)	'20.1월	'20.2월	'20.3월	무기한	없음

나. 역내 금융안전망: CMIM과 AMRO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ASEAN+3 국가들은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역내 금융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

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역내 양자간(bilateral) 통화스왑을 체결했다. 2010년 3월에는 공동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단일계약에 의한 공동의사결정 제도를 갖춘 다자간(multilateral) 통화스왑 협정인 CMIM를 구축하여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CMIM 출범이후 최초로 협정문 정기점검을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2017년 12월 ASEAN+3 차관회의에서 협정문 개정문(안)이 제시되었고, 2018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4월에는 ASEAN+3 역내 거시경제·금융상황 등을 점검하고 CMIM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감시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출범했다. ASEAN+3 회원국들은 AMRO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객관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년 2월 회원국들의 자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였다. 2017년 4월 AMRO의 역내 거시경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현재 AMRO가 비공식적으로 수행하는 CMIM 사무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제3절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1. 공공요금 안정[60)]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민생활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2차례 인상(소매요금 기준 3월 3.1%, 5월 3.1%)했다. 이후 미수금 정산에 따른 인하요인을 즉시 반영하여 '17.11월부터 요금을 평균 9.3% 인하했다.

〈표 6-3〉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단위: 원/MJ)	~'17.2	'17.3	'17.5	'17.9
평 균	14.2473	14.6890	15.1444	13.8214
주택용	15.3614	15.8031	16.0910	14.7572
업무난방용	15.8706	16.3123	16.4397	15.1059
일반용(영업용1)	14.9716	15.4133	15.8919	14.5581
일반용(영업용2)	13.9699	14.4116	14.8902	13.5564
산업용	12.7333	13.1750	13.8138	12.4800
수송용	12.6357	13.0774	13.7162	12.3824

자료 : 산업부

6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현경 사무관

국내 우편요금은 대체통신 발달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한 우편수지 적자에 대응하여,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에까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편요금을 인상했다.

〈표 6-4〉 국내 우편요금 조정내역

	구분	중량	우편요금	
			현행	개정(안)
통상 우편물	규격 우편물	5g까지	270원	300원
		5g초과 25g까지	300원	330원
		25g초과 50g까지	320원	350원
	규격외 우편물	50g까지	390원	420원

자료 : 우정사업본부

2. 농축수산물 가격안정[61)]

2017년 농축수산물 가격은 폭염·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AI 발생, 어획량 감소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5.5%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4.6%, 축산물 6.5%, 수산물은 6.8% 상승하였다.

〈표 6-5〉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

(단위 : %)

전년비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곡물	채소	과실		
물 가 상승률	5.5	4.6	△3.3	△1.0	14.6	6.5	6.8

자료 : 통계청

6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현경 사무관, 이성준 사무관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계약재배 사업을 채소가격 안정제로 개편하여 참여물량을 확대('16년: 배추, 무, 양파 생산량의 5% → '17년 마늘 추가, 생산량의 8%)하고, 주산지협의체를 육성('17년 무, 배추, 마늘, 양파 신설) 하는 등 사전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불안했던 양파, 배추, 건고추 등에 대해서는 비축·계약재배물량 집중 방출, 소비지 할인판매, TRQ 도입 등 적극적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했다

AI로 공급불안이 발생한 계란 수급 조기안정을 위해 계란 수입선을 다변화('17.6월, 태국산 수입허용)하고, 할당관세를 적용(~'17.12월)했다.

또한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상시비축제(연간 비축물량의 5~10% 수준 상시 보유)를 도입('17.3월)하고, 오징어 긴급수매·방출, 민간 재고 유통, 원양산 수산물 직거래 행사 등 부족한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농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성수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3. 유통구조 개선[62)]

정부는 농수산물, 통신, 석유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했다.

농산물은 직거래 확대,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16년 148개 → '17년 188개), 우수 사업자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를 추진(12개소)했다. 이와 더불어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소출하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가·수의매매 예약거래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거래를 확대해 나갔다.

통신시장의 경우, 알뜰폰 활성화, 요금할인 등으로 통신비 안정을 유도했다. 알뜰폰의 경우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했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17.10 → '18.9)했다. 또한, 또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이용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석유시장의 경우, 독과점적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공동구매를 통해(17년 연간 계약물량 12억ℓ) 정유사·석유공사 간 계약가격을 인하했고,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구매물량에 따른 가격할인을 제공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생산자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감시했다. 물가감시센터의

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현경 사무관

생필품 원가 분석 품목을 확대(37개→39개)했으며, 해외직구 품목, 친환경식품, 산후조리원 가격, 피트니스 가격 등 주요 품목·서비스 가격을 비교·공개하여 합리적 소비자 선택을 장려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치킨 등 주요 가격인상 품목·서비스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가격 부당 인상 억제를 유도했다.

제4절 부동산시장 안정화

제4절 2017년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은 2016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승폭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2015년 이후로는 수도권의 상승폭이 지방의 상승폭을 앞질렀다. 특히 2017년 5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여 수도권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0.39%를 기록했다. 주택거래량은 수도권이 2016년 56.8만건에서 2017년 50.3만건으로, 지방이 2016년 48.5만건에서 2017년 44.3만건으로 감소하여 총 94.7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대비 10만호정도 감소된 수치이다.

〈표 6-6〉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단위 : %, 만건)

		2016	20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가격	전국	0.7	1.5	0.02	0.01	0.06	0.10	0.14	0.21	0.18	0.25	0.12	0.13	0.13	0.11
	수도권	1.3	2.4	0.01	0.02	0.08	0.15	0.21	0.35	0.29	0.39	0.16	0.20	0.25	0.25
	지방	0.2	0.7	0.02	0.01	0.04	0.05	0.09	0.09	0.08	0.12	0.10	0.07	0.02	-0.01
거래량	전국	105.3	94.7	5.9	6.3	7.7	7.5	8.5	9.8	9.8	9.7	8.4	6.3	7.5	7.1
	수도권	56.8	50.3	2.6	2.8	3.8	3.9	4.7	5.7	5.8	5.7	4.6	3.1	3.8	3.7
	지방	48.5	44.3	3.2	3.5	3.9	3.6	3.8	4.1	4.0	3.9	3.8	3.2	3.8	3.4

자료 :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2017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美 기준금리 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며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5월 이후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지적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월)을 발표했다. 대책에서는 2016년 11월에 지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의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에서 기존에 1년 6개월로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강남 4개구와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변경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LTV·DTI 규제를 각각 10%p 강화하여 LTV 60%, DTI 50%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수도권 과밀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1주택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월) 발표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나,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고, 과열 현상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전역, 과천 및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 4개구와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및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시행이 중단되어 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2018년 1월부터 재시행하도록 했다.

〈표 6-7〉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구 분	투기과열지구 ('17.8.3)	투기지역 (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 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 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 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또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 대비 10%p~20%p 중과하고, 이때 3년 이상 주택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도록 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요건을 추가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표 6-8〉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중과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2%)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금융규제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에서 40%~70%로 적용되던 LTV·DTI를 40%로 강화했다. 다만, 일정기준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10%p 완화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이하로 제한했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 또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 물량을 확대하여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표 6-9〉 8.2 대책 LTV·DTI 규제 비율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LTV	DTI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70%	60%
주담대 미보유 (기본)	40%	40%	60%	50%	70%	60%
주담대 1건 이상 보유 (강화)	30%	30%	50%	40%	60%	50%

* ①무주택세대주, ②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③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제5절 가계부채 관리 강화[63]

1. 가계부채 동향

2017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1,450.8조원을 기록했다. 2016년말 대비 8.1% 증가하며, 3년 만에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안정[64]되었다. 2015~2016년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가 비교적 빠른 속도 증가하였으나,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한 결과 한 자릿수 증가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표 6-10〉 가계부채 동향

(단위 : 조원, %)

	'16	'17			
	4/4	1/4	2/4	3/4	4/4
가계신용	1,342.5	1,359.1	1,387.9	1,419.3	1,450.8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1.6)	(11.1)	(10.4)	(9.5)	(8.1)
가계대출	1,269.8	1,286.1	1,313.0	1,341.3	1,370.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1.6)	(11.0)	(10.2)	(9.2)	(7.9)
- 은행	617.4	618.5	630.5	645.5	660.7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9.5)	(8.6)	(7.5)	(6.9)	(7.0)
- 비은행	652.4	667.6	682.5	695.8	709.4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3.6)	(13.3)	(12.8)	(11.4)	(8.7)

자료 : 한국은행

6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오다은 사무관

64)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비, %) : ('13) 5.7 ('14) 6.5 ('15) 10.9 ('16) 11.6 ('17) 8.1

2. 가계부채 관리 방안

2017년 10월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구조적인 부채 증가원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총량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차주별로는 상환능력 분석을 기반으로 연체 전·후 및 채무상환 불가능한 차주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차주의 부담을 적극 완화하고자 하였다.

(1)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질적 구조개선 노력과 더불어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했다. 2017년 3월 13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부터 시행, 2017년 6월 1일 상호금융권 전 조합 및 금고에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2010년말 0.5%에 그쳤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6년말 43.0%, 2017년말 44.5%로 확대됐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2010년말 6.4%에서 2016년말 45.1%, 2017년말 49.8%로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가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차주의 부채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소득은 입증이 가능하고 객관성이 높은 소득을 우선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고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소득평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상환능력 기반으로 대출이 공급되도록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획일적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高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을 적용했다.

(2)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전 정부는 서민정책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저신용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다. 미소금융 지원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대학생에 대한 햇살론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중금리 사잇돌대출의 취급규모도 1조원에서 2.15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재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서는 가계부채 차주의 특성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연체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재기 지원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채무탕감보다는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으나 실업·폐업 등으로 인해 상환이 곤란해지는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 하더라도 최대 3년간 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금리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18년 24%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기로 발표하였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게는 연체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6~9% 수준이었던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정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 상환능력을 토대로 원금 감면·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다.

제6절 산업·기업 구조조정

1. 선제적 기업구조조정[65)]

2017년 우리 기업 실적은 반도체, 석유·화학,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성, 수익성, 재무구조 안정성 등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기업 경영지표 추이

(단위 : %)

	외환위기			금융위기		최 근		
	'97	'98	'99	'08	'09	'15	'16	'17
매출액영업이익률	8.3	6.1	6.6	5.0	5.2	4.7	5.4	6.1
매출액증가율	11.0	0.7	8.0	18.6	2.6	0.3	2.6	9.2

* '97~'99년은 제조업 기준, 나머지는 전산업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대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결과 2017년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는 전년대비 7개가 감소했다.(2016년 32개 → 2016년 25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A, B, C, D의 네 등급을 부여하고 C(워크아웃), D(자체정상화 또는 법정관리)등급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6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최정빈 사무관

〈표 6-12〉 2017년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단위 : 개)

구 분	'16년			'17년			증감 (ⓑ-ⓐ)
	합계(ⓐ)	C등급	D등급	합계(ⓑ)	C등급	D등급	
건설	6	3	3	8	4	4	2
조선	6	1	5	3	3	-	△3
철강	1	1	-	1	-	1	-
해운	3	2	1	-	-	-	△3
유화	1	-	1	-	-	-	△1
기타	15	6	9	13	6	7	△2
합계	32	13	19	25	13	12	△7

자료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대상)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인 C, D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수가 2016년 176개에서 2017년 174개로 2개 감소했다.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세부평가대상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경영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구조조정 대상기업수는 감소하였다.

〈표 6-13〉 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단위 : 개, %)

구 분		'15년	'16년(A)	'17년(B)	증감(B-A)
세부평가 대상수		1,934	2,035	2,275	+240
	C등급	70	71	61	△10
	D등급	105	105	113	+8
	합계〈비중〉	175 〈9.0〉	176 〈8.6〉	174 〈7.6〉	△2(△1.0)

자료 : 금융감독원

2.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66]

정부는 2017년 12월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실예방과 사전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구조조정, 산업-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우선 부실징후 이전 단계에서는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적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주요 산업 유관부처가 글로벌 업황, 국내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차원의 선제적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활력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속 추진하여 부실을 사전예방하기로 하였다.

부실징후 감지 이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으로 처리하되,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외에도 자본시장, 회생법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매칭을 통한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최정빈 사무관

고용·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업이나 산업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하에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로 하였다. 재무적 관점의 회계실사와 함께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적 관점의 대안을 검토하고 산업-금융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였다.

한편, 국책은행 출자기업의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07

2018년
예산

제 7 장
2018년 예산

제1절 2018년 예산 편성

1. 2018년 예산의 모습[67)]

(1) 재정운용 여건

2018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의 동반 회복세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은 고용여건 호조 및 세제 개편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투자 등 내수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유로존 또한 고용시장 개선, 심리 호조 등을 소비·투자 등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세계 교역 회복, 도쿄 올림픽 대비 인프라 확충 등을 바탕으로 수출·투자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었다.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심리 등 소비 여건이 개선되며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었다. 여타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안정,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브라질·인도 등을 중심으로 지속

6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배경화 사무관

적인 회복세가 전망되었다.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이어지며 2018년중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내수는 설비투자 증가폭 축소 등으로 전년보다 기여도가 감소하나, 정책효과 등에 따른 소비 개선이 이를 보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증가폭은 축소되는 반면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물량 중심의 회복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2018년 재정총량

예산과 기금을 합한 2018년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7년 예산보다 7.9% 증가한 447.2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예산수입은 2017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94.8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0.7%, 추경예산 대비 6.8% 증가한 268.1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71.7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3.1조원으로 전망되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7년 대비 4.7% 증가한 152.4조원으로 예상되었다.

〈표 7-1〉 2018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		'18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총 수 입	414.3	423.1	447.2	7.9	5.7
ㅇ 예 산	268.7	277.5	294.8	9.7	6.2
(국 세)	(242.3)	(251.1)	(268.1)	(10.7)	(6.8)
- 일반회계	245.5	254.3	271.7	10.7	6.8
- 특별회계	23.2	23.2	23.1	△0.4	△0.4
ㅇ 기 금	145.6	145.6	152.4	4.7	4.7
(사회보장성기금)*	(81.8)	(81.8)	(89.8)	(9.8)	(9.8)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18년 총지출은 2017년 예산 대비 7.1% 증가한 428.8조 원이다.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예산지출은 296.2조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7.9%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10.8% 증가한 248.8조원, 특별회계는 △5.5% 감소한 47.5조원이다. 기금지출은 사회보험성기금 급여지출 등 증가에 따라 2017년 계획 대비 5.3% 증가한 132.6조원 수준이다.

〈표 7-2〉 2017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		'18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ㅇ 총 지 출	400.5	410.1	428.8	7.1	4.6
- 예 산	274.7	280.3	296.2	7.9	5.7
·일반회계	224.4	229.8	248.8	10.8	8.3
·특별회계	50.2	50.6	47.5	△5.5	△6.1
- 기 금	125.9	129.8	132.6	5.3	2.2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수준(18.3조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6%(△28.5조원) 적자로 예상되었다. 이는 새정부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사업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내외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표 7-3〉 재정수지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		'18년 (C)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C-B)
○ 통합재정수지(Ⅰ)	13.7	13.0	18.3	4.6	5.4
(GDP 대비, %, %p)	(0.8)	(0.8)	(1.0)	(0.2)	(0.2)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Ⅱ)	42.1	41.9	46.9	4.8	5.0
○ 관리재정수지(Ⅰ-Ⅱ)	△28.3	△28.9	△28.5	△0.2	0.4
(GDP 대비, %, %p)	(△1.7)	(△1.7)	(△1.6)	(0.1)	(0.1)

2018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708.2조원 중 향후 국민들이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8.1% 수준인 411.6조원이며, 나머지 41.9% 수준인 296.6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2018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5%로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에 따라 2021년까지 40%대 초반 수전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표 7-4〉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결산	'17년 전망	'18년 예산
○ 국가채무	626.9	682.4	708.2
(GDP대비, %)	(38.3)	(40.4)	(39.5)
① 적자성 채무	359.9	397.3	411.6
▪ 일반회계 적자국채	271.3	308.4	327.2
(순증)	(32.8)	(28.7)	(28.8)
▪ 공적자금 상환기금	48.4	48.4	46.7
▪ 지방정부순채무	35.0	35.7	33.1
② 금융성 채무	267.0	285.0	296.6
▪ 외평기금·채권	209.8	223.5	235.5
▪ 주택기금·채권	64.0	68.5	74.1
▪ 공자기금 융자계정	1.6	0.6	0.6

* '16년, '17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3) 2018년 예산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표 7-5〉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조원, %)

	'17년 본예산 (A)	'18년 예산 (B)	증 감	
			B-A	증가율 (%)
◇ 총 지 출	400.5	428.8	28.3	7.1
1. 보건·복지·고용(일자리)	129.5 (17.1)	144.4 (19.2)	15.2 (2.2)	11.7 (12.6)
2. 교육(교육재정교부금)	57.4 (42.9)	64.2 (49.5)	6.8 (6.6)	11.8 (15.4)
3. 문화·체육·관광	6.9	6.5	△0.4	△6.3
4. 환 경	6.9	6.9	△0.0	△0.3
5. R&D	19.5	19.7	0.2	1.1
6. 산업·중소·에너지	16.0	16.3	0.2	1.1
7. SOC	22.1	19.0	△3.1	△14.2
8. 농림·수산·식품	19.6	19.7	0.1	0.5
9. 국 방	40.3	43.2	2.8	7.0
10. 외교·통일	4.6	4.7	0.2	3.5
11. 공공질서·안전	18.1	19.1	0.9	5.1
12. 일반·지방행정 (지방교부세)	63.3 (40.7)	69.0 (46.0)	5.6 (5.2)	8.9 (12.9)

2. 2018년 중점 추진과제[68)]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2018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가 지속되었다. 2018년 예산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제고에 재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여건 개선과 같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다.

특히, 청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학 → 취업 → 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을 도입하였다. 재학생과 관련하여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12,500개로 대폭 확대하였고,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동 제도를 통해 최대 2만명의 임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총 6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신중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센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확충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경찰, 근로감독관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중앙직 공무원을 1.5만명 충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등 보육·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관리자를 직접고용하고

6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배경화 사무관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일자리의 양 외에도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 지원분을 기존 통상임금의 6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였다. 기업에는 임금체계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장의 근로여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실업 안전망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한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였다.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16.4%)을 반영하여 실업급여를 인상하였다. 시간선택제 전환,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여 구직자들의 직업교육과 훈련도 대폭 지원하였다.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서민일자리·복지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서민 생활비를 감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애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일하는 복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65세 이상 어

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주거·교육 급여도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일자리를 통한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 무공·참전 수당을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도 확대하였다.

서민들의 주거·의료·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주택을 매입후 저렴하게 재임대(Sales and leaseback)하여 가구의 대출상환 부담을 낮추고 주거를 안정시키는 한편,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의 독감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교통비·농축산물 등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도입을 지원하였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재도전을 돕기 위한 투자도 추진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1인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규모를 결정하고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제고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도 병행하였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도시재생 지역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늘리는 한편, 새만금 근처 물류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였다. 이외에도 영농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을 늘리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함께 추진하였다.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먼저 기존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의 우리 산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신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형 인재양성·자본 확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였다.

스마트공장을 2,1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하여 제조-ICT간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였다.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 ICBM, 지능형 센서·반도체 등의 핵심기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방식을 벗어나 네트워크·생태계 중심으로 판로, R&D 지원체계를 전환하는 등 혁신형 생산·유통·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통해 혁신이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창업과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상상구현터 70개, 창업연결터 5개 구축 등 민간·공공 메이커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으로 설치하여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 조성비용 200억을 새롭게 투자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투자 뿐만 아니라 혁신의 생태계 구성을 위한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혁하여 기술혁신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 보유 32만개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제조·서비스업 융합을 기반으로 한 新비즈니스의 안정성·시장성 검증과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연구를 지원하였다.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중기 특성화고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를 확대했으며, 학교밖 소프트웨어 교실도 2배 이상 확충하였다. 이밖에도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형 금융자본 지원을 확대하고 재기지원 및 사내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혁신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였다.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북핵 리스크 등 안보 관련 불안감을 완화하고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가뭄·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에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하였다.

2018년 국방비 증가율은 6.9%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확대된 국방비로 무기체계에 집중투자하여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10.5%에 달하였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의 3축체계 조기구축을 지원하고 군 장병의 봉급과 급식비를 대폭 인상하여 장병 복지수준을 향상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확대, 인도적 지원·교류 지속을 통한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하였다.

최근 급증하는 환경·먹거리 위해 요인에 대한 국민 불안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계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지원하였다. 가습기특별구제계정에 예비비 100억을 신규 출연하여 가습기 피해를 지원하고 흡입독성 시험시설을 조기 구축하여 재발방지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계란 GP(Grading and Packing, 선별·포장) 센터 4개소 신설을 통해 가축질병 예방도 뒷받침하였다.

자연재해·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침수·붕괴 위험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 남부·충남 서북부 수계연결 등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등을 지원하여 졸음운전 및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5) 인적자원 개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저출산에 따른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였다. 신혼부부에게는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 이상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하여 결혼한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임신·출산의 어려움도 덜어주고자 지원을 확대하였다. 산부인과 시설이 미비한 분만취약지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신규 설치·확충하고 고위험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17개소로 확대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를 월 1만원 인상하고 지원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를 추가 공급하는 등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투자를 확대하였다.

유아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했으며,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예비대학생의 해외 유학 및 연수 기회도 확충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비대상자를 위한 재직자 능력개발 등 평생·직업 교육도 강화하였다.

한편, 기초연구, 국립대학 등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양질의 인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한 혁신 창출을 지원하였다. 국립대학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69)]

(1) 보건·복지 분야 재원배분

2018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44.7조원 수준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3.7.3%를 달성하였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주거·의료비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지원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2) 교육 분야 재원배분

2018년 교육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4.2조원이며, 2017년도 57.4조원보다 11.8% 증가한 수준이다.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2.9조원에서 49.6조원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는 등 대폭 확대되었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급여를 대폭 상향하고 소외계층 영재를 맞춤 지원하며,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저소득층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을 강화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고 안정적 유아 교육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소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원배분

2018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5조원 수준이다.

---

6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배경화 사무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여건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수작가 창작, 국립극장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복지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문화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융목합 문화 콘텐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4) 환경 분야 재원배분

2018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9조원이다.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환경위해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화물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여 수송 오염원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살생물제 관리 등 환경보건 위해요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물 이용 재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후 환경기초 인프라 개선도 병행한다.

(5) R&D 분야 재원배분

2018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17년 대비 1.1% 증가한 19.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R&D 분야의 예산 편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핵심·융합기술 개발과 관련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간 협업 R&D를 지원하여 신산업 일자리를 적극 창출한다. 또한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를 확대하여 청년 과학자 지원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배출저감, 실종아동 신원확인 등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투자를 확대한다.

(6)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재원배분

2018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16.3조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크리에이티브 랩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기존의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품목 다변화, 진출시장 확대 등 수출구조 혁신 및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7) SOC 분야 재원배분

2018년 SOC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9.0조원으로 2017년 22.1조원 대비 14.2% 감소하였으며, SOC 분야의 지속적 지출구조조정과 투자효율화를 위해 신규 건설사업을 최소화하고 연차소요를 재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 및 재해예방,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하였다.

(8)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원배분

2018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9.7조원으로

2017년 19.6조원 대비 0.5% 증가되었다. 그간의 쌀 중심 양적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질적 투자로 투자의 중점을 전환하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을 확대한다. 농어업·농어촌 ICT 융복합 확산, 현장지원 강화 등 스마트팜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및 벤처농업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쌀수급안정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살기좋은 농촌공간 조성에 투자를 확대하고 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항구적 가뭄대책을 통해 재해·재난 예방에도 힘쓴다.

(9) 국방 분야 재원배분

2018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43.2조원으로 2017년 40.3조원 대비 7.0% 증가하여,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위해 재정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확대된 국방비로 방위력 개선에 집중투자한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핵심전력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병 봉급 및 급식비 인상 등 장병 생활여건 및 병영 문화 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비군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대태러 역량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10) 외교·통일 분야 재원배분

2018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7조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소통과 재외국민 안전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청년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등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준비도 병행한다.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원배분

2018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19.1조원으로 2017년 18.1조원보다 5.1% 증가하였다. 2018년 예산은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확대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취업연계 직업훈련·교도작업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구제와 보호를 강화하여 ‘따뜻한 법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치안 및 재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범죄 및 국민안전에 신속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쓴다.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원배분

2018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9.0조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된 수준이다. 2018년에는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5.2조원 증액하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차질없는 준비를 지원하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1. 재정운용 기본방향[70]

(1) 새 정부 정책과제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역할 추진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전에 비해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의 구조적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도성장을 위한 물적 자본중심의 투자전략과 모방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구조의 전반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했다.

정부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는 등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재정정책을 재설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했다. 둘째,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 분석,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분배개선 및 삶의 질 향

7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강승민 사무관

상을 위한 노력도 강화했다. 셋째,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R&D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하고, 선제적 예방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안전도 지속 강화했다.

(2) Zero-base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Zero-base에서 강도 높은 양적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개혁도 병행했다.

우선,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 등에 대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2018년 예산안에 당초 계획(9.4조원) 대비 2.1조원 늘어난 11.5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을 통한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우선, 2018년 예산안에 대학창업 ODA 융합예산 편성 등을 추진했다.

(3) 국민참여 확대로 예산과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국민이 중앙정부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관심도 및 참여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정보 공개 내용 등을 대폭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했다. 이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국민의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낭비도 방지했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71)]

(1) 재정수입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5%이다. 이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0%)보다 0.5%p 높은 수준으로 주로 국세수입(연평균 6.8% 증가) 및 기금수입(연평균 4.2% 증가) 증가에 기인한다.

〈표 7-6〉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 세외수입	26.4	26.4	26.7	28.1	27.4	26.7	0.3
○ 기금수입	145.6	145.6	152.2	155.7	163.6	171.8	4.2

* 국회 확정예산 기준

7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김문수 사무관

(2) 재정지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8%이다. 이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2.3%p 높은 수준으로, 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연평균 9.8% 증가), 교육 분야(연평균 7.0% 증가), 일반·지방행정 분야(연평균 6.5% 증가)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

〈표 7-7〉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 조원, %)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8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274.7	280.3	295.0	313.3	328.1	343.4	5.7
(비중)	(68.6)	(68.3)	(68.8)	(69.1)	(68.8)	(68.6)	
○ 기금지출	125.9	129.8	133.9	140.0	148.5	157.5	5.8
(비중)	(31.4)	(31.7)	(31.2)	(30.9)	(31.2)	(31.4)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197.0	201.1	217.9	233.3	246.5	260.1	7.2
(비중)	(49.2)	(49.0)	(50.8)	(51.5)	(51.7)	(51.9)	
○ 재량지출	203.5	209.0	211.0	220.0	230.2	240.9	4.3
(비중)	(50.8)	(51.0)	(49.2)	(48.5)	(48.3)	(48.1)	

*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이는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5.8%)을 1.4%p 상회한다.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에 50%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2021년 51.9%까지 상승한다.

한편,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8%)보다 1.5%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로 인해 동 기간 중 GDP 대비 1% 내외에서 흑자를 유지한다. 2018년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보다 개선된 GDP 대비 △1.6%이다. 2018년 이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GDP 대비 △2.1%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동 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9.7%에서, 2018년에는 소폭 하락한 39.6% 수준이다. 2019년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21년에는 40.4% 수준에 이르러 40% 초반 수준을 유지한다.

〈표 7-8〉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전망

(단위 :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관리재정수지	△28.3	△28.6	△33.0	△38.4	△44.3
(GDP대비, %)	(△1.7)	(△1.6)	(△1.8)	(△2.0)	(△2.1)
▣ 통합재정수지	13.7	18.1	18.0	15.3	12.5
(GDP대비, %)	(0.8)	(1.0)	(1.0)	(0.8)	(0.6)
▣ 국가채무*	669.9	708.9	749.1	793.0	835.2
(GDP대비, %)	(39.7)	(39.6)	(39.9)	(40.3)	(40.4)

* '17년은 추경안 기준

3. 분야별 재원배분방향[72)]

(1)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추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강화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고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2)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그간의 투자 스톡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의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투자했다.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했으며, SOC 분야에서는 시설투자는 축소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 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했다.

(3) 국가안보·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

안보 안전 분야는 국방 핵심전력 확대와 병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및 해경 소방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

7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강승민 사무관

08

2017년 세법개정안

제 8 장

2017년 세법개정안

제1절 세법개정 기본방향

◇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
- ㅇ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 ㅇ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축소
- ㅇ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통해「지속적인 국민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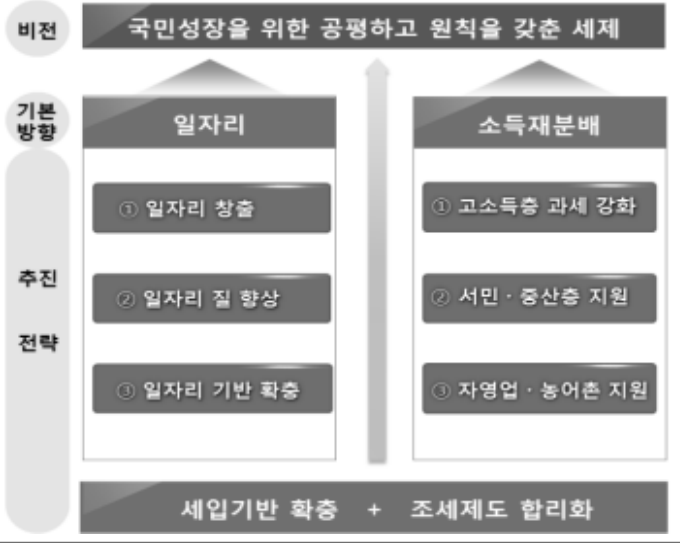

제2절 일자리 지원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7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을 간접지원하던 방식에서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에 대해 직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을 확대했으며,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했다.

〈표 8-1〉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중소기업(2년간)		중견기업 (2년간)	대기업 (1년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1,100	700	300

또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우수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으로 투자대상기업을 확대했다.

7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

〈표 8-2〉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투자금액	공제율		투자금액	공제율
1천5백만원 이하분	100%	⇨	3천만원 이하분	100%
1천5백만원~5천만원 이하분	50%		3천만원~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5천만원 초과분	30%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74)]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적용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고용인원 유지되는 경우 2년으로 확대했다.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75)]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중견기업은 15%)했다. 또한,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중견기업은 15%)했다.

(4)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76)]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했다.

---

7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
7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
7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권오현 사무관

(5)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77]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시 고용기준에 따른 추가감면 한도액을 인상했다. 7년형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의 경우 추가감면 한도액을 외국인투자금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5년형 감면(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의 경우 추가감면 한도액을 외국인투자금액의 30%에서 40%로 인상했다.

(6)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78]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분할 후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 수가 합병·분할등기일 전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적격 합병·분할에 따라 이연된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79]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했으며, 중소기업

7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김영현 사무관
78)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이현우 사무관
7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

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80)]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액을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했다.

(3)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8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임금감소분·임금보전분 소득공제의 소득공제율을 임금보전분의 경우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82)]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 종료하고,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는 종전 기업소득환류세제 대비 가계소득 증대 취지에 맞지 않는 배당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낮은 토지를 환류대상에서 제외했고,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증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중치 및 적용대상을 대폭 조정했다.

---

8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
8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
8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백경원 사무관

3. 창업 · 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1)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83)]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을 적용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의 감면율을 초기 3년간 50%에서 75%로 확대했다. 또한,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2)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84)]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했으며,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최대 40%로 인상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 1억원을 설정했다.

---

8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서지현 사무관

8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서지현 사무관

(3)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85)]

사업에 실패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영세 자영업자(업종별 5~15억원 이하)가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업 신고하고 ③ 2018년도 중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④ 2017년 6월 30일 기준 징수가능성이 없는 국세체납액을 ⑤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체납세금의 납부 의무를 소멸되도록 했다. 한편, 신성장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 출자자(과점주주 등)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억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8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조진희 사무관

제3절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86]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려는 취지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0%에서 5억원 초과시 42%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40%세율 적용 구간을 신설했다.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87]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 및 금융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위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2021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했다.

〈표 8-3〉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종목별 지분율, 보유액)

	'16.4월 이후	'18.4월 이후	'20.4월 이후	'21.4월 이후
코스피	1% 또는 25억원	1% 또는 15억원	1% 또는 10억원	1% 또는 3억원
코스닥	2% 또는 20억원	2% 또는 15억원	2% 또는 10억원	2% 또는 3억원

8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김혜영 사무관

8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방우리 사무관

또한,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88)]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과세대상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간 교차·삼각 일감몰아주기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세대상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로만 판단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거래규모가 큼에도 거래비율을 정상거래비율 이하로 조정하는 등 과세회피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89)]

세목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7%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5)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90)]

장수기업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배현중 사무관
8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조문균 서기관
9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조문균 서기관

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했다. 종전에는 15년 이상 영위한 가업에 대해 300억원 공제, 20년 이상 영위한 가업에 대해 500억원을 공제하였으나, 20년 이상 영위한가업에 대해 300억원 공제, 30년 이상 영위한 가업에 대해 500억원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했다.

2. 서민 ·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91)]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가구유형별 8만원~20만원)했으며, 배우자·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했다.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도 근로·자녀

9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전준희 사무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92)]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해 성실사업자 등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확대했다.

(3)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93)]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하고,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종전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했으며,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했다.

(4)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94)]

아동에 대한 보편적 재정지원제도인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했다. 다만,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최대한 중복하

---

9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원준 사무관

9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혜영 사무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안재영 사무관

9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혜영 사무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안재영 사무관

기 위해 3년간 중복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 결과 2018년도 1년간만 중복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거주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으며, 2018년 2월 1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95)]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 및 농어민에 대해 비과세 한도금액을 이자·배당소득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저축자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6)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96)]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

---

9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이진수 사무관

9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원준 사무관

3. 자영업 ·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1)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9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음식점 등이 구입하는 경우 농수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수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음식점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자의 공제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108에서 9/109로 인상했다.

(2)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98)]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시 매입액의 일정율(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율을 9/109에서 10/110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99)]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요건 중 수입금액, 계속사업, 장부기장 요건을 완화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수입금액의 90%를 초과

9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98)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9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김혜영 사무관

해야 한다는 요건을 50%를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요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100)]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임의 중도 해지로 인한 공제부금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기타소득 과세시 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했다.

(5)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101)]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0.1%~0.2%를 세액공제하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급을 지급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6)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02)]

유통경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판매를 허용했으며, 소규모주류제조업에

---

10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김혜영 사무관
10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서지현 사무관
102)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종락 사무관

대한 진입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조건 중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출고량 500㎘ 이하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률을 확대했다.

(7)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03)]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기한 및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해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를 20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

103)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배현중 사무관

제4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1)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세율환원)[104]

저출산 및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입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환원(3,000억원 초과 22%→25%)했다.

(2)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105]

대기업 일반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방식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30%에서 25%로 낮추고, 당기분 방식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1~3%에서 0~2%으로 축소했다.

〈표 8-4〉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현 행		개 정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현행과 동일)	
중견기업	8 ~ 15%	40%		
대기업	1 ~ 3%*	30%	0~2%*	25%

* (현행) R&D지출액의 1% + 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 1/2)
(개정) R&D지출액의 0% + 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x 1/2)

10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백경원 사무관

10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서지현 사무관

(3)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106)]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축소했다.

〈표 8-5〉 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구 분	현 행 (대·중견·중소)	개 정 (대·중견·중소)
생산성향상시설	3·5·7%	1·3·7%
안전설비	3·5·7%	1·3·7%
환경보전시설	3·5·10%	1·3·10%

(4)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107)]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중소기업 제외)를 해당 연도 소득의 80%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은 7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은 60%로 축소했다.

(5)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108)]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반면,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별도의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간편

10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권오현 사무관
10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백경원 사무관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김혜영 사무관

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6)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109]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적용기한이 도래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했다.

(7)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110]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 (개정전) 5년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등	┐	(개정후) 5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 8년 자경농지 등	┘	

(8)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111]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원(법인 1,000만원)에서 200만원(법인 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

10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이진수 사무관
1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송재열 사무관
1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권오현 사무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송재열 사무관

또한, 토지, 건물을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가 지원 실효성이 낮아 적용기한이 종료됐다.

(9)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제 축소[112)]

민간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하여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및 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2.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113)]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농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1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

1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1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김혜영 사무관
1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김혜영 사무관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을 추가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115)]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에서 직전년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116)]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2%→3%로 인상하고, 고의로 공급가액의 일부를 부풀리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1%→2%로 인상했다.

(5)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117)]

부가가치세 체납방지를 위하여 소비자가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1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1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1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박준영 사무관

(6) 역외세원 관리 강화[118)]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신고기준금액을 현재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였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했다.

(7)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119)]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 권고사항을 국내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혼성금융상품(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이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BEPS Action2),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BEPS Action4).

(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120)]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 업종을 선박 건조업과 금융업까지로 확대하고, 원천징수세율도 17%에서 19%로 인상했다.

---

1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김영현 사무관
1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김영현 사무관
1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김영현 사무관

(9)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121)]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건당 미화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세포탈 등 범칙행위자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했다.

3. 조세제도 합리화

(1)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122)]

기부활성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2)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123)]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자로 판정

1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유병하 사무관
1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배현중 사무관
123)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김영현 사무관

하는 기준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로 완화했다.

(3)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124)]

금융자산소득 과세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시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했다.

(4)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125)]

사업소득과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80%에서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분은 70%로, 2019년 이후 지급하는 분은 60%로 조정했다.

(5)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126)]

최근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과 적용기간을 연 3%씩 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하던 것에서 연 2%씩 15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2019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과 적용기한은 종전과 동일

---

1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방우리 사무관

1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김혜영 사무관

1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안재영 사무관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127)]

농어업인·서민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당기순이익 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7)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128)]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129)]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으며,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 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요구 금지를 명확히 했으며 임의 제출된 자료 중 납세자 요청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종료시

1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이현우 사무관
1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성준 사무관
1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현수 사무관

조사내용·과세이유·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130)]

세무서·지방국세청외에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기회를 부여하고,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설치·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외 위원을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3)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가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131)]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의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만 한정되었던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를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4)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132)]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급신청인이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

---

1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현수 사무관
1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김준하 사무관
13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한종건 사무관

방법,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09

재정혁신 가속화

제 9 장
재정혁신 가속화

제1절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

1. 양적 지출구조조정[133)]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이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 세출개혁(95.4조원)과 세입개혁(82.6조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출개혁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재원은 62.7조원이다.

최근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직접 지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보훈보상 확대 요구 등 추가 재정소요도 발생하고 있다.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추가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3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류재현 사무관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의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양적구조조정은 그동안의 재정투자를 통해 스톡이 상당부분 축적된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 편성시 당초 계획인 9.4조원보다 1.0조원 많은 10.4조원을 지출구조조정했다.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또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했다, 선심성·소비성·관행적 지출사업에 대해서도 연례적 행사비용 절감, R&D 일몰제 등을 추진했다. 유사·중복사업 정비,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업 등도 구조조정했다.

〈 '18년 예산 편성시 양적 지출구조조정 사례 〉

- [정책 전환] 그간 스톡이 축적된 SOC(도로, 철도 등), 농업생산시설(수리시설 개보수 등),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 정비) 등 구조조정
- [성과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점검 결과 반영
- [집행부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구조조정
- [선심성 · 소비성 · 관행적 지출] 연례적 행사비용 절감, R&D 일몰제 실시
- [외부지적 등] 유사중복 정비, 국회 · 감사원 지적사업 등

2. 질적 지출구조조정[134)]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양적 지출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의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질적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였다.

질적 지출구조조정은 재정지원의 중점 전환 및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정책·재정사업의 효과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재정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 추진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구성하여 재정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각 부처 및 재정당국이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과제별 추진방안과 쟁점을 지속 논의하였고, 아울러 현장방문과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방안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 4대 분야의 33개 과제에 대한「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①혁신성장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대학창업 활성화 등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②복지·고용안전망 분야의 경우 복지 사례관리사의 읍면동 단계적 재배치 등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③저출산 극복 분야는

13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 양성철 사무관

관련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모성보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④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분야에서는 신규 출연사업의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화 등 재정의 누수방지 및 성과 중심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제별 개선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또한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 이행 관리를 수행하였다.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의 주요성과는 아래와 같다.

〈표 9-1〉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주요 성과

4대 분야	주요 추진성과
Ⅰ. 혁신성장	·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 도입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 확정
Ⅱ. 복지·고용 안전망	· 취약계층 사례관리사 접근성 강화(시군→읍면동 배치) · 산재보험 인정기준 완화 및 보험료 할증폭 축소 법령 개정
Ⅲ. 저출산 극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 방안 저출산 대책 반영 · 경력단절 예방지침 마련 및 15개 센터 예방사업 시행
Ⅳ.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출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 제도화를 통한 예산낭비 차단 ·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보통교부금 확대 개편

아울러, 정부는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개혁특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135)]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경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09년 31.2%에서 2017년 38.2%로 7%p 상승하였으며, 반면 OECD 평균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09년 90.9%에서 2017년 111.5%로 20.6%p 상승하였다. IMF 등 국제기구 및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림 9-1] 국가채무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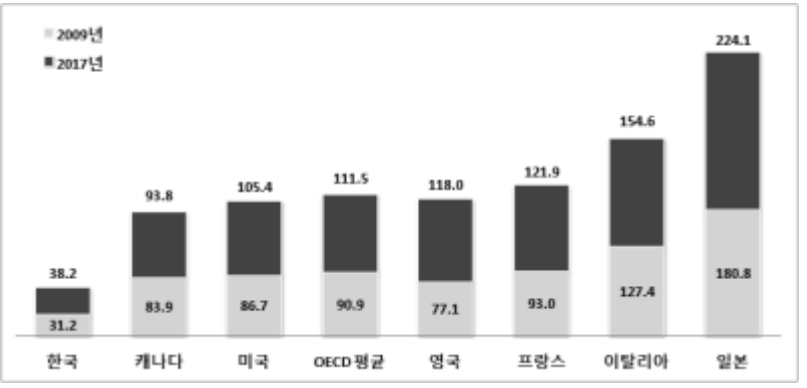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18년 5월), 한국은 정부 작성 국가채무(D1) 기준

다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외부 충격에 따른 변동성이 크므로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통일 등 중장기 미래 재정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였다.

1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김문수 사무관

첫째,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재정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확충, 저출산 고령화 및 혁신성장 지원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다.

둘째, 강도 높은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투자의 우선순위, 사업의 성과, 집행수준 및 지출성격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셋째,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였다. 재정지원의 중점 전환 및 지원방식 개선 등,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33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넷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재정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의 내실화를 위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하였다.

제3절 재정사업 관리 강화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 및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 추진[136)]

기획재정부는 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사업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정당국은 핵심사업의 성과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운영되었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재정사업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메타(상위)평가 기관이 확인·점검하여 최종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나 성과관리 결과가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환류되는 등 성과관리와 재정혁신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실효적 제도정착은 미흡하다는 한계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부터 메타평가를 폐지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 사업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게 된다. 평가결과의 환류에 있어서도 담당부처가 성과 미흡사업에 대해 사업 성격에 따른 성과 제고방안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에 따른 단순 지출구조조정 방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 핵심사업평가팀 이지우 사무관

식을 탈피한다. 해당 내용은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반영되었다.

한편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통해 핵심사업 관리에 평가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종전에는 1,415개(2017년 기준)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모두 검토(메타평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80개 사업만 선별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사업부처와 합동으로 정책관계자에 대한 현장점검, 집행현황 검토 등 과정관리를 통해 사업성과를 3년간 집중관리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 성과제고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향과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 · 성장동력확충 · 소득기반확충 · 안심국가 · 인적자원개발의 5대 분야에서 80개 핵심사업(23.4조원 규모)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20개 사업에 대해 2017년 12월 시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범 현장점검 결과 사업 효율화를 위한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 필요성,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권고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되었다.

2. 재정집행관리[137)]

(1) 재정조기집행

2017년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경기 하방 위험 확대로 상반기 2.2~2.5%, 하반기 2.5~3.0% 성장하는 상저하고의 경기가 전망(한은, KDI)되어 위축된 민간투자와 소비를 보완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상반기, 58.0%)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계약절차 단축, 보조사업 절차 간소화, 융자·출연 등 신속집행, 국민편익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반영한「재정조기집행 4대 지침」을 시행했다.

더불어, SOC와 일자리사업 등 민생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별도로 중점관리하고, 시범운영 중인「집행현장조사제」를 본격 시행하여 주요사업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적극적 재정집행관리를 통해 상반기 166.3조원(59.0%) 집행하여 목표치 163.5조원(58.0%)을 2.8조원(1.0%) 초과달성했다. 이후에도 정부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내외 경기여건, 상·하반기 경기전망, 세수전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1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한시겸 사무관

(2) 불용최소화

정부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이후에도 재정투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 불용최소화를 목표로 재정집행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불용 최소화TF」를 구성하여 재정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주요부진 기관과 사업을 집중관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불용률인 2.0%(7.1조원)를 달성했다.

향후에도 실시간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해 불용액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138)]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공사·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보건 등 기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현재까지 총 822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

138) 집필자 :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조문경 사무관

사를 실시하고 이 중 529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초기에는 경제성만으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였고, 2003년부터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체계(AHP)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합평가체계의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해왔다. 금년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탄력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정책성 평가 가중치의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 하락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미래의 비용 ·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1.0%p 하향 조정했다.

또한, 예타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규모를 당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에 맞게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SOC 분야)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9-2〉 AHP 평가체계 조정 연혁(건설공사 사업)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03~'05년	50%	50%	(정책성 분석에 포함)
'06년	40~50%	25~35%	15~25%
'09년	40~50%	25~35%	15~30%
'12년	40~50%	25~35%	20~30%
'16년	40~50%	25~35%	25~30%
'17년	35~50%	25~40%	25~35%

제4절 재정정보공개 확대[139]

1. 재정정보공개 현황 및 확대 필요성

기획재정부는 재정업무시스템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15년부터 재정정보공개포털인「열린재정[140] 」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산(재정혁신타운[141]), 국고보조금(e나라도움[142])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특정분야는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별로도 각자 홈페이지에서 재정정보를 공개 중이다.

현재 중앙정부 재정정보공개의 특징은 재정정보공개포털(열린재정) 외에도 국고보조금(e나라도움), 예산(재정혁신타운) 등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요 분야는 별도 특화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 재정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현 재정정보공개 수준은 공개정보의 양과 질 측면 모두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13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허필중 사무관
140) www.openfiscaldata.go.kr
141) www.budget.go.kr
142) www.gosims.go.kr

2. 재정정보공개 확대 기본 방향

기획재정부는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양과 질의 개선하고자 '17年 「재정정보공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의 관점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정보공개 혁신방안」의 3대 핵심은 ①재정통계 및 인포그래픽 등 재정정보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②수혜자 맞춤형 정보 확대하며 ③접근성 제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미국[143],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정보공개 현황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반영했다.

143) www.usaspending.gov

3. 재정정보공개 확대 세부 계획

(1) 재정정보 충실성 제고

재정정보의 충실성 제고를 위해 기존 열린재정에서 공개되는 재정통계의 수를 기존 120종에서 160종으로 확대하고, 수치 이외에도 그래프·인포그래픽 등 시각정보와 재정 관련 어려운 용어를 웹툰을 통해 설명,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그림 9-2] 재정정보 충실성 제고

(출처: 열린재정 홈페이지)

이와 함께, 그동안 부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사업별 집행실적을 열린재정에서 통합해서 제공하여 한 곳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보다 신속한 집행실적 공개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역시 마련했다.

(2) 맞춤형 정보 확대

천편일률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일반국민, 연구자등 정책 수혜자 특성에 맞는 정보도 확충했다. 이를 위해 열린재정 홈페이지 첫 화면을 일반국민, 연구자, 맞춤형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우선 찾는 메뉴를 전면에 제공한다. 또한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의 관심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재정사업을 알기 쉽게 분석·제공하고, 국가보조금이나 정부발주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혜정보 제공 및 재정 전문가를 위한 주문형 데이터 제공 서비스[144]도 신설했다.

[그림 9-3] 맞춤형 정보 확대

(출처: 열린재정 홈페이지)

144) 연구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한 재정정보를 직접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3) 재정정보 접근성 개선

외부 주요검색포털에서 열린재정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열린재정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외부주요포털의 통계DB에도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정보에 접근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림 9-4] 재정정보 접근성 개선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18년 이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 수준을 넘어 지방재정·교육재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국민참여예산제도 시범 도입

1. 도입배경[145)]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중앙정부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참여예산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관심도 및 참여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예산의 실제 수혜자인 국민들의 선호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미국 뉴욕, 스페인 마드리드 등 전세계의 수많은 도시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은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2011년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의무화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이자 주요한 재정혁신과제로 본격 추진하였다.

2. 2018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시범 도입

2018년 국민참여예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2017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에는 국민이 사업의 제안과 우선순위 결정

14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김명환 사무관

과정에 참여했다.

정부는 나라살림 아이디어, 광화문 1번가 사업 제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제안들을 선별하여 10개의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10개의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기획재정부와 사업소관부처는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부처의 예산요구 절차를 거쳐 1위부터 6위까지 득표를 얻은 6개 사업, 422억원을 '18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로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삭감없이 전액 '18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표 9-3〉 설문조사 결과 및 '18년 예산안 반영사업

(단위 : 백만원)

순위	과제명	득표수	예산규모	
			'17년	'18안 (추가증액)
계		5,000	1,400	42,218
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655	1,400	2,000 (추가 +600)
2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서비스 (보육관리사업)	643	-	700 (+700)
3	365일 일자리 상담서비스 운영 (고용전산망 관리)	635	-	1,445 (+1,445)
4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 (농촌고용인력지원)	634	-	2400 (+2,400)
5	농어촌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분리배출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540	-	48 (+48)
6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 (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지원)	494	-	35,625 (-)
7	대학 근로장학생 활용 노인멘토링 지원	433	-	-
8	학부모가 참여하는 보육교사 평가 및 지원	384	-	-
9	단기복무 군장병 1:1 취업상담 지원	330	-	-
10	전통시장 도시락 배송지원	251	-	-

3. 국민참여예산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설계

2018년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약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획재정부 직제개편을 통해 재정혁신국 산하에 참여예산과를 신설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146]의 국민참여 규정에 기초하여 동법 시행령에 국민참여를 위한 기구(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147](‘17.12.29 공포)하여 법적근거를 보완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광주 북구 등의 세부절차 및 실제 운영 시 나타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참여 및 소통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동국대학교 오영민 교수 등 연구진은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실제 예산 사업을 편성하게 될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18년 1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

146)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제4호 :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0

국고 관리 패러다임 전환

제 10 장
국고 관리 패러다임 전환

제1절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148)]

1.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 수립

2016년 말 기준 국유재산의 총 가액은 1,044조원에 이르며, 국토면적 중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수준(24.9%)으로 국가경제운용에 있어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국유재산 정책은 국가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왔으며 주거·복지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은 다소 미진하였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이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 정책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을」 확정했다.

1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신동선 사무관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 추이

[광복 ~ '76년]		['76 ~'10년]		['11 ~ '16년]		[새정부 정책방향]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재산 매각	⇨	유지·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	⇨	수입 증대를 위한 개발·활용 확대	⇨	국민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성장 지원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포용·혁신 성장 지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유재산 확보→ 확보한 국유재산 개발→ 공익 목적 활용 및 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 개요

정책목표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포용·혁신 성장 지원
정책방향	공익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新패러다임 구축
정책과제	1. 국유재산 확보 ① 국유재산 총조사 실시 ② 용도폐지 절차 개선 및 강화 ③ 비축부동산 매입 확대 ⇨ 2. 개발 확대 ① 공익 활용 목적의 공간 마련 ② 도심 노후청사 개발 본격화 ③ 토지개발 제도 도입 ⇨ 3. 공익 활용 ① 포용·혁신 성장 -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강화 - 신산업 성장 촉진 ② 국민 기본수요 충족 - 청년·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 일·가정 양립 지원 ⇨ 4. 재정수입 증대 ① 대부 활성화 ② 국유재산 매각원칙 확립

(1)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확보

먼저, 개발·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에 산재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유휴 행정재산이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용도폐지 절차를 개선·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비축부동산 매입예산을 확대하였고('17년 400억원 → '18년 450억원), 기존에는 행정목적만을 고려하던 매입사유도 공익목적 활용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매입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2) 국유재산 개발 확대

다음으로, 확보한 국유지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청사 중심개발에서 탈피하는 개발 원칙을 확립하였다. 첫째, 기존에 청사와 수익시설로 한정된 건축개발 모델을 공익시설까지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본격화하여,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소재하는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청사의 현 이용 상황, 도시계획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셋째,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 개발의 범위를 기존의 건축·리모델링 등으로 한정된 건축개발에서 대규모 토지를 조성하는 토지개발까지 확대하는 한편, 조성 된 토지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 공간 등 공익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기로 했다.

(3) 혁신성장 지원 및 공익 활용 확대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은 포용·혁신성장 및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매각 시 대금 장기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PC, 책상 등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시키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로 했다.

둘째,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부분을 벤처·창업기업의 입주공간으로 제공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지 임대신청 시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도심지역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국유 건물의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하고 장기 사용 및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통해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을 지원한다.

(4) 국유재산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국유재산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유재산 대부 활성화를 통한 임대수입 증대를 위해 임대요율과 임대기간을 합리화하고, 현재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의 공중·지하·옥상 등 입체공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기준을 신설하여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를 통한 재산 보전을 위하여 유형·형태별로 보존가치, 공익활용 가능성 등 자산 분석을 통해 공익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매각하는 방향으로 매각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국유지 매각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2. 국유지 개발사업의 추진 및 확대[149)]

2017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14건으로 총사업비는 1조1,694억원이다. 이들 사업들에 대해 2017년에 투자된 금액은 1,855억원으로 신축을 위한 기존 시설물 철거, 건축설계, 건설공사 등을 중심으로 집행되었다.

구로 복합관사 등의 국유지 개발사업이 2017년에 신규 승인되어 설계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고, 종합의료복합단지 등 2017년 설계가 완료된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향후 3년간 약 75백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2017년 9월에는 전국 주요 도심지역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복합하여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지 8곳을 선정하였고, 금년에는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도모했다.

1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최경운 사무관

〈 국유지 복합개발 선도사업지(8곳) 〉

① 영등포 복합청사, ② 남양주 복합청사, ③ 광주 동구 복합청사
④ 舊 천안지원·지청, ⑤ 舊 충남지방경찰청, ⑥ 舊 원주지방국토청
⑦ 舊 부산남부경찰서, ⑧ 부산 연산5동 우체국

한편, 청사를 임대주택과 복합하는 위탁개발 방식과 더불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통합 청·관사를 건립하는 기금개발 사업 또한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금년 준공한 원주통합청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7년 8월에는 수원통합청사 및 대구통합청사가 신규 승인되어 착수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통합 청·관사 사업은 같은 권역 내에 청·관사 수요가 있는 여러 기관들을 묶어 단일 건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대 용적률로 개발함으로써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강당·회의실 등 시설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국유지 개발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을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기금개발방식을 활용한 통합 청·관사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조달제도 혁신[150)]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민간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입·낙찰제도 및 계약조건 등을 규율하는 제도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계약의 규모는 2017년도 기준으로 약 123.4조원에 달하며 입찰참여기업도 37만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공공계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조달정책의 목표를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가치 실현, 공정조달 강화에 두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1.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가. 소규모 계약의 실적제한 폐지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공공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원 미만)[151)]에 대한

1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강중호 사무관

151)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13만 SDR)

실적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2.1억원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나. R&D로 개발한 신제품의 수의계약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R&D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동 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R&D에 한해 기술개발 전 사전구매를 약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허용하던 것을 모든 국가 R&D 제품 수의계약 허용된다.

다. 기타 규제개혁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2. 사회적가치 실현

가.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지원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을 일정비율(예시: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허용(5천만원 미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 근로계약 관련 사회적가치 실현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근로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했다.

3. 공정조달 강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수준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대비 연 37~91% 수준인 지체상금률을 연 20~30% 수준으로 인하(지체상금률을 기존의 2분의1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하였다. 향후 지체상금 상한제(예: 계약금액의 30%) 도입하고, 조달 참여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제3절 국고채 시장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152)]

1. 국고채 시장의 발전

(1) 국고채 시장 규모 확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고채 발행량은 급증했다. 한국 역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도 국고채 발행규모를 전년대비 약 63% 증가한 8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100.8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잔액은 2017년말 기준으로 546.7조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채권 발행잔액(1,659조원)의 33.0%를 차지했다.

〈표 10-1〉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

(단위 : 조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발행량	77.7	81.3	79.7	88.4	97.5	109.3	101.1	100.8
(전년비)	(△9%)	(+5%)	(△2%)	(+10.9%)	(+10.3%)	(+12.1%)	(△7.5%)	(△0.3%)
잔액	310.1	340.1	362.9	400.7	438.3	485.1	516.9	546.7
(전년비)	(+10%)	(+10%)	(+7%)	(+10.4%)	(+9.4%)	(+10.7%)	(+6.6%)	(+5.8%)

1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채과 유동석 사무관

(2) 외국인 채권투자 활성화

2006년 4.2조원(국고채 상장 잔액 대비 2.0%)에 불과하던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금액은 채권시장 인프라 발전에 따른 상품성 제고 등으로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7년말 기준 77.8조원(국고채 상장 잔액 대비 14.2%)에 이르렀다. 투자대상 국가도 2007년 27개국에서 2017년 53개국으로 다변화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의 질적인 측면도 향상되었다.

〈표 10-2〉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

(단위 : 조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 체	74.2	83.0	91.0	94.7	100.4	101.4	89.3	98.5
(비 중)	(6.6)	(6.9)	(7.0)	(6.8)	(6.9)	(6.5)	(5.6)	(5.9)
국고채	47.7	60.9	56.9	58.3	65.9	67.9	72.5	77.8
(비 중)	(15.4)	(17.9)	(15.7)	(14.5)	(15.0)	(13.8)	(14.0)	(14.2)
통안채	25.4	20.0	31.6	34.4	33.2	32.7	15.5	19.5
(비 중)	(15.5)	(11.9)	(19.4)	(20.8)	(18.7)	(17.9)	(9.2)	(11.4)

2.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2017년 상반기에는 연준의 두 차례 금리인상(3월, 6월), 트럼프 탄핵론 등의 혼재 속에 금리는 10년물 기준 2.1%~2.3% 내외에서 등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반면 하반기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국내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2017년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6년 말 대비 +39.5bp 상승한 2.469%를 기록)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 정부는 월별 균등발행 기조 하에 금리 불안정성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만기 그룹별 최적 발행비중을 유지하면서도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장기물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발행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차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8년에 만기가 집중된 국고채 물량을 적극적으로 차환하여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높였다.

3. 국채시장 제도 선진화

(1)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정부는 안정적 국고채 발행을 위해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국고채전문딜러(PD)의 입찰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차등낙찰구간을 확대(3~5년물 2bp→3bp, 10~30년물 3bp→4bp)했으며, PD 재무요건을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완화했다. 또한 PD규정을 개정하여 PD 평가체계를 인수 중심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인수' 배점을 대폭 확대(29점→34점)하는 한편 PD부담을 고려하여 시장조성 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했다.

(2) 국고채 가치 제고

정부는 국고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PD평가요소에 '기일물 RP 거래 의무'를 신설했고, 국고채 교환 시 적용되는 발행금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환일 당일 장내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금리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PD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3) 물가채 시장 정상화 추진

정부는 물가채 과다공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물가채 인수·교환 실적을 PD평가에서 제외했다. 또한 물가채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으며, 물가채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객관적 시장금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조정했다. 11월에는 공급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연간 총 물가채 발행량을 10년물 연간 발행량의 15% 내에서 결정하고, 월별 발행량을 사전공지 하도록 했다.

〈표 10-3〉 2017년 주요 추진 정책

일시	내 용
1.1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상(연 1.50%→1.75%)
2.10	‘16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발표
3.17	PD→PPD 승강제 실시(메리츠증권, PPD→PD)
3.17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16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 국고채 발행제도 개선방향 발표
3.22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2,190억원)
4.1	‘차등낙찰구간 확대 등 일부 개정된 PD 및 금융지원 규정 시행
6.1	물가채 금리 변경 등 PD 및 금융지원 규정 일부 개정, 시행
8.17	‘17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발표
9.8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17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개최
10.1	스트립전문딜러 신규 지정(메리츠증권)
11.8	제4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국채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12.1	인수평가 배점 확대 등 PD 및 금융지원 규정 일부 개정
12.20	‘18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11

공공기관 혁신

제 11 장
공공기관 혁신

제1절 공공성·효율성 조화

1. 개 관[153)]

공공기관은 효율성 추구와 함께 공공성을 실현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을 거쳐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이 제정된 이래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방만 경영 근절 및 부채 감축 등 효율성 제고에는 성과를 얻었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성 확보에는 소홀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새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공공기관이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나가도록 했다.

15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권나림 사무관

우선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재무관리 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였으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윤리경영 확립에도 주력했다.

2. 경영평가 개편[154)]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작한 이래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기제로써 공공기관의 행태변화를 선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했다. 그러나 공운법 제정 이후 10년간 큰 변화 없이 기존의 틀을 유지함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공운법 제정 10년을 계기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요구를 반영하고자 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공공기관 노사,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기관·유형별 맞춤형 평가, 참여·개방·소통형 평가체계 구축, 책임·윤리경영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는 소홀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반

1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김경수 사무관

영했다.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공기업은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배점을 확대했으며, 사회적 가치를 성격에 따라 5대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로 구분하여 구성했다. 또한 각 기관의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를 재설계하고 관련 지표의 배점을 확대했다.

〈표 11-1〉 사회적 가치 배점 변화(공기업 기준)

기 존			개 편		
경영관리 (50)	사회적 책임 등 (19)	⇒	경영관리 (55)	사회적 가치 (30)	
	일반경영관리 (31)			일반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50)	안전·환경 등 (10~15)		주요사업 (45)	사회적 가치 (10~15)	
	기타 주요사업 (35~40)			기타 주요사업 (30~35)	

3. 공공기관 재무관리[155)]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정책은 공공기관의 비핵심자산 매각 및 경영효율화 등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면서, 기존의 '일률적

1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송윤주 사무관

부채감축'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재무관리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했다.

먼저 현행 부채관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도 기관별 특성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한 유연한 재무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재무건전성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확충,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투자 소요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투자 계획을 반영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수정하고,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17.8월)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를 위해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이다. 2011년에 도입된 이후 관련 지침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2016년 3월 법정 제도화되었다. 2017년에는 그간 공공기관들의 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의 신속화, 정책성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경·안전 등 의무투자에 대한 면제조항을 확대하고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했다. 또한 정책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영하고, 정부 추천 정책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부채관리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은 지속 개선되었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3년 217%에서 2017년 157%로 60%p 감소하였고, 공공기관 부채규모도 2013년 520.5조원에서 2017년 495.9조원으로 24.6조원 감소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38개)의 재무건전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 234%에서 2017년 173%로 감소하였고, 부채규모 역시 2013년 497.9조원에서 2017년 481.1조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17~'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8개 작성기관의 부채비율은 '21년 152%로 지속 개선될 전망이다.

제2절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1.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156)]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월)」을 수립했다. 동 대책에는 공공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 확충계획('22년까지 6~8만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인력증원 규모를 확충했으며, 이외에도 법률 제·개정, 신규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가 발생하거나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국립대병원 등 157명),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시행(근로복지공단 590명),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시설안전공단 500명), 중이온 가속기 구축 등 연구인력(기초과학연구원 등 408명)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복지, 안전, 미래 성장을 대비한 R&D 인력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 2017년에 확정된 2018년도 정기증원 규모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8,000여명 수준이다.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김희준 사무관

〈표 11-2〉 '18년도 공공기관 증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안전한 시설운영		보건복지 강화		혁신성장지원		기타	합계
	시설운영	안전강화	보건의료	고용복지	벤처중기	연구개발		
인 원	1,131	1,138	2,894	1,582	677	454	111	7,987
비 중	14.2%	14.2%	36.2%	19.8%	8.5%	5.7%	1.4%	100%

2017년도에는 정기증원 외에도 '17년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수시증원을 진행했다. 보건복지, 안전강화 등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인력을 확대했다. 유해화학물질 검사,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신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약 100명을 증원했다.

또한 정부는 각 공공기관별로 상이한 기능·상황 등에 따라 적합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등 정원관리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공운법의 기본 취지인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17.7.31, 공운위)하여 탄력정원 제도를 도입했다. 동서발전은 지침개정 이후 산업부 협의를 거쳐 72명을 추가 채용했다.

탄력정원은 총인건비 내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을 의미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 축소, 연가 활성화)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여유재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총인건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탄력정원제는 각 기관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 하에 추진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노력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영평가 가점 신설, 사내근로복지

기금 활용, 성과급 인센티브, 경상경비 예산지원, 지속적 홍보 및 표창수여'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나누기를 도입·확산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57)]

2016년말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16년 32.8%)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했다. 이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으로 그 비중(16.9%)은 민간(32.8%)의 절반 수준이나, 파견·용역근로자의 비중은 민간(4.5%) 보다 높은(6.5%) 상황이다.

〈표 11-3〉 2016년 비정규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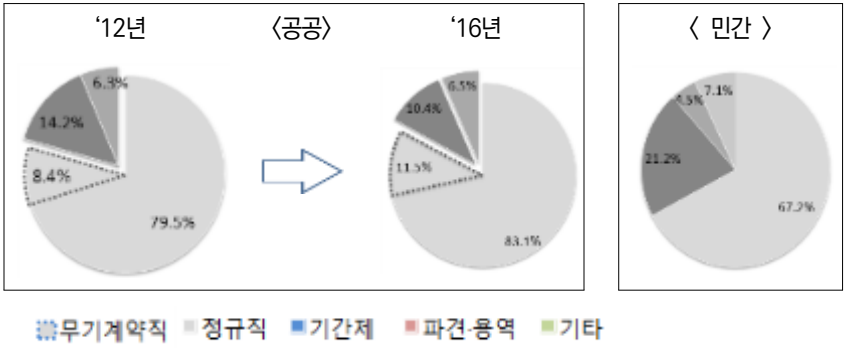

1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사운영과 차한원 사무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이에따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11-4〉 비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

단계	대상기관
1단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기관

〈표 11-5〉 1단계 기관 비정규직 현황('16년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무기계약직	전체	기간제 등	파견용역
중앙부처	310,982	290,094	20,582	20,888	13,295	7,593
자치단체	401,647	350,637	52,939	51,010	40,424	10,586
공공기관	431,760	318,573	24,676	113,187	40,134	73,053
지방공기업	70,055	55,429	9,466	14,626	8,759	5,867
교육기관	634,109	521,932	104,287	112,177	88,621	23,556
합 계	1,848,553	1,536,665	211,950	311,888	191,233	120,655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이다. 정규직 전환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

로 판단한다. 다만, 인적 속성이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전환 제외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결정을 진행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정규직 전환 결정인원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4.1만명 수준이며,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 등 2단계 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실태조사를 '18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표 11-6〉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현황('17년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계	'17	'18	'19	'20
계 획	96,030	37,736	40,190	13,135	4,969
실 적	40,627	40,627	-	-	-

제3절 채용비리 엄정대응 등 윤리경영 확립[158)]

1. 추진배경

최근 국회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2년~2013년 강원랜드 신입직원 채용 당시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대상자였음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각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엄중 제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10.27일)하였으며,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현황을 모두 조사하고 비리 관련자에게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및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채용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비리가 드러날 경우 직위를 곧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15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석상훈 사무관

2.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275개 기관(감사원 감사 또는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실시한 55개 기관을 제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인사·채용실적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17.10.16~'17.12.31). 각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했으며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항이 접수될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채용비리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

특별점검에 따라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다 강화된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특별점검 실시 결과, 275개 기관 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위원구성 부적절(532건), 규정미비(440건), 모집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기준(211건), 선발인원 변경(1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7건은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채용업무 처리과정 상 중대한 과실·착오 적발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방공공기관(행정안전부 주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국가권익위원회 주관)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36건은 수사의뢰하고 132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표 11-7〉 공공기관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

(단위 : 명)

	적발 건수	대상 기관	대상자						
			현직			퇴직			합계
			직원	기관장	합계	직원	기관장	합계	
수사의뢰	47	33*	34	8	42	8	14	22	64
징계(문책)	123	63*	155	-	155	-	-	-	155
합계	170	77*	189	8	197	8	14	22	219

* 수사의뢰, 징계 중복 기관 19개

3.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번 특별점검 결과 발표와 함께 채용비리로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된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에는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소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되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정성·구체성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즉시 해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수수가 결부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을 대외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및 퇴출근거와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박탈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하여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둘째, 공공기관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채용비리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채용 과정에 내부감사인 입회·참관 활성화 등 기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채용계획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각 전형단계 외부 평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12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제 12 장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활성화

1. 전략적 통상정책 적극 추진[159)]

(1)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2017년 국제 통상환경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EU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양상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1월), 수입 철강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4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재협상 로드맵 발표(7월) 등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다자 무역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20 정상회의(독일, 7월) 계기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합의했다.

1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윤지영 연구원

(2) FTA 추진 현황

정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 (‘18.1월 개시)을 포함, 신흥국과의 FTA 추진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Mega FTA 협상 등에 적극 참여해왔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 중이며, 타결 이후 발효를 앞둔 FTA는 1건, 협상 진행 및 재개를 검토 중인 FTA는 8건이다.

〈표 12-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7.12월 기준)

단 계	대상국가 및 주요내용
발효 (15건)	• 칠레(’04.4월 발효) • 싱가포르(’06.3월 발효) • EFTA 4개국(’06.9월 발효) • 아세안 10개국 (상품 ’07.6월 발효, 서비스 ’09.5월 발효, 투자 ’09.9월 발효) • 인도(’10.1월 발효) • EU(’11.7월 발효) • 페루(’11.8월 발효) • 미국(’07.6월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완료, ’12.3월 발효) • 터키(’13.5월 상품협정 발효) •호주(’14.12월 발효) • 캐나다(’15.1월 발효) • 중국(’15.12월 발효) • 뉴질랜드(’15.12월 발효) • 베트남(’15.12월 발효) • 콜롬비아(’16.7월 발효)
타결 (1건)	• 중미(’16.11월 실질 타결 선언, ’17.3월 가서명)

단 계	대상국가 및 주요내용
협상진행/ 재개검토 (8건)	• 한중일('17.4월 12차 협상) • RCEP('17.10월 20차 협상) • 에콰도르('16.11월 5차 협상) • 이스라엘('17.5월 5차 협상) • 멕시코('16.11월 예비협의) • GCC('09.7월 3차 협상) • MERCOSUR('17.3월 예비협의 완료, 공동선언문 서명) • EAEU('17.4월 3차 정부 간 협의회)

2017년 주요 통상 이슈 중 하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의 개정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2회)하여 양국의 입장과 자유무역협정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11월)하는 등 개정협상 대비에 주력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RCEP의 2018년 타결 목표 상정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했다.

(3) 평가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철폐와 더불어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및 WTO 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해왔다.

향후에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제통상 환경에 대비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다자주의 질서 수립에 있어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한 신시장 진출 확대[160)]

(1) 신북방 정책을 통한 신시장 진출 확대

1) 추진배경

역대 정부는 90년대 초 이후 북방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지원체계 미비, 상대국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및 대북관계 경색 등에 가로막혀 우리 경제의 성장 공간 다변화를 이루어내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창출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북방 국가들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신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2) 주요 추진내용

신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8월 대통령 직속의

16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서준익 사무관, 이상윤 사무관, 심수현 사무관, 다자경제협력팀 어지환 사무관, 이주영 사무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가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경제·산업·남북관계·국제정치 등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방위는 12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추진방향을 확정, 이를 기반으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161)]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기반 확충, 미래 성장동력 견인 및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종합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직후 이어진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20억불 규모의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체결, 한-EAEU FTA 실무작업반 구성 등 경제분야 성과를 확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개최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9개 분야(철도·전력·가스·조선·항만·북극항로·농업·수산·산업단지)를 다리로 삼아 한-러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9-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다. 양측은 9개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세부 행동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앙아시아 각 국과는 상호 보완적 경제·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인 우즈베키스탄과는 11월 부총리회담, 정상회담 등을 개최하여 수르길(Surgil) 프로젝트, 천연가스액화설비 사업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으며, 재무장관회의를 경제부총리회의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61) ’18.6월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안)」발표(북방위·관계부처 합동)

(2) 신남방정책을 통한 신시장 진출 확대

1) 추진배경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무역 및 경협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아세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중미 등 신흥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고 APEC, ASEM 등 경제협력체 회의, RCEP 등 다자 협상에도 적극 참여했다.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경색되는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완충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정부는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과 무역· 경협 활동을 증대하고 상생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외 정책을 모색했다.

2) 주요 추진내용

가. '신남방정책' 미래 공동체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 계기에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으로서 '3P 공동체'를 제안했다. 3P 공동체란 사람(people) 중심의 상생번영(prosperity)을 통한 평화(peace)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를 한-인도 외교 강화 전략과 함께 이른바 '신남방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인도, 아세안과의 협력 수준을 미, 중, 일, 러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나. 인도와의 협력 강화

먼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2017년 6월 개최한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우리 기업이 인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정 협상도 가속화되었다.

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2017년 9월 20일 고형권 제1차관은 밤방 브로조누고로(Bambang Brodjonegoro)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 정부도 개발 금융, 수출 금융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1월 대통령 동남아 순방 당시 아세안과 인프라, 금융, 방산 등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기로 합의하고,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 2+2 협의체 설치 모색, 2022년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등에 합의했다. 베트남과는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또한, 싱가포르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연계하기로 합의하고 한-싱 FTA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3.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 지원[162)]

(1) 전통수주산업 경쟁력 강화

2017년은 전년도에 비해 해외 인프라·건설 수주 실적이 다소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수주 가능성이 있는 주요 대형 프로젝트별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Team Korea(관계부처, 공기업, 금융기관, 건설사 등) 구성 등 다각적인 수주 노력을 추진하였다.

* 해외수주액(억불): (14) 660 → (15) 461 → (16) 282 → (17) 290

특히, 대외경제장관회의('17.1월)를 통해 20여개 수주지원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베트남(120억불), 이집트(30억불), 이란(250억불), 인도(100억불), 아프리카(100억불) 등 금융협력 패키지*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였다.

* 인프라진출 등 양자경협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EDCF, 경협증진자금을 포함한 총 금융지원 규모를 MOU형식으로 합의

1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김종성 사무관

그 결과, 터키 차낙칼레 교량(30억불), 이란 선박 및 정유시설(24.5억 유로), 이집트 메트로 3호선(7억 유로) 등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2) 인프라 시장 진출국 다변화

정부는 중동지역의 발주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중동 국가·지역의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러시아 및 극동지역 진출은 '17.8월 한-러 경제협력 추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제3차 동방경제포럼(9월)을 계기로 한-러 국동지역 공동금융협력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하고 역내 공동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또한, 한-우즈벡 정상회담시 우즈벡 재건펀드와 공동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으며,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시 금융패키지를 체결하는 등 인프라시장 다변화에 기여했다.

한편, '16년 수출금융과 EDCF 원조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3의 정책금융으로 도입된 신흥국경협증진자금은 '17년중 인도네시아 카리얀 상수도사업(1.4억불 규모) 및 스리랑카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 사업(0.7억불 규모)의 타당성 조사(F/S)를 실시하는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였다. 향후 주요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경협증진자금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3) 민관합동 수주지원체계 정비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범부처 민관협의체인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시장 개척에 핵심역할을 수행

했다. 주요 국가와의 정부간 경협채널을 통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ECA 자금인 수출금융, ODA 자금인 EDCF, 경협증진자금을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국토부·수은·산은 공동으로 총 850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를 조성하였다. 동 펀드는 사업 초기단계의 F/S 비용 등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사업수주 후 금융지원까지의 연계 프로세스를 민관 합동으로 지원, 인프라사업 全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

1. 아시아 및 신흥국 양자협력 강화[163)]

2017년 한-중 교역은 전년대비 약 13.5% 증가한 약 2,400억불로 중국은 2003년 이후 우리의 제1의 교역국으로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방한 중국인은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발표 이후 한중 관계 경색으로 전년대비 약 48.3% 감소한 416.9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2017년 10월말 한중 관계 개선 합의로 경제협력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6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한 중국 샤오지에 재정부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관계 개선과 AIIB를 통한 한중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말 한중 관계 개선 합의 이후 이어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추궈훙 주한중국대사의 면담에서는 한중 관계 정상화와 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2018년 초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경제협력과제를 보다 진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1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중 정상회담 수행 계기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샤오지에 중국 재정부장, 저우샤오촨 인민

163)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이세환 사무관, 국제경제과 심수현 사무관

은행장, 진리췬 AIIB 총재와 연쇄 면담하였다. 발개위 주임과는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 2월경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미래협력과제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재정부장과는 다자협력 채널을 통한 양국 간 정책공조와 혁신성장·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고위급 협의채널의 조속한 재가동에 대하여 경제부총리와 인민은행장이 합의하였다. 또한, AIIB 총재와는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협력 구체화를 위해 AIIB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중동지역과는 고위급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중동의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에 대응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신도시개발, 신재생에너지, ICT, 보건·의료 등으로 경협분야를 다각화했다. 아랍에미리트와는 한-UAE 경제공동위와 정상회담 등을 대비하여 에너지·인프라,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중동 지역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수교 55주년 계기 10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우디의 산업다각화 정책인 'Vision 2030'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했다.

2. 상생의 공적개발원조(ODA[164]) 확대[165]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164)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6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김민진 사무관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다. 또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수립하는 등 범정부적인 원조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ODA 규모를 확대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2.5억불(순지출 기준)의 ODA를 지원함으로써 전년 대비 17.3%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며, ODA 지원 규모는 29개 DAC 회원국 중 16위를 기록하였다. GNI 대비 ODA 규모는 전년보다 0.2%p 증가하여 0.16%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당수의 국가(29개 OECD DAC 회원국 중 17개국)와는 다르게 ODA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결과이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1.8%)한 22.0억불을 지원하여 29개 DAC 회원국 중 15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GNI 대비 ODA 규모는 2015년과 동일한 0.14%로 감소했다. 이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출자금을 2017년에는 1회만 납부하여 다자원조 규모가 15.9% 하락한 결과로 해석된다. ODA 지원 규모는 하락했으나, 우리나라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ODA 확대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표 12-2〉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단위 : 백만불)

구 분	'13	'14	'15	'16	'17 (잠정)	'16년 대비 '17년 증감률(%)
ODA 규모	1,755.4	1,856.7	1,915.4	2,246.2	2,250.0	△1.8
양자간	1,309.6	1,395.8	1,468.8	1,548.5	1,618.0	4.5
다자간	445.8	461.0	446.6	697.7	587.0	△15.9

특히, 우리나라는 對개발도상국 원조를 추진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SDGs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IDA가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담당하여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ODA를 추진하고 있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16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주로 지원한다.

EDCF는 2017년말까지 54개국 393개 사업에 대해 총 143억불을 지원(사업승인)했으며, 2017년에만 22개 사업(약 15억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에는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사회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병행하였고,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조융자 사업도 균형있게 추진되었다. 필리핀의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의 풍부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필리핀의 항만 물류처리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네갈 냉동탑차 공급사업의

1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박중민 사무관

경우 우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소액차관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서아프리카 수산분야 인프라 시장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또한, WB-GCF와 삼각 협력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수몰 위험에 처한 남태평양 도서국인 솔로몬제도에 수력발전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동 사업은 솔로몬제도의 경제개발과 전력난 해소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솔로몬제도 최초의 대규모 PPP 인프라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EDCF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인 SDGs 등 국제사회의 ODA 환경변화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지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167)]

(1) 개괄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하여 위기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G20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공조 체제 구축, 포용적 성장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며 세계경제 이슈에 있어 명실상부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발전해왔다. 2017년 의장국인 독일은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을 주제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거시경제 정책 공조,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국제조세 및 아프리카 협약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12-3〉 2017년 G20 주요의제

주요 의제	주요 논의내용
거시경제 정책공조	세계경제 회복력 구축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안
국제금융체제	글로벌 금융안정성 확보 방안
금융규제	금융규제 개혁 이행과 개선방안
국제조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아프리카 협약	아프리카 지역 민간·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 친화적 환경 구축 방안

16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박승환 사무관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과 김은지 사무관, 전종현 사무관

(2) 주요 성과 및 평가

2017년 정상회의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에 개최되었으며, 이에 앞서 2차례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주요 의제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4〉 2017년 G20 관련 회의 일정

일시	장소	회의명
3.17(금)~ 3.18(토)	독일 바덴바덴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
4.20(목)~ 4.21(금)	미국 워싱턴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
7. 7(금)~ 7. 8(토)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10.12(목)~10.13(금)	미국 워싱턴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
12. 1(금)~12. 2(토)	아르헨티나 바릴로체	G20 재무차관 ·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공조 분야에서 금년 G20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고착화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재정 · 통화정책 및 구조개혁 등을 지속해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통화정책만으로는 G20이 목표로 하는 성장의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나누어지도록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지속되었다. 2014년 마련한 'G20 성장전략'[168]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일년간 각국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전략을 보완하고, 기존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우리는 회원국별 이행실적

168) 2018년까지 G20의 GDP를 현재 추세(2013년 10월 IMF 예측치 기준) 대비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구조개혁 방안 등을 담아 2014년 마련

점검평가에서 이행완료율(96%)이 G20 평균(55%)보다 월등히 높고, 부진과제도 없어 이행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로써 G20 회원국 중 4년 연속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G20은 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국경간 과도한 자본흐름의 변동성에 따른 금융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에 정책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기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전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내년도 실무회의 의장국으로 재선임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은행과 비(非)은행 건전성 강화, 장외파생상품 거래 투명성 제고, 대마불사(大馬不死) 종식 등을 위한 주요 개혁안이 마련되었다. 올해에는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 현황과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경제변화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169]가 증가함에 따라 G20은 국제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G20은 그간 합의한 BEPS 대응방안[170] 이행,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171] 올해 개시 등 국제조세 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

169)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인해 세원이 잠식되는 현상

170)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내법과 조세조약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15개 권고안,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시 최종 승인

가하는 한편, 모든 국가의 동참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조세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대응방안,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프리카 협약 분야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G20 회원국들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성격의 아프리카 협약 보고서를 마련하고, G20 회원국-아프리카 국가간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고서에 우리측 아프리카 지원 이니셔티브인 「KOAFEC Action Plan」을 모범 투자 지원 정책 사례로 반영하여, 글로벌 개도국 인프라 지원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G20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글로벌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또한,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리경제에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2. 국제기구 참여 확대[172)]

(1) 국제금융기구 연차총회 참석 및 연례협의 등 실시

국제금융기구 연차총회는 각 국제금융기구별로 운영실적 및 계획

171) 과세당국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교환, 한국은 2017년 9월 개시
17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이명진 사무관, 김연태 사무관, 문성호 사무관

등을 논의하는 공식회의로서, 주요국 장관급 대표들이 참석하여 기구의 연간 및 중장기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 대표들과의 양자면담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2017년에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3월, 파라과이),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IMF/WB) 춘계회의 및 연차총회(4월/10월, 미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5월, 키프로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월, 일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5월, 인도)에서 연이어 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총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각 기구의 운영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각 국가 및 국제금융기구 주요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제금융기구들과의 연례협의는 각 기구들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각 기구들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출연하여 각 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탁기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지원 분야 및 지원 등의 운영방향을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2017년에도 IMF 연례협의(11월), AMRO 연례협의(8월), AfDB KOAFEC 자문단회의(9월) 등을 통해 각 기구와의 협력방안 및 EDCF 협력, 신탁기금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10월에는 IDB와 공동으로 제4회 한-중남미 비즈니스 써밋(KOREA-LAC Business Summit)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중남미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금번 행사에는 양 지역의 정부,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들도 대거 참석하여 동 행사가 한-중남미 간 실질적 비즈니스 채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 써밋을 계기로 IDB 채용설명회를 개

최하여 한국의 젊은 인재들에게 국제금융기구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 우리 인력 및 기업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기획재정부는 우수한 인력과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1월에는 수원 아주대학교와 전남 목포대에서 “제9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계은행(WB), IMF, ADB, EBRD, AfDB 등 9개 기구에서 참여한 2017년 행사는 특별히 경기일대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에서 개최됨으로써 다양한 지역의 젊은 인재들에게 국제금융기구 진출 관련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2017년 채용설명회에는 총 1600여명의 참가자가 인터뷰에 지원했으며 그 중 151명에게 인터뷰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EBRD 초급전문가(JPO) 2명, 인턴 4명 및 AfDB 인턴 5명 등이 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되었다.

한편, 2017년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MDB/글로벌개발펀드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하여,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 및 조달시장 참여절차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7년 행사에는 WB, ADB, AIIB, AfDB, E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해외 44개 발주처가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27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및 추진 예정 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프로젝트 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성공사례 정보 공유 등을 진행했다.

(3) AIIB 연차총회 유치

기재부는 2017년 6월 16 ~ 18일동안 제주도에서 제2차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차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총회 의장국으로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등 주요 의제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또한 연차총회를 계기로 인프라 개발/투자 관련 포럼, 한국 인프라 기업 설명회, 개도국 인프라 투자 설명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비즈니스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기업의 인프라 기술 역량을 홍보하는 등 국내 인프라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했다.

3.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대응 강화[173)]

(1) GCF의 정착과 발전 지원

우리정부는 2015년 6월 우리정부와 GCF가 체결한 공여협정에 따라 2017년 공여 예정금액인 1,150만불을 공여했다. 2017년말 기준 GCF에 대한 우리정부의 누적 공여금액은 약 4,700만불이며 2018년까지 총 1억불을 GCF에 공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CF의 안정적 운영 및 초기 재원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한편 GCF는 4월, 7월, 9월 총 세 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4월과 7월, 두 차례의 이사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했다. 우

173) 집필자: 녹색기후기획과 이상후, 김재오, 정동현 사무관

리정부는 GCF 운영, 사업 및 이행 기구 인증, 재원 보충 등과 관련한 이사회 논의를 지속 모니터링 하고 특히 한국과 관련한 GCF 추진 사업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4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16차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EDCF 기금과 월드 뱅크가 합작하여 기획한 '솔로몬제도 수력발전 사업'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한국 기업이 GCF를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었다.

7월 17차 이사회 역시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였으며 기존에 승인된 사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배정하는 사업 승인 정책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고, 사무국의 업무가 확대되고 조직이 커짐에 따라 부사무총장, 대외협력국장 직위를 신설하는 등 사무국 조직 개편안이 승인되었다.

9월 18차 이사회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었으며 사무국 직원을 2017년 현재 134명에서 2018년도에는 250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GCF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9년도부터 시작하는 GCF 제3기 이사진에 진출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은 총 56개국이 해당되는 아시아·태평양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GCF 이사진은 6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 이란 등 그룹 내 주요국들과 양자 회의를 수시로 갖고 한국 정부의 GCF 이사 진출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GCF 제3기 이사진 국가는 2018년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2) 기후변화 협상 재원분야 한국의 위상 제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3차 당사국 총회, 부속기구회의 참여를 통해 기후재원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에 위치한 GCF가 기후 재원의 중추 기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1월 개최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치열한 논의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기후재원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추진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GCF 운영에 지침을 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상설위원회 아태지역 대표 위원으로 한국 정부가 선정되었고 2018년부터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재정상설위원회 활동으로 GCF의 원활한 운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상설위원회는 기후 재원 격년보고서와 재정상설위원회 포럼도 매년 개최하는데 한국 정부는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기후금융 사례'를 발표하고 2018년도 재정상설위원회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키로 협의했다.

그 밖에 OECD 기후변화 전문가 포럼과 UNFCCC의 환경건전성 그룹(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변화 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3) 개도국 역량배양 지원 및 GCF 홍보 강화

우리 정부는 GCF와 함께 개도국이 기후변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도국 역량배양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5월 인천 송도에서 3일간 GCF와 공동으로 개도국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도국의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킹 디너를 개최하여, 개도국의 상호 협력 등을 독려했다. 동 행사에는 개도국 정부관계자와 인증기구, 능력배양 사업 수행기관 등이 참여하여 상호 추진 중인 사업을 공유하고, GCF의 정책과 지원수단에 대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10월에는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및 개도국 공무원 연수'를 개최했다. 한국의 우수 기후사업을 개도국·GCF 인증기구와 공유했으며, GCF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개도국 공무원연수 참여자들은 한국의 기후정책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앞으로 한국과 기후변화대응사업 협력가능성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 일지

國 內

1월

10 ▷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
13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25 ▷ 정부, 한국-말레이시아 원/링깃 통화스왑 연장 계약 체결

2월

08 ▷ 한국은행, 호주 중앙은행과 원/호주달러 통화스왑 규모 확대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3일 시행)
22 ▷ 기획재정부, 외국한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23~3.21일)
23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23 ▷ 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27 ▷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
28 ▷「보험업법 시행령」개정(2.28일 시행)

3월

06 ▷ 한국은행, 한국-인도네시아 원/루피아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22 ▷ 기획재정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발표
28 ▷ 고용노동부,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발표

4월

13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1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대부업 등의 동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0.19일 시행)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10.19 일 시행)

5월

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8 시행)
24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및 닭고기 가격 안정화 추진
25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30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31 ▷ 산업통상자원부 등, 노후 석탄발전기 6월 한달간 일시 가동중단

6월

19 ▷ 기획재정부 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기획재정부 등,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29 ▷ 국토교통부, 서울~양양 고속도로 완전 개통
▷ 국토교통부,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7월

13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15 ▷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16 ▷ 기획재정부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19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22 ▷ 국회,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25 ▷ 기획재정부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26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7.31일 시행)

8월

02 ▷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발표
▷ 국토교통부 등,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08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
09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출범
10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16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22 ▷ 금융위원회,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8.23일 시행)
28 ▷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8.28일 시행)
29 ▷ 기획재정부, 「2018년 정부 예산안」 편성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9.4일 시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29일 시행)
30 ▷ 기획재정부,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
31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9월

01 ▷ 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05 ▷ 국토교통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추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9.5일 시행)
12 ▷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21 ▷ 국토교통부, 「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10일 시행 예정)

28 ▷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방안 발표

29 ▷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 예고

10월

13 ▷ 금융통화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8.1.31 시행)

1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9일 시행)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0.19일 시행)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10.19일 시행)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10.19일 시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0.19일 시행)

▷ 「은행법 시행령」 개정(10.19일 시행)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10.19일 시행)

18 ▷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9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금융위원회,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24 ▷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27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발표(12월말 확정 계획)

3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10.31일 시행)

▷ 「보험업법」 개정(2018.5.1일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0.31일 시행)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2018.11.1.일 시행)

11월

02 ▷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 정부,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2.8.일 시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 (2018.2.8.일 시행)

09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16 ▷ 한국은행, 캐나다중앙은행과 원화/캐나다 달러화 통화스왑계약 체결

24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28 ▷ 기획재정부,「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11.28일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8.5.29.일 시행)

29 ▷ 정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정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30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12월

05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

▷ 기획재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1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8.1.1.일 시행)

▷「증권거래세법」 개정(2018.1.1.일 시행)

20 ▷ 금융위원회,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1 ▷ 기획재정부, 종교인소득 과제 관련「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

26 ▷「새마을금고법」 개정(2017.12.26.일 시행)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2017.12.28.일 시행)

27 ▷ 기획재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8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國 外

1월

➤ 아시아

01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4로 기준치(50) 상회 (11월 51.7)

10 ▷ 중국국가통계국, 12월 CPI 전년동기대비 2.1% 상승

12 ▷ 일본은행, 11월 경상수지 1조 4,155억엔 흑자

▷ 중국인민은행, 12월중 M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1.3% (11월 11.4%) 상승

13 ▷ 중국상무부, 12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43.4% 증가한 122.1억 달러 기록(11월 -4.6%)

17 ▷ 일본 경제산업성, 11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1.5%

18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46개시 및 45개시(11월 55개시 및 47개시)

20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0%(11월 6.2%),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1%(11월 8.3%), 소매판매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9%(11월 10.8%)

27 ▷ 일본 총무성, 12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3%

30 ▷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7%

31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일본 총무성, 12월 실업률 3.1%

▷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0.5%

➤ 아메리카

6 ▷ 미 노동통계국, 12월 실업률 4.7%

13 ▷ 미 통계국, 1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6%

18 ▷ 미 노동통계국, 12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1%

31 ▷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1.9%

➤ 유럽·아프리카

06 ▷ 유로, 1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1%

09 ▷ 유로, 11월 실업률 9.8%

12 ▷ 유로, 11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5%

18 ▷ 유로, 1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1%

19 ▷ 유로, 11월 경상수지 361억 유로 흑자

2월

➤ 아시아

01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3으로 기준치(50) 상회(12월 51.4)

08 ▷ 일본 재무성, 2월 경상수지 11,122억엔 흑자

10 ▷ 중국해관총서, 1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6.2%)보다 증가한 7.9% 기록

14 ▷ 일본 경제산업성, 12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0.7%

▷ 중국인민은행, 1월중 M2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1.3% (12월 11.3%) 상승

16 ▷ 중국상무부, 1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120억 달러 기록(12월 -43.4%)

22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45개시 및 51개시(12월 46개시 및 45개시)

28 ▷ 일본 경제산업성, 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5%

▷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잠정치) -0.8%

➤ 아메리카

02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동결(0.50~0.75%)하기로 결정

03 ▷ 미 노동통계국, 1월 실업률 4.8%

15 ▷ 미 통계국, 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4%

▷ 미 연준, 1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3%

▷ 미 노동통계국, 1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5%

28 ▷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1.9%

➤ 유럽·아프리카

02 ▷ 유로, 1월 실업률 9.6%

03 ▷ 유로, 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1%

14 ▷ 유로,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1.6%

▷ 유로, 12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6%

17 ▷ 유로, 12월 경상수지 310억유로 흑자

22 ▷ 유로, 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8%

28 ▷ 유로, 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2.0%

3월

➤ 아시아

01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6으로 기준치(50) 상회(1월 51.3)

03 ▷ 일본 총무성, 1월 실업률 3.0%

▷ 일본 총무성, 1월 CPI 전년동기대비 0.4% 상승

08 ▷ 중국해관총서, 2월중 수출 증감율 전월(7.6%)보다 감소한 -1.6% 기록

▷ 일본 내각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1.2%

▷ 일본은행, 1월 경상수지 665억엔 흑자

09 ▷ 중국인민은행, 2월중 M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1.1% (1월 11.3%) 상승

14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3%(12월 6.0%),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9%(12월 8.1%),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9.5%(12월 10.9%)

15 ▷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0.4%

17 ▷ 중국상무부, 2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87.1억 달러 기록(1월 -14.8%)

18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6개시 및 55개시(1월 45개시 및 51개시)

29 ▷ 일본 경제산업성, 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2%

31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8로 기준치(50) 상회(2월 51.6)

▷ 일본 총무성, 2월 실업률 2.8%

▷ 일본 총무성, 2월 CPI(전년동기대비) 0.3% 상승

▷ 일본 경제산업성, 2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잠정치) 2.0%

➤ 아메리카

10 ▷ 미 노동통계국, 2월 실업률 4.7%

15 ▷ 미 통계국, 2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1%

▷ 미 노동통계국, 2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7%

16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75%~1.0%로 25bp 인상

17 ▷ 미 연준, 2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1%

21 ▷ 미 상무부, 4/4분기 경상수지 1,124억달러 적자

28 ▷ 미 상무부, 4/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1%

➤ 유럽·아프리카

02 ▷ 유로, 1월 실업률 9.6%

03 ▷ 유로, 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1%

15 ▷ 유로, 4/4분기 실업률 9.7%

14 ▷ 유로, 1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3%
16 ▷ 유로, 2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2.0%
17 ▷ 유로, 1월 무역수지 156.8억유로 흑자
31 ▷ 유로, 3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5%

4월

➤ 아시아

10 ▷ 일본은행, 2월 경상수지 28,136억엔 흑자
12 ▷ 중국국가통계국, 3월 CPI 전년동기대비 0.9% 상승
13 ▷ 중국해관총서, 3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1.6%)보다 증가한 16.4% 기록
▷ 중국상무부, 3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31.1억 달러 기록(2월 3.1%)
14 ▷ 중국인민은행, 3월중 M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6%(2월 11.1%) 상승
▷ 일본 경제산업성, 2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3.2%
17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6%(2월 6.3%),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9.27%(2월 8.9%),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9%(2월 9.5%)
18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62개시 및 64개시(2월 56개시 및 55개시)
27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28 ▷ 일본 총무성, 3월 실업률 2.8%
▷ 일본 경제산업성, 3월 소매판매 전기대비 0.2% 상승
▷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잠정치) -2.1%
▷ 일본 총무성, 3월 CPI 전년동기대비 0.2% 상승

30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2로 기준치(50) 상회(3월 51.8)

➤ 아메리카

07 ▷ 미 노동통계국, 3월 실업률 4.5%

14 ▷ 미 노동통계국, 3월 소매판매 전기대비 0.1% 상승

▷ 미 노동통계국, 3월 CPI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18 ▷ 미 연준, 3월 산업생산지수 전기대비 0.5%

28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0.7%

➤ 유럽·아프리카

03 ▷ 유로, 2월 실업률 9.5%

04 ▷ 유로, 2월 소매판매 전기대비 0.5% 상승

11 ▷ 유로, 2월 산업생산 전기대비 -0.3% 하락

19 ▷ 유로, 3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5%

21 ▷ 유로, 2월 경상수지 379억유로 흑자

27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수신금리(-0.4%)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28 ▷ 유로, 3월 실업률 9.5%

▷ 유로, 4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9%

5월

➤ 아시아

08 ▷ 중국해관총서, 4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16.4%)보다 감소한 8.0% 기록

10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CPI 전년동기대비 1.2% 상승

11 ▷ 일본 재무성, 3월 경상수지 29,077억엔 흑자

12 ▷ 중국인민은행, 4월중 M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5%(3월 10.6%) 상승

15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5%(3월 7.6%),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9%(3월 9.2%),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7%(3월 10.9%)

17 ▷ 일본 경제산업성, 3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1.9%

18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8개시 및 61개시(3월 62개시 및 64개시)

▷ 중국상무부, 4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89.2억 달러 기록(3월 1.6%)

▷ 일본 내각부, 2017.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1.0%

26 ▷ 일본 총무성, 4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4%

30 ▷ 일본 총무성, 4월 실업률 2.8%

▷ 일본 경제산업성, 4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4%

31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2로 기준치(50) 상회(4월 51.2)

▷ 일본 경제산업성, 4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잠정치) 4.0%

➤ 아메리카

04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75%~1.0%로 동결

05 ▷ 미 노동통계국, 4월 실업률 4.4%

12 ▷ 미 통계국, 4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4%

▷ 미 노동통계국, 4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

16 ▷ 미 연준, 4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1%

26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1.2%

➤ 유럽·아프리카

02 ▷ 유로, 3월 실업률 9.4%

04 ▷ 유로, 3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2%

12 ▷ 유로, 3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1%
16 ▷ 유로,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0.6%
17 ▷ 유로, 4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9%
19 ▷ 유로, 3월 경상수지 341억유로 흑자
31 ▷ 유로, 4월 실업률 9.3%
▷ 유로, 5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4%

6월

➤ 아시아

08 ▷ 중국해관총서, 5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8.0%)보다 증가한 8.7% 기록
▷ 일본 내각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확정치) 0.3%
▷ 일본 재무성, 4월 경상수지 19,519억엔 흑자
09 ▷ 중국국가통계국, 5월 CPI 전년동기대비 1.5% 상승
14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5%(4월 6.5%),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6%(4월 8.9%),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7%(4월 10.7%)
▷ 중국인민은행, 5월중 M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9.6%(4월 10.5%) 상승
▷ 일본 경제산업성, 4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4.0%
15 ▷ 중국상무부, 5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한 81.1억 달러 기록(4월 -9.8%)
16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19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6개시 및 60개시(4월 58개시 및 61개시)
29 ▷ 일본 경제산업성, 5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6%

30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로 기준치(50) 상회(5월 51.2)

▷ 일본 총무성, 5월 실업률 3.1%

▷ 일본 총무성,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0.4%

▷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전기대비, 잠정치) -3.3%

➤ 아메리카

02 ▷ 미 노동통계국, 5월 실업률 4.4%

14 ▷ 미 노동통계국, 5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1.9%

▷ 미 통계국, 5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3%

15 ▷ 미 연준, 5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0%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0%~1.25%로 25bp 인상

20 ▷ 미 상무부, 1/4분기 경상수지 1,168억달러 적자

29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1.4%

➤ 유럽·아프리카

03 ▷ 유로, 4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1%

07 ▷ 유로,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3%

08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4%)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14 ▷ 유로, 1/4분기 실업률 9.5%

▷ 유로, 4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5%

16 ▷ 유로, 5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4%

20 ▷ 유로, 4월 경상수지 222억유로 흑자

30 ▷ 유로, 6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3%

7월

➤ 아시아

10 ▷ 일본 재무성, 5월 경상수지 16,539억엔 흑자

▷ 중국국가통계국, 6월 CPI 전년동기대비 1.5% 상승

12 ▷ 중국인민은행, 6월중 M2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9.4%

13 ▷ 중국상무부, 6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한 148.0억 달러 기록

▷ 중국해관총서, 6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8.3%)보다 증가한 11.3% 기록

14 ▷ 일본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전월대비, 확정치) -3.6%

17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6%,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6%,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1.0%

18 ▷ 중국국가통계국, 6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60개 및 60개

20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수준에서 유지

▷ 일본 재무성, 6월 수출(전년동월대비) 9.7%

28 ▷ 일본 경제산업성, 6월 소매판매(전월대비) 0.2%

▷ 일본 총무성, 6월 실업률 2.8%

▷ 일본 총무성, 6월 CPI(전년동기대비) 0.4%

31 ▷ 일본 경제산업성, 6월 광공업생산(전월대비, 잠정치) 1.6%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4로 기준치(50) 상회(6월 51.7)

➤ 아메리카

07 ▷ 미 노동통계국, 6월 실업률 4.4%

14 ▷ 미 노동통계국, 6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1.6%

▷ 미 통계국, 6월 소매판매(전월대비) -0.2%

27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0%~1.25%로 동결

28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수정치) 1.2%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6%

➤ 유럽·아프리카

05 ▷ 유로, 5월 실업률 9.2%

▷ 유로, 5월 소매판매(전월대비) 0.4%

12 ▷ 유로, 5월 산업생산(전월대비) 1.3%

18 ▷ 유로, 6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3%

20 ▷ 유로, 5월 경상수지 301억유로 흑자

21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4%)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

31 ▷ 유로, 6월 실업률 9.1%

▷ 유로, 7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3%

8월

➤ 아시아

08 ▷ 일본 재무성, 7월 경상수지 23,200억엔 흑자

▷ 일본 내각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확정치) 0.6%

▷ 중국, 8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6.5%)보다 하락한 5.1% 기록

09 ▷ 중국, 8월 CPI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14 ▷ 일본 경제산업성, 7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0.8%

▷ 중국, 8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6.0%(7월 6.4%),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7.8%(7월 8.3%),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0.1%(7월 10.4%)

▷ 중국상무부, 8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한 94.0억 달러 기록(7월 -15.7%)

15 ▷ 중국, 8월중 M2 증가율(전년동월대비) 8.9%(7월 9.2%) 상승

18 ▷ 중국, 8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46개시 및 54개시(7월 56개시 및 54개시)

21 ▷ 일본은행, 기준금기(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29 ▷ 일본 경제산업성, 8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7%

▷ 일본 경제산업성, 8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잠정치) 2.1%

▷ 일본 총무성 통계국, 8월 실업률 2.8%

▷ 일본 총무성 통계국, 8월 CPI(전년동월대비) 0.7%

31 ▷ 중국, 9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2.4로 기준치(50) 상회(8월 51.7)

➤ 아메리카

01 ▷ 미 노동통계국, 8월 실업률 4.4%

14 ▷ 미 노동통계국, 8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1.9%

19 ▷ 미 상무부, 2/4분기 경상수지 1231억달러 적자

21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00%~1.25%로 동결

28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3.1%

➤ 유럽·아프리카

05 ▷ 유로, 7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3%

07 ▷ 유로,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6%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4%)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13 ▷ 유로, 7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1%

18 ▷ 유로, 8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5%

19 ▷ 유로, 7월 경상수지 251억유로 흑자

9월

➤ 아시아

01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4로 기준치(50) 상회(7월 49.9)

08 ▷ 일본 내각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0.7%

▷ 일본은행, 7월 경상수지 19,382억엔 흑자

▷ 중국해관총서, 8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5.6%)보다 증가한 -2.8% 기록

09 ▷ 중국국가통계국, 8월 CPI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1.3% 상승

13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3%(7월 6.0%),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8.1%(7월 8.1%), 소매판매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6%(7월 10.2%)

14 ▷ 일본 경제산업성, 7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0.4%

19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64개시 및 57개시(7월 51개시 및 51개시)

21 ▷ 일본은행, 기준금리(-0.1%)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29 ▷ 일본 경제산업성, 8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1%

30 ▷ 일본 총무성, 8월 CPI(전년동기대비) -0.5%

▷ 일본 총무성, 8월 실업률 3.1%

▷ 일본 경제산업성, 8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속보치) 1.5%

➤ 아메리카

02 ▷ 미 노동통계국, 8월 실업률 4.9%

15 ▷ 미 상무부, 2/4분기 경상수지 1,199억달러 적자

▷ 미 통계국, 8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3%

▷ 미 연준, 8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4%

16 ▷ 미 노동통계국, 8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1.1%

21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 수준(0.25~0.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29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1.4%

➤ 유럽·아프리카

05 ▷ 유로, 7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1%

06 ▷ 유로, 2/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1.2%

14 ▷ 유로, 7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1%

15 ▷ 유로, 8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0.2%

19 ▷ 유로, 7월 경상수지 210억유로 흑자

30 ▷ 유로, 8월 실업률 10.1%

10월

➤ 아시아

10 ▷ 일본 재무성, 8월 경상수지 23,804억엔 흑자

13 ▷ 중국해관총서, 9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5.1%)보다 상승한 8.1% 기록

▷ 중국상무부, 9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105.8억 달러 기록(8월 6.9%)

14 ▷ 중국인민은행, 9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9.2%(8월 8.9%) 상승

16 ▷ 일본 경제산업성, 8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2.0%

▷ 중국국가통계국, 9월 CPI 전년동기대비 1.6% 상승

19 ▷ 중국, 9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6%(8월 6.0%),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5%(8월 7.8%),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3%(8월 10.1%)

23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44개시 및 49개시(8월 46개시 및 54개시)

27 ▷ 일본 총무성 통계국, 9월 CPI(전년동기대비) 0.7%

30 ▷ 일본 경제산업성, 9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8%

31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6로 기준치(50) 상회(9월 52.4)

▷ 일본 총무성 통계꾹, 9월 실업률 2.8%

▷ 일본 경제산업성, 9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잠정치) -1.1%

➤ 아메리카

06 ▷ 미 노동통계국, 9월 실업률 4.2%

13 ▷ 미 통계국, 9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0%

▷ 미 노동통계국, 9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

17 ▷ 미 연준, 9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3%

27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3.0%

➤ 유럽·아프리카

02 ▷ 유로, 8월 실업률 9.0%

04 ▷ 유로, 8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1%

12 ▷ 유로, 8월 산업생산(전기대비) 1.4%

17 ▷ 유로, 9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5%

20 ▷ 유로, 8월 경상수지 333억유로 흑자

26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40%)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31 ▷ 유로,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속보치) 2.4%

▷ 유로, 10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4%

▷ 유로, 9월 실업률 8.9%

11월

➤ 아시아

08 ▷ 중국해관총서, 10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8.1%)보다 하락한 6.8% 기록

09 ▷ 일본 재무성, 9월 경상수지 22,712억엔 흑자

▷ 중국국가통계국, 10월 CPI 전년동기대비 1.9% 상승

13 ▷ 중국인민은행, 10월중 M2 증가율(전년동기대비) 8.8%(9월 9.2%) 상승

14 ▷ 중국상무부, 10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90.3억 달러 기록(9월 14.9%)

▷ 중국, 10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2%(9월 6.6%),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3%(9월 7.5%),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0%(9월 10.3%)

15 ▷ 일본 경제산업성, 9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1.0%

▷ 일본 내각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 속보치) 0.3%

18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0개시 및 47개시(9월 44개시 및 49개시)

29 ▷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소매판매(전월대비) 0.0%

30 ▷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전월대비, 잠정치) 0.5%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8로 기준치(50) 상회(10월 51.6)

➤ 아메리카

02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00%~1.25%로 동결

03 ▷ 미 노동통계국, 10월 실업률 4.1%

15 ▷ 미 통계국, 10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1%

▷ 미 통계국, 10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0%

16 ▷ 미 연준, 10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9%

29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3.3%

➤ 유럽·아프리카

07 ▷ 유로, 9월 소매판매(전기대비) 0.8%

14 ▷ 유로, 9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6%

▷ 유로,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잠정치) 2.4%

16 ▷ 유로, 10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4%

17 ▷ 유로, 9월 경상수지 378억유로 흑자

30 ▷ 유로, 1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속보치) 1.5%

▷ 유로, 10월 실업률 8.8%

12월

➤ 아시아

01 ▷ 일본 총무성, 11월 CPI(전년동기대비) 0.6%

▷ 일본 총무성, 10월 실업률 2.8%

08 ▷ 중국해관총서, 11월중 수출 증감률 전월(6.8%)보다 상승한 12.3% 기록

▷ 일본 내각부, 3/4분기 GDP성장률(전기대비, 잠정치) 0.6%

09 ▷ 중국국가통계국, 11월 CPI 전년동기대비 1.7% 상승

11 ▷ 중국인민은행, 11월중 M2 증가율(전년동월대비) 9.1%(10월 8.8%) 상승

14 ▷ 중국상무부, 11월중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월대비) 90.0% 증가한 187.8억 달러 기록(10월 2.5%)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6.1%(10월 6.2%),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2%(10월 7.3%),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10.2%(10월 10.0%)

▷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확정치) 0.5%

18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 도시수가 각각 50개 및 51개(10월 50개 및 47개)

21 ▷ 일본은행, 기준금리(단기금리 -0.1%, 장기금리 0% 내외)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26 ▷ 일본 총무성, 11월 실업률 2.7%

▷ 일본 총무성, 11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6%

28 ▷ 일본 경제산업성, 11월 광공업생산(전기대비, 잠정치) 0.6%

▷ 일본 경제산업성, 1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9%

31 ▷ 중국국가통계국, 12월중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6로 기준치(50) 상회(11월 51.8)

➤ 아메리카

8 ▷ 미 노동통계국, 11월 실업률 4.1%

13 ▷ 미 통계국, 11월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

14 ▷ FOMC,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1.25%~1.50%로 25bp인상

▷ 미 통계국, 11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0%

15 ▷ 미 연준, 11월 산업생산지수(전기대비) 0.2%

19 ▷ 미 상무부, 3/4분기 경상수지 1,006억달러 적자

21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수정치) 3.2%

➤ 유럽·아프리카

05 ▷ 유로, 10월 소매판매(전기대비) -1.1%

▷ 유로, 3/4분기 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 확정치) 2.9%

13 ▷ 유로, 10월 산업생산(전기대비) 0.4%

14 ▷ ECB, 기준금리(0.00%), 한계대출금리(0.25%) 및 예금금리(-0.4%)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18 ▷ 유로, 11월 HICP 상승률(전년동월대비, 확정치) 1.5%

20 ▷ 유로, 10월 경상수지 308억유로 흑자

부록 2.

주요 경제 통계

1. 고용

(천명)

	15세 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비 경 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2016	43,606	27,418	26,409	1,009	16,187	62.9	66.1 (41.7)	3.7(9.8)
2017	43,931	27,748	26,725	1,023	16,183	63.2	66.6 (42.1)	3.7(9.8)
2018	44,182	27,895	26,822	1,073	16,287	63.1	66.6 (42.7)	3.8(9.5)
2017. Ⅰ	43,818	27,262	26,100	1,162	16,556	62.2	65.8 (41.3)	4.3(10.7)
Ⅱ	43,899	27,993	26,919	1,074	15,906	63.8	66.9 (42.6)	3.8(10.3)
Ⅲ	43,967	27,961	26,998	963	16,006	63.6	67.0 (42.8)	3.4(9.3)
Ⅳ	44,038	27,775	26,883	892	16,263	63.1	66.9 (41.7)	3.2(9.0)
2018. Ⅰ	44,088	27,464	26,283	1,181	16,624	62.3	66.0 (42.1)	4.3(10.0)
Ⅱ	44,141	28,125	27,019	1,105	16,017	63.7	66.9 (42.5)	3.9(10.1)
Ⅲ	44,212	28,080	27,015	1,065	16,131	63.5	66.7 (43.1)	3.8(9.4)
Ⅳ	44,287	27,912	26,971	942	16,375	63.0	66.8 (42.9)	3.4(8.3)
2017. 1	43,790	26,886	25,878	1,008	16,904	61.4	65.5 (41.4)	3.7(8.6)
2	43,818	27,321	25,979	1,342	16,497	62.4	65.7 (41.2)	4.9(12.3)
3	43,846	27,579	26,443	1,137	16,267	62.9	66.1 (41.4)	4.1(11.3)
4	43,871	27,911	26,744	1,167	15,960	63.6	66.6 (42.1)	4.2(11.2)
5	43,902	27,987	26,992	995	15,916	63.7	67.0 (43.0)	3.6(9.2)
6	43,924	28,081	27,020	1,061	15,844	63.9	67.1 (42.7)	3.8(10.4)
7	43,946	28,037	27,078	958	15,909	63.8	67.2 (43.4)	3.4(9.3)
8	43,967	27,903	26,904	999	16,064	63.5	66.8 (42.7)	3.6(9.4)
9	43,987	27,943	27,011	932	16,044	63.5	66.9 (42.2)	3.3(9.2)
10	44,015	27,920	27,026	894	16,095	63.4	67.0 (41.8)	3.2(8.6)
11	44,040	27,889	27,019	871	16,151	63.3	67.0 (41.5)	3.1(9.2)
12	44,060	27,516	26,604	913	16,543	62.5	66.6 (41.7)	3.3(9.2)
2018. 1	44,073	27,232	26,213	1,020	16,840	61.8	66.2 (42.2)	3.7(8.7)
2	44,093	27,348	26,083	1,265	16,744	62.0	65.8 (42.2)	4.6(9.8)
3	44,100	27,811	26,555	1,257	16,289	63.1	66.1 (42.0)	4.5(11.6)
4	44,122	28,029	26,868	1,161	16,093	63.5	66.6 (42.0)	4.1(10.7)
5	44,141	28,184	27,064	1,121	15,956	63.9	67.0 (42.7)	4.0(10.5)
6	44,161	28,161	27,126	1,034	16,000	63.8	67.0 (42.9)	3.7(9.0)
7	44,187	28,123	27,083	1,039	16,064	63.6	67.0 (43.6)	3.7(9.3)
8	44,211	28,039	26,907	1,133	16,172	63.4	66.5 (42.9)	4.0(10.0)
9	44,237	28,079	27,055	1,024	16,158	63.5	66.8 (42.9)	3.6(8.8)
10	44,262	28,063	27,090	973	16,199	63.4	66.8 (42.9)	3.5(8.4)
11	44,284	28,092	27,184	909	16,192	63.4	67.1 (43.2)	3.2(7.9)
12	44,316	27,582	26,638	944	16,733	62.2	66.5 (42.7)	3.4(8.6)
2019. 1	44,319	27,455	26,232	1,224	16,864	61.9	65.9 (42.9)	4.5(8.9)
2	44,382	27,649	26,346	1,303	16,734	62.3	65.8 (42.9)	4.7(9.5)

* 고용률 : 15-64세(OECD 기준)

(천명)

	산업별 취업자									
	취업자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주」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2016	26,409	4,584	1,869	18,590	1,273	231	△21	15	299	△65
2017	26,725	4,566	1,988	18,798	1,279	316	△18	119	209	6
2018	26,822	4,510	2,034	18,849	1,340	97	△56	47	51	62
2016. Ⅲ	26,719	4,540	1,906	18,783	1,397	255	△92	31	401	△88
Ⅳ	26,618	4,545	1,946	18,772	1,260	256	△119	81	319	△19
2017. Ⅰ	26,100	4,530	1,908	18,562	1,003	353	△120	136	360	△25
Ⅱ	26,919	4,579	2,015	18,826	1,405	367	△21	163	224	1
Ⅲ	26,998	4,570	1,990	18,927	1,418	279	30	84	144	21
Ⅳ	26,883	4,586	2,038	18,877	1,288	265	41	92	103	28
2018. Ⅰ	26,283	4,575	1,977	18,583	1,056	183	45	69	18	53
Ⅱ	27,019	4,487	2,031	18,951	1,457	101	△91	16	125	52
Ⅲ	27,015	4,479	2,035	18,933	1,481	17	△91	45	6	62
Ⅳ	26,971	4,499	2,094	18,933	1,367	88	△88	56	55	78
2017. 1	25,878	4,503	1,889	18,496	892	232	△170	89	313	△9
2	25,979	4,549	1,899	18,478	956	364	△99	150	319	△11
3	26,443	4,539	1,936	18,713	1,161	463	△91	167	447	△56
4	26,744	4,542	1,989	18,784	1,340	420	△60	166	331	△16
5	26,992	4,586	2,031	18,861	1,420	379	△22	169	231	0
6	27,020	4,608	2,024	18,836	1,456	302	20	154	109	18
7	27,078	4,611	2,003	18,962	1,407	314	47	105	139	22
8	26,904	4,544	1,953	18,901	1,415	208	25	37	130	16
9	27,011	4,555	2,015	18,912	1,433	314	17	111	159	26
10	27,026	4,560	2,030	18,912	1,435	281	14	122	130	15
11	27,019	4,581	2,045	18,947	1,354	257	32	72	146	3
12	26,604	4,618	2,039	18,778	1,075	257	77	83	37	65
2018. 1	26,213	4,609	1,988	18,538	986	334	106	99	42	94
2	26,083	4,562	1,964	18,464	997	104	14	64	△13	41
3	26,555	4,554	1,979	18,739	1,186	112	15	44	25	25
4	26,868	4,473	2,023	18,885	1,394	123	△68	34	100	54
5	27,064	4,507	2,035	18,951	1,481	72	△79	4	90	62
6	27,126	4,482	2,034	19,022	1,497	106	△126	10	186	41
7	27,083	4,484	2,040	18,997	1,468	5	△127	37	36	61
8	26,907	4,439	2,006	18,889	1,484	3	△105	53	△12	69
9	27,055	4,513	2,060	18,909	1,490	45	△42	45	△5	57
10	27,090	4,515	2,090	18,915	1,493	64	△45	60	5	57
11	27,184	4,490	2,118	19,059	1,438	165	△91	73	114	84
12	26,638	4,491	2,074	18,824	1,169	34	△127	35	46	94
2019. 1	26,232	4,439	1,969	18,650	1,093	19	△170	△19	113	107
2	26,346	4,411	1,961	18,775	1,114	263	△151	△3	311	117

주」 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13년 이전 산업별 통계 미제공 → 비교곤란(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비경제 활동 인구 (단위 : 천명)	활동상태별			명목임금[1] (전산업)		노동생산성 (제조업) (2015=100)	
	계	임금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계	쉬었음	취업 준비	구직 단념자	증가율 (%, 전체)	증가율 (%, 상용)	생산성 지수[2]	증가율 (%)
2016	231	267	346	10	△88	△36	△9	△27	16,187	1,628	624	448	3.8	4.0	101.5	1.5
2017	316	265	366	△132	31	51	68	△17	16,183	1,736	669	481	3.3	2.6	103.9	2.4
2018	97	150	345	△141	△54	△52	△44	△9	16,287	1,855	693	524	5.3	5.1	-	-
2017. Ⅰ	353	191	317	△152	27	161	168	△7	16,556	1,844	658	517	3.5	2.9	99.9	△1.1
Ⅱ	367	312	347	△126	92	55	59	△5	15,906	1,629	681	453	3.8	3.2	104.1	2.6
Ⅲ	279	291	417	△145	19	△12	23	△35	16,006	1,694	691	482	3.4	2.7	101.8	1.2
Ⅳ	265	265	382	△104	△13	0	20	△20	16,263	1,777	645	471	2.4	1.5	110.0	7.1
2018. Ⅰ	183	228	409	△124	△57	△45	△24	△21	16,624	1,951	673	523	7.9	7.7	103.8	3.9
Ⅱ	101	113	335	△109	△113	△13	△3	△10	16,017	1,756	697	478	4.2	3.8	106.6	2.5
Ⅲ	17	65	293	△162	△67	△48	△55	7	16,131	1,832	693	545	4.9	4.7	105.8	4.0
Ⅳ	88	192	342	△170	19	△104	△93	△12	16,375	1,879	709	550	4.1	3.9	-	-
2017. 1	232	65	246	△184	2	167	166	1	16,904	1,889	688	587	16.0	16.2	-	-
2	364	155	300	△162	17	209	213	△4	16,497	1,905	602	497	△9.1	△10.1	-	-
3	463	355	406	△111	60	108	126	△18	16,267	1,739	684	466	4.2	3.5	-	-
4	420	318	365	△128	81	102	99	3	15,960	1,627	649	417	4.0	3.5	-	-
5	379	349	350	△135	134	30	44	△14	15,916	1,630	725	498	3.7	3.3	-	-
6	302	269	326	△116	60	33	36	△3	15,844	1,631	669	445	3.6	2.9	-	-
7	314	282	399	△162	45	32	41	△10	15,909	1,654	719	483	3.2	2.6	-	-
8	208	263	467	△167	△37	△55	△11	△43	16,064	1,732	686	482	1.6	0.9	-	-
9	314	327	386	△107	49	△13	39	△52	16,044	1,697	669	482	5.3	4.5	-	-
10	281	264	364	△116	16	17	39	△23	16,095	1,699	675	479	2.5	1.6	-	-
11	257	275	376	△95	△6	△18	3	△21	16,151	1,730	632	450	2.9	2.1	-	-
12	257	255	406	△102	△50	2	18	△16	16,543	1,902	627	485	1.8	1.0	-	-
2018. 1	334	322	485	△94	△69	12	10	2	16,840	2,008	651	553	△2.4	△3.1	-	-
2	104	167	433	△182	△85	△63	△42	△21	16,744	2,028	672	542	22.7	23.3	-	-
3	112	196	308	△96	△16	△84	△41	△43	16,289	1,817	696	475	5.6	5.3	-	-
4	123	140	319	△83	△96	△16	2	△18	16,093	1,749	691	458	3.9	3.5	-	-
5	72	82	320	△113	△126	△10	7	△16	15,956	1,760	680	466	5.0	4.7	-	-
6	106	118	365	△130	△117	△12	△15	4	16,000	1,760	722	511	3.7	3.4	-	-
7	5	40	272	△108	△124	△35	△30	△5	16,064	1,886	678	546	5.8	5.6	-	-
8	3	39	278	△187	△52	△36	△53	16	16,172	1,824	670	533	4.9	4.7	-	-
9	45	117	330	△190	△24	△72	△83	11	16,158	1,786	732	556	4.1	4.1	-	-
10	64	199	350	△138	△13	△135	△105	△30	16,199	1,789	724	526	3.3	3.1	-	-
11	165	248	343	△116	21	△83	△78	△5	16,192	1,820	701	535	3.2	3.0	-	-
12	34	128	333	△256	51	△94	△94	0	16,733	2,029	702	588	5.5	5.4	-	-
2019. 1	19	92	279	△212	25	△73	△61	△12	16,864	2,141	751	605	-	-	-	-
2	263	296	299	△43	40	△33	△46	13	16,734	2,166	792	583	-	-	-	-

주1」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사업체노동력조사)
주2」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지수】×100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

(2015 = 100, %, 전년비,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2016	101.0	1.0	101.6	1.6	103.8	3.8	99.5	△0.5	101.9	1.9	101.5	1.5	102.7	2.7
2017	102.9	1.9	103.1	1.5	109.5	5.5	100.9	1.4	103.5	1.6	102.4	1.0	105.3	2.5
2018	104.5	1.5	104.3	1.2	113.6	3.7	102.2	1.3	104.2	0.6	102.7	0.2	108.0	2.5
2016.6	100.8	0.7	101.8	1.8	99.3	△1.4	100.0	△0.6	101.8	1.9	101.4	1.9	102.7	2.8
7	100.6	0.4	101.5	1.3	99.9	△0.3	99.8	△0.8	102.0	1.8	101.6	1.0	103.2	2.8
8	100.9	0.5	101.6	1.3	102.0	0.5	99.7	△0.7	102.1	1.8	101.6	1.0	103.5	2.9
9	101.5	1.3	101.7	1.5	110.6	9.1	99.7	0.0	102.2	1.8	101.5	1.0	103.3	2.9
10	101.6	1.5	102.1	1.8	106.9	7.7	99.9	0.4	102.3	1.7	101.5	0.9	103.3	2.7
11	101.5	1.5	102.0	1.6	104.6	8.0	99.9	0.2	102.5	1.7	101.5	0.9	103.1	2.7
12	101.6	1.3	101.9	1.2	106.5	6.7	100.1	0.6	102.7	1.7	101.6	0.9	103.3	2.7
2017.1	102.6	2.2	102.6	1.6	111.8	10.4	100.7	1.6	102.8	1.7	102.5	1.1	104.4	2.9
2	102.9	2.1	102.8	1.6	112.1	5.7	101.2	2.4	103.0	1.8	102.5	1.1	104.6	2.7
3	102.9	2.3	102.8	1.5	110.5	6.6	101.1	2.3	103.2	1.8	102.4	1.0	104.8	2.7
4	102.7	2.0	102.9	1.4	108.4	4.8	100.6	1.5	103.3	1.8	102.5	1.1	105.3	2.9
5	102.8	2.0	103.1	1.4	108.4	6.4	100.8	1.4	103.5	1.8	102.6	1.1	105.2	2.4
6	102.6	1.8	103.1	1.3	106.5	7.2	100.9	0.9	103.6	1.8	102.4	1.0	104.9	2.2
7	102.8	2.2	103.4	1.8	106.9	7.0	100.5	0.7	103.6	1.7	102.6	1.0	105.7	2.5
8	103.4	2.5	103.4	1.8	112.9	10.7	100.7	1.0	103.7	1.6	102.6	1.0	106.0	2.4
9	103.5	2.0	103.3	1.6	115.1	4.1	100.9	1.2	103.8	1.5	102.5	1.0	105.7	2.3
10	103.4	1.8	103.5	1.3	110.0	2.9	101.3	1.4	103.8	1.4	102.4	0.9	106.1	2.7
11	102.6	1.2	103.1	1.1	104.8	0.2	101.2	1.4	103.9	1.4	102.2	0.7	105.5	2.3
12	103.0	1.4	103.3	1.4	107.3	0.7	101.5	1.3	103.9	1.2	102.3	0.7	105.7	2.3
2018.1	103.4	0.8	103.5	0.9	109.7	△1.8	101.4	0.8	104.0	1.1	103.0	0.5	106.2	1.7
2	104.2	1.3	103.9	1.1	115.3	2.8	101.8	0.6	104.1	1.0	102.9	0.4	107.1	2.3
3	104.1	1.2	104.1	1.3	111.7	1.2	101.9	0.8	104.1	0.9	102.8	0.4	107.5	2.6
4	104.3	1.5	104.4	1.4	112.2	3.5	101.9	1.3	104.1	0.8	102.7	0.3	108.0	2.6
5	104.3	1.5	104.5	1.3	110.2	1.7	102.3	1.5	104.2	0.6	102.8	0.2	108.2	2.8
6	104.1	1.5	104.4	1.2	107.5	0.9	102.6	1.6	104.2	0.6	102.7	0.3	107.8	2.8
7	103.9	1.1	104.2	0.8	108.1	1.2	102.3	1.8	104.2	0.5	102.7	0.1	108.3	2.4
8	104.9	1.4	104.3	0.9	118.1	4.6	102.5	1.8	104.2	0.5	102.6	0.0	108.7	2.5
9	105.7	2.1	104.7	1.3	124.9	8.6	102.7	1.8	104.2	0.4	102.5	0.0	108.5	2.7
10	105.5	2.0	104.7	1.2	119.4	8.5	103.1	1.8	104.2	0.4	102.5	0.1	108.7	2.5
11	104.7	2.0	104.6	1.4	112.7	7.6	102.7	1.4	104.2	0.3	102.4	0.2	108.4	2.8
12	104.4	1.3	104.6	1.3	112.8	5.2	101.6	0.1	104.2	0.3	102.3	0.1	108.4	2.5
2019.1	104.2	0.8	104.8	1.2	112.5	2.5	100.8	△0.7	104.2	0.2	102.7	△0.3	108.8	2.5
2	104.7	0.5	105.2	1.3	113.6	△1.4	101.0	△0.8	104.2	0.1	102.7	△0.3	109.8	2.5

(2015 = 100, %)

	생활물가[1]		생산자물가		수출물가[2]		수입물가[3]		교역조건[4]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2013	99.4	0.7	105.7	△1.6	93.7	△4.3	102.7	△7.3	89.6	2.9
2014	100.2	0.8	105.2	△0.5	88.1	△6.0	94.9	△7.5	89.9	0.4
2015	100.0	△0.2	101.0	△4.0	83.5	△5.2	80.4	△15.3	100.0	11.1
2016	100.7	0.7	99.1	△1.8	80.7	△3.3	77.0	△4.2	102.0	2.1
2017	103.1	2.5	102.5	3.5	85.7	6.1	82.0	6.5	101.2	△0.8
2018	104.8	1.6	104.6	2.0	85.7	0.0	87.1	6.3	94.7	△6.5
2016.7	99.9	△0.3	98.9	△2.5	78.9	△7.4	75.9	△7.1	100.1	0.4
8	100.1	△0.2	99.0	△1.8	77.4	△9.7	74.5	△8.4	101.2	1.3
9	101.2	1.0	99.2	△1.1	78.1	△8.3	74.6	△7.7	101.8	0.2
10	101.6	1.4	99.5	△0.1	80.7	△1.4	77.9	△0.6	103.3	1.7
11	101.5	1.6	100.0	0.7	83.7	3.5	79.8	3.6	101.3	0.5
12	101.3	1.2	100.9	1.8	86.3	6.6	83.1	9.2	103.0	2.3
2017.1	102.8	2.6	102.3	3.9	87.4	7.4	85.0	13.3	100.3	△0.8
2	103.3	2.5	102.7	4.3	86.1	5.1	83.2	9.2	100.6	△2.8
3	103.3	2.9	102.7	4.3	85.0	5.0	81.4	6.8	99.7	△4.4
4	102.9	2.4	102.4	3.8	85.6	8.9	81.7	9.2	101.6	△0.9
5	102.9	2.5	102.2	3.4	84.6	5.1	80.6	4.1	100.6	△1.2
6	102.8	2.3	101.8	2.8	84.4	4.7	79.6	2.0	100.6	△0.2
7	102.8	3.0	101.9	3.0	85.3	8.1	80.0	5.5	102.9	2.8
8	103.6	3.5	102.3	3.3	85.8	10.8	81.3	9.1	103.4	2.1
9	104.0	2.8	103.0	3.8	86.8	11.2	82.7	10.8	102.6	0.8
10	103.6	2.0	103.1	3.6	87.2	8.1	83.2	6.8	101.8	△1.4
11	102.8	1.3	103.0	3.1	85.9	2.5	83.0	4.0	101.5	0.2
12	103.0	1.6	103.1	2.2	84.6	△2.0	82.4	△0.9	99.4	△3.5
2018.1	103.6	0.7	103.6	1.2	84.3	△3.7	82.9	△2.4	99.4	△0.9
2	104.6	1.3	104.0	1.3	85.0	△1.3	83.6	0.4	97.4	△3.2
3	104.4	1.1	104.0	1.3	83.8	△1.4	84.0	3.2	97.2	△2.5
4	104.4	1.5	104.2	1.7	83.9	△2.0	84.8	3.7	96.5	△5.0
5	104.4	1.5	104.4	2.2	84.9	0.4	87.1	8.1	95.6	△5.0
6	104.3	1.5	104.5	2.6	85.6	1.4	88.3	10.9	93.2	△7.4
7	103.9	1.1	104.9	3.0	87.7	2.8	89.6	11.9	93.2	△9.5
8	105.2	1.5	105.5	3.1	87.7	2.2	89.4	10.0	94	△9.1
9	106.6	2.5	105.8	2.7	87.9	1.3	90.7	9.6	94.5	△8.0
10	106.3	2.6	105.4	2.2	88.2	1.1	92.2	10.9	92.7	△8.9
11	105.2	2.3	104.6	1.5	85.8	0.0	88.0	6.1	90.2	△11.2
12	104.3	1.3	104.0	0.9	83.8	△0.9	84.9	3.0	92.5	△7.0
2019.1	104.0	0.4	103.8	0.2	83.0	△1.4	85.0	2.5	93.4	△6.1
2	104.6	0.0	-	-	-	-	-	-	-	-

주 : 1) 2015=100 기준 2), 3) 원화기준, 4) 순상품교역조건

3.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 디플레이터 (%)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기비)	GNI (전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10	12,653,080	10,943	12,665,798	10,954	2,556	22,105	6.5	-	7.0	100.0	3.2
2011	13,326,810	12,027	13,405,298	12,097	2,685	24,226	3.7	-	1.6	101.6	1.6
2012	13,774,567	12,224	13,915,955	12,349	2,772	24,600	2.3	-	2.7	102.6	1.0
2013	14,294,454	13,054	14,396,444	13,147	2,855	26,070	2.9	-	3.7	103.5	0.9
2014	14,860,793	14,110	14,907,639	14,154	2,938	27,892	3.3	-	3.4	104.1	0.6
2015	15,641,239	13,824	15,683,831	13,861	3,074	27,171	2.8	-	6.5	106.6	2.4
2016	16,417,860	14,147	16,462,089	14,185	3,212	27,681	2.9	-	4.2	108.7	2.0
2017p	17,303,985	15,302	17,304,614	15,302	3,364	29,745	3.1	-	3.1	111.2	2.3
2018p	17,822,689	16,198	17,810,910	16,187	3,449	31,349	2.7	-	1.0	111.6	0.3
2014. I	3,535,371	-	3,528,059	-	-	-	3.9	1.0	3.9	104.9	1.3
II	3,700,168	-	3,706,301	-	-	-	3.5	0.6	3.3	103.5	0.3
III	3,764,899	-	3,780,049	-	-	-	3.3	0.7	2.7	105.2	0.1
IV	3,860,356	-	3,893,230	-	-	-	2.7	0.5	3.6	103.0	0.7
2015. I	3,698,531	-	3,743,337	-	-	-	2.6	0.8	7.8	107.0	2.0
II	3,890,957	-	3,864,724	-	-	-	2.4	0.4	5.6	106.3	2.7
III	3,984,645	-	4,003,858	-	-	-	3.0	1.2	7.3	108.1	2.8
IV	4,067,107	-	4,071,912	-	-	-	3.2	0.8	5.5	105.2	2.1
2016. I	3,889,031	-	3,905,411	-	-	-	3.0	0.6	4.9	109.2	2.1
II	4,106,196	-	4,099,379	-	-	-	3.5	0.8	5.3	108.4	1.9
III	4,155,775	-	4,180,892	-	-	-	2.7	0.4	3.4	109.8	1.6
IV	4,266,859	-	4,276,407	-	-	-	2.6	0.7	3.4	107.6	2.3
2017p. I	4,063,090	-	4,078,760	-	-	-	2.9	1.0	2.3	110.9	1.6
II	4,310,269	-	4,254,701	-	-	-	2.8	0.6	1.8	110.6	2.1
III	4,468,351	-	4,490,061	-	-	-	3.8	1.4	5.0	113.8	3.6
IV	4,462,276	-	4,481,092	-	-	-	2.8	△0.2	3.0	109.5	1.7
2018p. I	4,206,748	-	4,210,883	-	-	-	2.8	1.0	2.0	111.8	0.7
II	4,460,444	-	4,405,677	-	-	-	2.8	0.6	1.5	111.4	0.6
III	4,561,219	-	4,582,498	-	-	-	2.0	0.6	△0.2	113.9	0.1
IV	4,594,278	-	4,611,853	-	-	-	3.1	1.0	0.9	109.3	△0.1

(2010년=100, %)

	경제활동별 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가율					국내총투자율	총저축률(명목)
	산 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최종소비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설비투자	건설투자		
2010	6.5	13.5	13.7	4.4	△4.3	4.3	4.4	5.5	22.0	△3.7	32.1	35.0
2011	3.7	6.5	6.5	3.1	△2.0	2.7	2.9	0.8	4.7	△3.4	32.9	34.6
2012	2.3	2.4	2.4	2.8	△0.9	2.2	1.9	△0.5	0.1	△3.9	30.8	34.2
2013	2.9	3.6	3.6	2.9	3.1	2.2	1.9	3.3	△0.8	5.5	29.0	34.3
2014	3.3	3.5	3.5	3.3	3.6	2.0	1.7	3.4	6.0	1.1	29.3	34.5
2015	2.8	1.7	1.8	2.8	△0.4	2.4	2.2	5.1	4.7	6.6	28.9	35.6
2016	2.8	2.4	2.4	2.5	△2.8	3.0	2.5	5.6	△1.0	10.3	29.3	36.1
2017p	3.1	4.3	4.4	2.1	0.3	2.8	2.6	8.6	14.6	7.6	31.2	36.3
2018p	2.7	3.5	3.6	2.8	1.5	3.5	2.8	△2.2	△1.6	△4.0	30.4	34.8
2014. Ⅰ	3.8	4.3	4.7	3.5	5.7	2.9	2.8	6.1	7.5	4.5	29.2	34.1
Ⅱ	3.5	△1.3	4.7	2.9	4.3	1.8	1.7	3.6	8.1	0.3	29.0	34.5
Ⅲ	3.4	1.5	3.1	3.4	2.7	2.0	1.4	3.6	4.3	2.3	30.1	34.4
Ⅳ	2.7	△4.2	1.8	3.3	2.7	1.6	1.0	0.7	4.1	△1.7	28.9	35.0
2015. Ⅰ	2.6	△9.3	1.1	3.0	8.5	1.8	1.4	3.8	5.1	4.0	28.5	36.4
Ⅱ	2.4	0.4	0.9	2.8	△3.0	2.0	1.7	3.8	4.1	4.6	28.6	35.2
Ⅲ	3.0	2.7	2.2	2.7	0.3	2.3	2.2	6.0	6.1	7.6	29.4	36.0
Ⅳ	3.2	△0.5	2.7	2.7	△4.0	3.5	3.5	6.5	3.5	9.6	29.3	34.9
2016. Ⅰ	3.0	2.1	2.1	2.6	△2.4	3.0	2.4	3.2	△3.6	8.4	28.0	36.5
Ⅱ	3.5	2.6	2.7	3.0	1.1	3.8	3.6	5.2	△1.6	9.4	29.2	36.2
Ⅲ	2.7	1.7	1.7	2.5	△4.5	3.3	2.8	5.8	△2.5	11.0	29.9	35.6
Ⅳ	2.6	2.9	2.9	1.9	△4.6	1.9	1.4	7.8	3.3	11.9	30.0	36.0
2017p. Ⅰ	2.9	4.8	4.8	1.7	△1.9	2.2	2.1	11.0	16.1	11.3	30.4	36.8
Ⅱ	2.8	3.6	3.6	1.8	0.5	2.5	2.4	10.0	17.9	8.5	31.7	35.7
Ⅲ	3.8	6.3	6.4	2.5	0.4	3.0	2.6	9.2	16.3	8.0	31.0	37.0
Ⅳ	2.8	2.7	2.7	2.4	1.5	3.5	3.4	5.0	8.6	3.8	31.8	35.7
2018p. Ⅰ	2.8	2.6	2.7	3.2	4.1	4.0	3.5	3.7	7.3	1.8	31.4	34.9
Ⅱ	2.8	3.1	3.2	3.0	1.2	3.3	2.8	△1.3	△3.0	△1.5	31.0	34.6
Ⅲ	2.0	2.7	2.8	2.4	△2.4	3.0	2.5	△6.6	△7.4	△8.9	29.3	35.4
Ⅳ	3.1	5.5	5.5	2.7	3.2	3.6	2.5	△3.8	△2.7	△5.9	30.2	34.2

4. 실물경제

가. 생산과 출하

(원지수 2015 = 100, 전년동월(분기)비)

시점	생산지수 (광공업)		서비스업		출하지수 (광공업)		재고지수 (제조업)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2016	102.2	2.2	102.6	2.6	101.5	1.5	97.5	△2.2
2017	104.7	2.4	104.5	1.9	102.7	1.2	105.3	8.0
2018p	106.1	1.3	106.7	2.1	102.7	0.0	113.9	8.2
2016. Ⅰ	98.3	1.1	98.7	2.4	98.7	0.8	105.7	9.0
Ⅱ	102.3	2.2	102.8	3.3	102.0	1.6	101.8	1.4
Ⅲ	99.7	1.3	102.4	3.0	98.2	0.3	100.9	△0.9
Ⅳ	108.3	3.8	106.6	1.8	107.1	3.2	97.5	△2.2
2017. Ⅰ	103.4	5.2	100.9	2.2	101.6	2.9	99.9	△5.5
Ⅱ	104.8	2.4	104.6	1.8	103.2	1.2	101.1	△0.7
Ⅲ	105.1	5.4	105.1	2.6	102.9	4.8	101.3	0.4
Ⅳ	105.4	△2.7	107.4	0.8	103.1	△3.7	105.3	8.0
2018. Ⅰ	102.3	△1.1	103.4	2.5	99.5	△2.1	108.4	8.5
Ⅱ	106.9	2.0	106.9	2.2	103.5	0.3	109.1	7.9
Ⅲ	105.2	0.1	105.9	0.8	101.4	△1.5	107.6	6.2
Ⅳp	109.9	4.3	110.4	2.8	106.3	3.1	113.9	8.2
2017.4	104.1	4.4	103.1	1.7	102.6	2.2	101.8	△2.3
5	104.8	2.1	104.6	1.9	102.3	0.2	104.8	0.4
6	105.5	0.8	106.0	1.5	104.6	1.2	101.1	△0.7
7	104.8	2.4	103.6	1.5	101.7	1.1	104.0	0.0
8	101.2	3.3	104.0	1.6	98.9	2.7	104.3	1.5
9	109.4	10.8	107.7	5.0	108.0	10.4	101.3	0.4
10	99.7	△4.6	102.2	△1.3	96.8	△5.9	104.8	4.1
11	109.3	0.4	106.2	2.8	108.0	0.8	105.2	4.1
12	107.3	△3.8	113.8	0.8	104.6	△6.0	105.3	8.0
2018.1	105.7	5.1	103.0	3.5	102.1	4.4	107.8	7.2
2	93.1	△5.7	99.6	2.2	90.9	△6.5	107.9	7.6
3	108.1	△2.5	107.7	2.0	105.5	△4.0	108.4	8.5
4	106.2	2.0	105.9	2.7	101.7	△0.9	109.5	7.6
5	107.1	2.2	106.9	2.2	104.6	2.2	108.7	3.7
6	107.5	1.9	108.0	1.9	104.2	△0.4	109.1	7.9
7	108.2	3.2	106.3	2.6	102.3	0.6	110.8	6.5
8	105.2	4.0	105.6	1.5	101.6	2.7	111.1	6.5
9	102.1	△6.7	105.8	△1.8	100.4	△7.0	107.6	6.2
10	112.3	12.6	108.1	5.8	108.9	12.5	110.3	5.2
11	109.4	0.1	107.5	1.2	105.9	△1.9	113.5	7.9
12p	108.1	0.7	115.5	1.5	104.0	△0.6	113.9	8.2
2019.1p	105.8	0.1	105.1	2.0	101.6	△0.5	115.1	6.8

주 : 연쇄방식 도입에 따라 광공업 관련통계(광공업생산지수 등)의 가중치 기준년도 변경(2016 → 2017년)

나. 투 자

(원지수 2010 = 100, 전년동월(분기)비)

	국내건설기성(경상)			국내건설수주(경상)			건축허가면적	국내기계수주		설비투자지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제조업	
2016	16.9	△0.4	24.2	8.1	18.5	4.4	△5.7	4.7	3.3	△1.3
2017	15.9	△1.9	25.5	△1.7	△1.1	△3.1	△4.0	19.7	31.8	14.1
2018p	△1.5	△6.4	0.2	△3.0	△11.8	△2.2	△6.3	1.8	3.3	△3.7
2017. Ⅲ	18.0	△2.8	28.0	△8.2	△12.1	△1.5	△0.3	32.0	43.4	20.6
Ⅳ	5.2	△7.7	12.1	△10.8	△7.1	△10.4	△2.4	4.6	27.6	2.0
2018. Ⅰ	4.8	△6.3	9.3	14.4	△35.9	36.4	3.7	7.6	20.9	10.2
Ⅱ	0.5	△6.6	3.3	△12.4	△17.0	△11.7	△7.2	1.0	△0.2	△4.8
Ⅲ	△5.7	△7.4	△5.6	△10.0	△11.2	△14.2	△10.2	△1.0	6.0	△13.5
Ⅳp	△4.5	△5.6	△4.4	△0.4	6.2	△4.2	△10.4	△0.3	△10.7	△5.9
2017.7	17.5	△1.4	26.1	△28.2	△31.7	△20.2	△20.6	38.9	42.2	24.9
8	13.0	△11.7	23.7	△3.5	△10.6	3.9	△10.0	40.7	55.5	12.5
9	23.3	4.4	34.1	7.4	11.8	10.5	41.5	18.2	34.3	25.0
10	4.1	△7.5	10.3	△34.1	△72.1	△23.3	△7.2	28.9	31.9	△3.9
11	6.1	△11.5	14.4	△8.8	△17.6	△5.5	△4.5	25.2	45.4	6.7
12	5.3	△5.0	11.7	5.6	28.9	△2.3	4.2	△22.9	8.9	2.5
2018. 1	18.6	△2.1	26.9	48.4	△40.9	9.3	3.5	27.9	34.3	22.2
2	1.2	△10.5	5.8	△26.0	△31.7	17.7	2.2	△5.1	12.6	10.6
3	△2.7	△6.2	△1.1	41.5	△36.8	86.3	5.3	3.7	17.9	0.7
4	3.1	△1.6	5.0	△37.7	△31.9	△37.9	5.7	8.2	7.3	3.1
5	1.0	△6.5	3.7	19.5	89.3	8.3	△13.5	7.8	13.9	△2.9
6	△2.0	△10.0	1.4	△12.1	△48.7	1.8	△12.1	△10.8	△16.7	△13.7
7	△1.7	△4.0	△2.1	22.7	△9.7	30.7	24.8	△5.6	10.2	△9.8
8	△1.4	△5.6	△1.0	△28.4	△27.4	△40.4	△16.4	5.0	3.3	△11.2
9	△13.2	△11.8	△12.9	△13.6	10.2	△19.1	△33.2	△1.4	4.3	△19.3
10	0.9	△5.8	1.9	3.0	138.5	△11.4	△11.1	8.2	5.7	10.2
11	△7.1	△9.0	△6.7	△0.6	23.4	△7.8	△5.3	△19.3	△24.4	△9.4
12p	△6.3	△3.2	△7.5	△2.0	△12.4	3.7	△14.5	13.3	△8.5	△14.9
2019. 1p	△9.3	△11.3	△9.1	△41.3	37.6	△26.6	△18.4	△9.3	△1.8	△16.6

다. 소 비

(원지수 2015 = 100, 전년동월(분기)비)

	소매판매액				내 수 용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출하	내 구 재	비내구재
2016	3.9	4.6	2.3	4.2	1.5	△4.6	5.2
2017	1.9	5.3	△1.1	1.8	△0.6	△2.3	0.4
2018p	4.2	5.6	5.9	2.9	1.3	4.2	△0.1
2016. Ⅰ	4.7	6.7	2.0	5.0	5.1	2.4	6.6
Ⅱ	5.6	11.5	4.2	3.3	4.0	1.9	5.4
Ⅲ	3.1	0.8	3.3	4.2	△0.6	△9.4	4.6
Ⅳ	2.2	0.3	0.1	4.4	△2.0	△12.2	4.5
2017. Ⅰ	1.4	3.4	△1.8	1.9	△1.8	△8.9	2.1
Ⅱ	0.9	3.7	△2.3	1.1	△1.8	△5.4	0.4
Ⅲ	3.4	12.0	△0.8	1.4	4.0	5.0	3.4
Ⅳ	2.2	2.4	0.6	2.8	△2.6	0.7	△4.3
2018. Ⅰ	5.3	9.4	4.6	3.8	0.8	5.9	△1.6
Ⅱ	5.0	6.2	5.7	4.0	0.8	3.0	△0.1
Ⅲ	3.8	2.3	8.1	2.9	△2.0	0.2	△3.1
Ⅳp	2.9	4.7	5.2	1.1	5.5	7.8	4.4
2017. 5	0.3	5.3	△5.1	0.4	△1.0	△2.5	△0.2
6	0.8	0.9	△2.2	2.0	△2.1	△6.4	0.9
7	2.7	11.0	△2.7	1.0	0.8	4.1	△1.0
8	0.5	6.1	△2.0	△1.1	△0.5	2.3	△2.0
9	7.1	19.5	2.2	4.2	11.6	8.4	13.0
10	△0.4	△3.1	△3.8	2.6	△5.1	2.5	△8.8
11	5.4	11.0	3.9	3.4	1.3	3.7	△0.1
12	1.5	△0.7	1.7	2.5	△3.9	△3.9	△4.0
2018.1	1.9	17.0	△2.1	△2.4	4.8	8.2	3.1
2	6.8	1.9	3.6	10.3	△0.4	7.8	△4.3
3	7.4	9.8	12.1	4.3	△1.7	2.9	△3.9
4	5.8	10.7	2.1	4.9	0.7	4.8	△1.1
5	4.8	6.0	6.7	3.5	3.6	6.0	2.7
6	4.3	2.2	8.8	3.6	△1.7	△1.2	△1.8
7	5.6	6.4	7.6	4.5	2.1	3.3	1.6
8	5.6	10.0	6.5	3.3	4.3	11.4	0.9
9	0.4	△9.2	9.8	1.2	△11.1	△12.5	△10.5
10	5.1	11.8	8.7	0.5	14.1	20.4	11.1
11	1.0	0.0	1.4	1.3	0.4	0.4	0.6
12p	3.0	3.5	5.8	1.5	2.8	4.2	2.2
2019. 1p	4.0	△3.1	6.4	6.5	5.8	7.0	5.4

5. 대외거래

가. 국제수지(총괄)

(백만달러)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수출	수입			
2016	97,923.7	116,461.7	511,926.1	395,464.4	△17,338.6	4,567.1	△5,766.7
2017	75,230.9	113,592.9	580,310.2	466,717.3	△36,734.1	5,336.9	△6,964.8
2018	76,408.5	111,866.6	625,437.4	513,570.8	△29,737.1	2,777.7	△8,498.7
2016. Ⅲ	21,759.4	27,172.4	128,305.0	101,132.6	△5,417.2	2,399.6	△2,395.4
Ⅳ	22,711.6	27,030.6	136,852.4	109,821.8	△4,130.0	998.5	△1,187.5
2017. Ⅰ	15,980.6	24,699.4	139,598.3	114,898.9	△9,393.4	1,559.5	△884.9
Ⅱ	14,455.0	27,303.8	142,985.7	115,681.9	△8,111.1	△3,106.4	△1,631.3
Ⅲ	25,944.5	33,090.7	149,655.5	116,564.8	△8,616.1	3,940.3	△2,470.4
Ⅳ	18,850.8	28,499.0	148,070.7	119,571.7	△10,613.5	2,943.5	△1,978.2
2018. Ⅰ	11,653.2	22,531.9	150,104.6	127,572.7	△9,313.8	1,312.2	△2,877.1
Ⅱ	17,248.1	29,946.9	157,666.0	127,719.1	△6,485.9	△4,221.2	△1,991.7
Ⅲ	28,115.5	34,718.1	158,973.9	124,255.8	△7,610.5	2,825.3	△1,817.4
Ⅳ	19,391.7	24,669.7	158,692.9	134,023.2	△6,326.9	2,861.4	△1,812.5
2017.6	7,008.9	8,702.4	48,101.8	39,399.4	△2,809.6	1,527.1	△411.0
7	7,467.4	9,920.7	47,108.0	37,187.3	△3,304.6	1,534.5	△683.2
8	6,139.4	8,647.3	47,834.3	39,187.0	△2,309.0	592.1	△791.0
9	12,337.7	14,522.7	54,713.2	40,190.5	△3,002.5	1,813.7	△996.2
10	6,890.0	9,417.9	46,115.1	36,697.2	△3,602.5	1,547.2	△472.6
11	7,474.3	11,165.6	51,690.0	40,524.4	△3,303.6	272.6	△660.3
12	4,486.5	7,915.5	50,265.6	42,350.1	△3,707.4	1,123.7	△845.3
2018.1	2,644.6	7,549.7	52,224.4	44,674.7	△4,441.5	1,157.9	△1,621.5
2	3,904.7	5,571.0	44,990.5	39,419.5	△2,612.6	1,444.5	△498.2
3	5,103.9	9,411.2	52,889.7	43,478.5	△2,259.7	△1,290.2	△757.4
4	1,355.7	9,620.4	51,506.8	41,886.4	△1,977.6	△5,622.8	△664.3
5	8,434.5	10,785.4	53,846.7	43,061.3	△2,085.1	478.7	△744.5
6	7,457.9	9,541.1	52,312.5	42,771.4	△2,423.2	922.9	△582.9
7	8,552.3	10,788.5	54,184.3	43,395.8	△3,092.5	1,535.4	△679.1
8	8,550.2	10,922.3	53,472.4	42,550.1	△2,043.8	318.5	△646.8
9	11,013.0	13,007.3	51,317.2	38,309.9	△2,474.2	971.4	△491.5
10	9,348.8	10,654.5	57,403.2	46,748.7	△2,180.2	1,327.6	△453.1
11	5,223.6	7,485.8	51,716.0	44,230.2	△2,198.0	490.7	△554.9
12	4,819.3	6,529.4	49,573.7	43,044.3	△1,948.7	1,043.1	△804.5
2019.1	2,772.3	5,609.5	49,384.1	43,774.6	△3,608.4	1,402.1	△630.9

(백만달러)

	금융계정						자본수지	오차 및 누락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2016	99,811.3	17,785.2	66,970.2	△3,440.1	10,880.8	7,615.2	△46.2	1,933.8
2017	84,425.3	16,156.5	57,853.0	△8,253.3	14,312.0	4,357.1	△26.8	9,221.2
2018	70,489.3	24,437.9	43,884.0	△1,311.1	△14,013.4	17,491.9	188.9	△6,108.1
2016. Ⅰ	28,236.5	5,691.9	16,794.1	2,724.0	4,360.2	△1,333.7	△8.1	1,876.9
Ⅱ	22,642.8	4,489.3	13,981.8	△1,185.3	4,437.6	919.4	△7.0	△4,435.2
Ⅲ	24,612.6	1,828.4	15,865.5	△3,799.5	3,759.0	6,959.2	13.9	2,839.3
Ⅳ	24,319.4	5,775.6	20,328.8	△1,179.3	△1,676.0	1,070.3	△45.0	1,652.8
2017. Ⅰ	19,114.9	7,140.3	8,131.0	△2,951.0	6,061.1	733.5	39.2	3,095.1
Ⅱ	12,386.9	4,050.0	11,965.1	△2,066.8	△1,775.6	214.2	△60.4	△2,007.7
Ⅲ	29,836.8	4,851.8	23,755.5	△350.9	1,731.7	△151.3	△5.9	3,898.2
Ⅳ	23,086.7	114.4	14,001.4	△2,884.6	8,294.8	3,560.7	0.3	4,235.6
2018. Ⅰ	12,384.7	2,244.4	12,833.6	△3,704.4	△1,776.7	2,787.8	△21.3	752.8
Ⅱ	11,706.6	8,283.1	4,505.1	△1,047.1	△9,837.0	9,802.5	△70.7	△5,470.8
Ⅲ	26,806.9	8,890.6	7,784.3	2,220.1	5,765.6	2,146.3	61.5	△1,370.1
Ⅳ	19,591.1	5,019.8	18,761.0	1,220.3	△8,165.3	2,755.3	219.4	△20.0
2017.6	8,405.4	1,404.3	2,993.8	△741.1	4,441.8	306.6	△32.1	1,428.6
7	8,911.6	637.2	2,727.2	△79.2	5,497.6	128.8	17.1	1,427.1
8	9,399.0	1,953.7	11,338.8	△161.3	△4,079.2	347.0	△21.8	3,281.4
9	11,526.2	2,260.9	9,689.5	△110.4	313.3	△627.1	△1.2	△810.3
10	7,192.7	198.6	313.3	△555.6	5,809.4	1,427.0	△7.4	310.1
11	9,369.1	△1.4	1,616.1	△877.1	7,262.0	1,369.5	38.8	1,856.0
12	6,524.9	△82.8	12,072.0	△1,451.9	△4,776.6	764.2	△31.1	2,069.5
2018.1	3,560.9	240.3	3,337.9	△1,311.7	△145.9	1,440.3	△6.5	922.8
2	4,418.6	419.8	9,391.1	△895.8	△4,656.2	159.7	△13.4	527.3
3	4,405.2	1,584.3	104.6	△1,496.9	3,025.4	1,187.8	△1.4	△697.3
4	5.7	1,951.5	4,061.5	△750.6	△8,375.7	3,119.0	△64.9	△1,285.1
5	6,905.9	6,079.9	533.0	△380.3	△3,034.6	3,707.9	2.6	△1,531.2
6	4,795.0	251.7	△89.4	83.8	1,573.3	2,975.6	△8.4	△2,654.5
7	9,998.2	2,268.1	△3,427.9	1,091.4	8,581.5	1,485.1	△6.7	1,452.6
8	7,030.0	4,372.2	1,692.4	761.9	1,439.1	△1,235.6	△5.1	△1,515.1
9	9,778.7	2,250.3	9,519.8	366.8	△4,255.0	1,896.8	73.3	△1,307.6
10	10,280.7	3,414.6	6,626.2	767.2	△2,684.9	2,157.6	82.8	849.1
11	3,871.3	200.9	5,023.5	308.5	△1,619.6	△42.0	△9.5	△1,342.8
12	5,439.1	1,404.3	7,111.3	144.6	△3,860.8	639.7	146.1	473.7
2019.1	3,003.2	1,669.9	4,816.1	△159.7	△3,487.8	164.7	△29.4	260.3

나. 수출입(통관)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

	수 출(FOB)		수 입(CIF)		수출입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2016	495,426	△5.9	406,193	△6.9	89,233
2017	573,694	15.8	478,478	17.8	95,216
2018	604,860	5.4	535,202	11.9	69,658
2016. Ⅲ	121,853	△5.0	102,464	△5.1	19,389
Ⅳ	132,361	1.8	110,595	4.1	21,766
2017. Ⅰ	132,061	14.6	116,428	24.1	15,633
Ⅱ	147,043	16.7	117,798	18.6	29,245
Ⅲ	151,051	24.0	120,853	17.9	30,198
Ⅳ	143,539	8.4	123,399	11.6	20,140
2018. Ⅰ	145,055	9.8	132,425	13.7	12,630
Ⅱ	151,617	3.1	133,153	13.0	18,464
Ⅲ	153,641	1.7	130,311	7.8	23,330
Ⅳ	154,547	7.7	139,314	12.9	15,233
2017. 5	44,927	13.1	39,288	19.0	5,639
6	51,272	13.4	40,551	19.7	10,721
7	48,830	19.4	38,607	15.7	10,223
8	47,106	17.4	40,550	15.5	6,556
9	55,115	34.9	41,696	22.7	13,419
10	44,791	6.7	37,857	8.0	6,934
11	49,707	9.7	42,014	12.8	7,693
12	49,040	8.8	43,529	13.6	5,511
2018. 1	49,221	22.3	45,805	21.7	3,416
2	44,524	3.1	41,722	15.2	2,802
3	51,310	5.5	44,898	5.4	6,412
4	49,850	△2.0	43,694	15.1	6,156
5	50,688	12.8	44,459	13.2	6,229
6	51,079	△0.4	45,000	11.0	6,079
7	51,810	6.1	44,917	16.3	6,893
8	51,180	8.7	44,361	9.4	6,819
9	50,650	△8.1	41,033	△1.6	9,617
10	54,860	22.5	48,481	28.1	6,379
11	51,480	3.6	46,808	11.4	4,672
12	48,207	△1.7	44,025	1.1	4,182
2019p. 1	46,325	△5.9	45,031	△1.7	1,294
2	39,564	△11.1	36,466	△12.6	3,098

다. 지역별 수출입차

(통관기준, 억달러, %)

	대 미					대 일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16	664.6	△4.8	432.2	△1.8	232.5	243.6	△4.8	474.7	3.5	△231.1
2017	686.1	3.2	507.5	17.4	178.6	268.2	10.1	551.3	16.1	△283.1
2018	727.2	6.0	588.7	16.0	138.5	305.3	13.8	546.0	△1.0	△240.7
2016.5	56.7	0.8	38.9	10.2	17.8	20.4	△12.5	36.4	3.8	△16.0
6	60.5	△6.9	38.3	0.3	22.2	21.5	△3.6	38.9	△3.0	△17.4
7	52.9	△14.5	34.5	△15.7	18.4	20.7	△2.8	39.8	0.8	△19.1
8	48.2	△4.8	36.4	△4.8	11.8	20.1	7.5	41.6	20.4	△21.5
9	51.3	△6.1	34.2	4.2	17.2	21.7	6.4	42.3	14.2	△20.7
10	54.0	△10.1	35.6	△11.0	18.5	21.0	△1.6	42.2	9.6	△21.2
11	57.2	3.7	37.5	11.8	19.7	22.8	12.5	42.9	28.5	△20.2
12	57.4	△2.4	41.9	16.6	15.5	22.2	7.9	45.3	22.1	△23.1
2017. 1	49.4	△2.0	39.7	19.3	9.7	21.3	18.9	37.6	21.7	△16.3
.2	53.1	1.7	37.5	22.8	15.6	20.5	20.6	44.7	31.1	△24.2
3	62.0	△5.3	44.1	16.3	17.9	24.0	16.8	51.6	22.7	△27.6
4	60.4	3.6	43.9	32.8	16.5	21.1	18.7	45.7	19.4	△24.6
5	55.2	△2.6	47.0	21.0	8.2	21.8	6.9	43.8	20.5	△22.0
6	59.8	△1.2	48.1	25.4	11.8	23.5	9.3	47.7	22.7	△24.2
7	56.6	7.0	40.8	18.2	15.8	21.6	4.6	44.6	12.1	△23.0
8	59.5	23.5	45.4	24.8	14.1	21.1	4.8	45.4	8.9	△24.3
9	66.0	28.6	40.8	19.4	25.2	25.2	16.1	49.3	16.3	△24.1
10	47.3	△12.5	34.5	△3.1	12.8	18.5	△12.1	44.2	4.7	△25.7
11	63.8	11.5	42.0	11.8	21.9	25.2	10.8	47.3	10.3	△22.1
12	53.0	△7.8	43.7	4.3	9.3	24.5	10.2	49.5	9.2	△25.0
2018. 1	51.6	4.4	49.3	24.2	2.3	25.8	21.3	44.8	19.3	△19.0
2	46.8	△11.9	45.2	20.5	1.6	24.5	19.6	45.1	1.0	△20.7
3	60.8	△2.0	52.1	18.0	8.7	26.0	8.7	52.3	1.3	△26.2
4	59.4	△1.5	47.6	8.4	11.9	24.8	17.8	49.4	8.2	△24.6
5	61.5	11.4	48.2	2.5	13.3	25.1	15.2	44.2	1.0	△19.1
6	64.2	7.4	47.9	△0.4	16.3	25.8	9.7	44.5	△6.8	△18.7
7	61.6	8.7	49.1	20.2	12.5	25.4	17.6	45.8	2.8	△20.4
8	60.5	1.6	48.4	6.4	12.1	24.1	14.4	42.3	△6.7	△18.2
9	58.2	△11.8	43.5	6.6	14.7	24.6	△1.9	41.8	△15.1	△17.1
10	69.8	47.7	55.9	62.0	13.9	27.8	50.1	49.7	12.6	△22.0
11	68.5	7.3	48.8	16.3	19.7	27.2	7.9	43.2	△8.6	△16.0
12	64.5	21.8	52.9	21.1	11.6	24.5	0.1	42.7	△13.6	△18.2
2019. 1	62.1	20.3	52.8	7.1	9.3	26.1	1.0	40.5	△9.8	△14.4
2p	54.3	16.0	43.5	△3.9	10.8	22.8	△6.7	37.9	△16.0	△15.1

(통관기준, 억달러, %)

	대 중					대 EU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수 출		수 입		수 출 입 차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16	1,244.3	△9.3	869.8	△3.6	374.5	466.1	△3.1	519.0	△9.3	△52.9
2017	1,421.2	14.2	978.6	12.5	442.6	540.4	15.9	572.8	10.4	△32.4
2018	1621.3	14.1	1064.9	8.8	556.4	576.8	6.7	623.0	8.8	△46.2
2016.5	99.3	△9.1	70.6	0.9	28.7	39.6	△12.8	43.9	△8.6	△4.4
6	101.8	△10.3	72.2	△2.5	29.7	36.5	△16.2	44.7	△16.9	△8.2
7	101.3	△9.4	70.1	△8.1	31.3	39.1	△4.9	40.5	△17.9	△1.4
8	103.0	△5.3	73.8	3.0	29.3	32.5	△4.7	46.8	△0.3	△14.3
9	109.5	△9.1	72.3	△4.6	37.2	37.9	△14.5	38.0	△12.5	△0.1
10	110.9	△11.2	77.1	△8.1	33.8	38.9	3.8	42.6	4.2	△3.7
11	116.3	0.2	81.1	3.2	35.3	39.7	△23.0	44.7	△7.9	△5.0
12	120.5	9.7	79.5	9.8	41.0	49.2	30.8	47.7	△8.6	1.5
2017. 1	107.6	13.4	79.6	15.5	27.9	40.7	13.2	42.2	△7.7	△1.4
2	111.2	28.7	66.0	9.5	45.2	39.3	27.4	41.8	10.3	△2.4
3	116.6	11.9	88.3	20.9	28.3	42.7	△8.8	50.7	26.2	△8.0
4	105.9	10.2	79.1	11.4	26.8	64.2	64.8	42.1	△9.3	22.1
5	106.5	7.3	80.9	14.6	25.6	48.2	21.9	46.1	5.0	2.1
6	106.8	4.8	83.5	15.7	23.2	44.0	20.3	53.0	18.6	△9.0
7	107.9	6.5	77.7	10.9	30.2	43.1	10.3	47.9	18.2	△4.8
8	119.1	15.6	81.2	10.0	38.0	46.6	43.2	47.5	1.4	△0.9
9	135.4	23.6	84.4	16.7	51.0	46.2	21.9	52.3	37.5	△6.1
10	125.8	13.5	79.3	2.9	46.5	39.9	2.5	43.9	3.2	△4.0
11	140.0	20.4	92.5	14.2	47.5	40.8	2.7	51.1	14.4	△10.4
12	138.5	14.9	86.0	8.2	52.5	44.7	△9.2	54.3	13.7	△9.6
2018. 1	133.8	24.4	91.5	15.0	42.3	45.0	10.4	57.2	35.7	△12.2
2	115.2	3.6	76.0	15.1	39.2	44.1	12.0	50.0	19.8	△6.0
3	135.8	16.5	84.1	△4.7	51.6	52.0	21.8	57.5	13.6	△5.5
4	130.4	23.1	87.2	10.2	43.2	50.2	△21.8	50.6	20.2	△0.3
5	138.5	30.0	92.8	14.6	45.8	50.1	3.8	57.2	24.0	△7.1
6	138.2	29.4	87.1	4.3	51.0	44.6	1.4	51.0	△3.7	△6.5
7	137.3	27.2	88.7	14.2	48.6	46.1	6.9	49.9	4.2	△3.8
8	144.0	20.9	85.3	5.0	58.8	44.7	△4.0	52.1	9.6	△7.4
9	145.9	7.8	78.9	△6.6	67.0	40.0	△13.3	43.1	△17.7	△3.0
10	147.7	17.4	99.6	25.6	48.1	54.8	37.3	50.0	13.8	4.8
11	135.6	△3.2	98.5	6.5	37.1	50.5	23.8	53.4	4.4	△2.9
12	119.1	△14.0	95.1	10.5	24.1	54.8	22.5	50.8	△6.4	3.9
2019. 1	108.2	△19.2	103.3	12.8	4.9	50.4	12.0	48.5	△15.2	1.9
2p	95.2	△17.4	65.8	△13.4	29.4	40.3	△8.5	37.5	△25.1	2.8

라. 외채·외환보유액·외국인투자·원유도입(억달러)

	총외채[1]	단기외채[2]	대외채권	외환 보유액[3]	순채권	외국인투자[4] (백만달러)	원유도입[5] 도입량 (백만BBL)	원유도입[5] 도입단가 (달러/BBL)
2016	3,822	1,048	7,814	3,711.0	3,992	21,296	1,078.1	41.1
2017	4,120	1,160	8,774	3,892.7	4,654	22,948	1,118.2	53.3
2018	4,406	1,266	9,081	4,036.9	4,675	26,901	1,116.3	72.0
2016. 7	-	-	-	3,713.8	-	-	90.1	45.9
8	-	-	-	3,754.6	-	-	86.1	44.0
9	4,006	1,094	7,893	3,777.7	3,887	4,495	94.2	42.9
10	-	-	-	3,751.7	-	-	84.6	46.4
11	-	-	-	3,719.9	-	-	91.6	48.2
12	3,822	1,048	7,814	3,711.0	3,992	6,250	99.8	47.0
2017. 1	-	-	-	3,740.4	-	-	93.7	52.4
2	-	-	-	3,739.1	-	-	88.6	55.4
3	4,044	1,145	8,124	3,753.0	4,080	3,856	95.9	54.3
4	-	-	-	3,765.7	-	-	84.5	52.8
5	-	-	-	3,784.6	-	-	92.7	52.2
6	4,055	1,169	8,310	3,805.7	4,254	5,740	87.3	49.8
7	-	-	-	3,837.6	-	-	93.6	47.6
8	-	-	-	3,848.4	-	-	101.5	48.7
9	4,084	1,191	8,556	3,846.7	4,472	3,992	93.1	51.3
10	-	-	-	3,844.6	-	-	92.8	54.7
11	-	-	-	3,872.5	-	-	94.7	57.5
12	4,120	1,160	8,774	3,892.7	4,654	9,361	99.9	62.3
2018. 1	-	-	-	3,957.5	-	-	99.8	65.2
2	-	-	-	3,948.0	-	-	94.4	67.3
3	4,270	1,205	8,944	3,967.5	4,674	4,934	82.8	64.4
4	-	-	-	3,984.2	-	-	87.2	65.9
5	-	-	-	3,989.8	-	-	95.2	70.3
6	4,333	1,250	8,935	4,003.0	4,602	10,820	98.0	74.6
7	-	-	-	4,024.5	-	-	96.7	75.2
8	-	-	-	4,011.3	-	-	95.0	75.1
9	4,417	1,277	9,095	4,030.0	4,678	3,449	79.7	77.0
10	-	-	-	4,027.5	-	-	97.8	80.0
11	-	-	-	4,029.9	-	-	95.3	79.1
12	4,406	1,266	9,081	4,036.9	4,675	7,698	93.0	67.9
2019. 1	-	-	-	4,055.1	-	-	93.1	60.9
2				4,046.7			96.0	62.8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 기준, 분기별 발표
2」 단기 :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365일) 이하
3」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4」 신고기준, 분기별 발표
5」 한국석유공사 CIF 기준,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는 잠정치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

	한국(원/달러)			일본(￥/달러)[4]		대만(NT달러/달러)[4]		유로(달러/EUR)	
	기 말[1]	절상률[2]	기간평균[3]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2016	1,208.5	△3.02	1,160.50	116.56	3.44	32.31	2.17	1.0489	△4.00
2017	1,071.4	12.80	1,130.84	112.89	3.26	29.82	8.32	1.1940	13.83
2018	1,118.1	△4.18	1,100.30	110.36	2.29	30.57	△2.45	1.1441	△4.18
2017. Ⅰ	1,116.1	8.28	1,154.28	111.78	4.28	30.31	6.57	1.0686	1.88
Ⅱ	1,139.6	6.05	1,129.43	112.00	4.08	30.37	6.38	1.1443	9.10
Ⅲ	1,146.7	5.39	1,132.24	112.38	3.72	30.39	6.31	1.1781	12.32
Ⅳ	1,071.4	12.80	1,105.72	112.89	3.26	29.82	8.32	1.1940	13.83
2018. Ⅰ	1,066.5	0.46	1,072.29	106.50	6.00	29.12	2.42	1.2302	3.03
Ⅱ	1,121.7	△4.48	1,078.57	110.54	2.13	30.59	△2.50	1.1563	△3.16
Ⅲ	1,112.7	△3.71	1,121.59	113.41	△0.46	30.49	△2.18	1.1635	△2.55
Ⅳ	1,118.1	△4.18	1,127.52	110.36	2.29	30.57	△2.44	1.1441	△4.18
2017.5	1,123.9	7.53	1,125.28	110.81	5.19	30.20	6.99	1.1172	6.51
6	1,139.6	6.05	1,130.04	112.00	4.08	30.37	6.38	1.1443	9.10
7	1,119.1	7.99	1,134.40	110.56	5.43	30.30	6.64	1.1757	12.09
8	1,122.8	7.63	1,130.79	110.36	5.62	30.15	7.15	1.1896	13.41
9	1,146.7	5.39	1,131.59	112.38	3.72	30.39	6.31	1.1781	12.32
10	1,125.0	7.42	1,131.57	113.16	3.00	30.20	6.98	1.1645	11.02
11	1,082.4	11.65	1,105.04	111.99	4.08	29.98	7.74	1.1851	12.99
12	1,071.4	12.80	1,085.78	112.89	3.26	29.82	8.32	1.1940	13.83
2018.1	1,071.5	△0.01	1,066.70	108.78	3.78	29.24	2.00	1.2404	3.89
2	1,071.0	0.04	1,079.58	107.40	5.11	29.29	1.82	1.2236	2.48
3	1,066.5	0.46	1,071.89	106.50	6.00	29.12	2.42	1.2302	3.03
4	1,076.2	△0.45	1,067.76	109.16	3.42	29.56	0.89	1.2121	1.52
5	1,081.3	△0.92	1,076.39	108.79	3.77	29.91	△0.29	1.1665	△2.30
6	1,121.7	△4.48	1,092.80	110.54	2.13	30.59	△2.50	1.1563	△3.16
7	1,116.7	△4.06	1,122.80	111.01	1.69	30.59	△2.50	1.1708	△1.94
8	1,108.8	△3.37	1,121.15	111.03	1.68	30.69	△2.82	1.1663	△2.32
9	1,112.7	△3.91	1,120.60	113.41	△0.46	30.49	△2.18	1.1635	△2.55
10	1,140.6	△6.07	1,130.81	113.06	△0.15	30.96	△3.67	1.1345	△4.98
11	1,121.8	△4.49	1,128.58	113.43	△0.48	30.65	△2.69	1.1390	△4.61
12	1,118.1	△4.18	1,122.90	110.36	2.29	30.57	△2.44	1.1441	△4.18
2019.1	1,117.2	0.08	1,122.00	109.02	1.23	30.74	△0.54	1.1485	△0.38
2	1,117.8	0.03	1,122.45	110.94	△0.53	30.79	△0.72	1.1375	△0.58

주 : 1」 매매기준율
2」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
3」 매매기준율
4」 일본시장, 대만시장의 현지일 기준

6. 통화·금리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본 원 통 화[1]				M1[2]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14	116,793.7	12.0	103,331.5	13.1	585,822.6	13.6	536,733.4	10.9
2015	131,438.8	12.5	120,691.4	16.8	708,452.9	20.9	636,639.0	18.6
2016	143,435.3	9.1	137,441.5	13.9	795,531.1	12.3	734,411.8	15.4
2017	155,881.0	8.7	151,858.1	10.5	849,862.4	6.8	802,016.5	9.2
2016.3	135,399.8	9.9	132,957.9	14.6	723,265.0	19.6	713,861.2	18.8
4	132,719.7	7.9	135,038.9	17.3	716,065.7	17.1	720,818.5	18.0
5	135,575.7	15.7	135,971.3	15.5	723,033.8	15.2	722,544.4	16.2
6	137,961.5	9.7	135,758.4	14.4	743,524.4	14.7	730,747.4	15.9
7	133,761.8	16.2	135,906.7	11.4	734,947.4	14.1	735,172.2	13.8
8	136,740.8	7.7	139,073.9	14.1	747,093.0	14.0	738,120.9	13.0
9	144,308.9	10.1	142,079.6	12.3	749,120.0	10.2	751,408.5	12.9
10	138,161.4	8.3	141,103.5	12.3	758,454.8	11.9	753,367.3	12.5
11	140,003.1	11.5	141,757.2	11.8	767,375.6	12.6	762,639.7	12.5
12	143,435.3	9.1	143,458.7	12.0	795,531.1	12.3	776,589.6	12.4
2017.1	149,132.9	15.2	147,380.8	12.3	780,436.1	11.8	780,995.5	11.6
2	146,930.0	9.9	150,092.9	11.3	785,333.0	10.3	776,362.5	9.7
3	152,539.2	12.7	145,049.0	9.1	793,893.6	9.8	789,187.8	10.6
4	148,202.9	11.7	149,630.1	10.8	793,015.8	10.7	791,859.3	9.9
5	146,241.6	7.9	149,446.2	9.9	791,486.5	9.5	791,074.8	9.5
6	149,971.7	8.7	150,519.7	10.9	816,173.7	9.8	798,890.2	9.3
7	151,177.5	13.0	149,955.1	10.3	796,945.2	8.4	804,853.4	9.5
8	154,591.0	13.1	152,170.5	9.4	800,836.1	7.2	805,103.3	9.1
9	161,818.8	12.1	154,578.4	8.8	837,045.8	11.7	810,904.8	7.9
10	157,141.9	13.8	159,248.2	12.9	818,030.0	7.9	826,892.1	9.8
11	154,807.5	10.6	155,623.3	9.8	821,132.3	7.0	817,624.5	7.2
12	155,881.0	8.7	158,603.1	10.6	849,862.4	6.8	830,003.7	6.9
2018.1	158,176.6	6.1	157,220.1	6.7	828,767.6	6.1	830,732.7	6.3
2	165,676.0	12.8	163,852.7	9.2	840,022.9	7.0	839,555.2	8.1
3	163,765.6	7.4	160,760.7	10.8	851,585.0	7.3	840,991.0	6.6
4	159,088.0	7.3	161,527.1	8.0	836,600.2	5.5	841,002.2	6.2
5	162,659.7	11.2	160,475.5	7.4	836,585.2	5.7	839,880.5	6.2
6	167,048.3	11.4	164,397.3	9.2	861,938.2	5.6	846,240.2	5.9
7	164,566.5	8.9	163,223.4	8.8	837,164.2	5.0	843,752.8	4.8
8	170,586.8	10.3	165,629.2	8.8	833,299.0	4.1	837,607.5	4.0
9	177,902.4	9.9	170,529.6	10.3	853,227.3	1.9	845,523.7	4.3
10	173,738.9	10.6	170,478.9	7.1	840,308.0	2.7	840,678.4	1.7
11	171,141.7	10.6	168,326.2	8.2	837,247.6	2.0	840,084.9	2.7
12	172,353.3	10.6	173,137.8	9.2	865,851.8	1.9	846,123.7	1.9

주 : 1」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2」 M1(협의통화) = 현금통화(기념화폐를 제외한 민간화폐보유액) +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투신사 MMF 포함)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M2 [3]				Lf [4]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10억원	증감률 (%)
2016	2,407,459.1	7.1	2,342,621.3	7.3	3,344,919.6	7.9	3,229,857.2	8.1
2017	2,530,353.6	5.1	2,471,225.6	5.5	3,565,196.8	6.6	3,445,645.8	6.7
2016.11	2,404,426.4	7.4	2,406,939.5	7.3	3,335,271.2	8.3	3,328,489.7	8.2
12	2,407,459.1	7.1	2,414,040.9	7.5	3,344,209.8	7.9	3,335,979.6	8.1
2017.1	2,401,547.9	5.7	2,417,807.6	6.9	3,347,750.8	7.2	3,359,110.8	8.0
2	2,427,078.1	6.2	2,420,285.6	5.9	3,377,968.0	7.5	3,365,200.1	7.4
3	2,438,307.0	6.2	2,436,994.7	6.2	3,396,582.3	7.0	3,387986.2	7.3
4	2,446,383.5	6.6	2,450,220.9	6.6	3,419,316.4	7.7	3,405,292.9	7.4
5	2,449,939.4	5.7	2,454,386.7	6.1	3,424,230.6	7.0	3,416,320.2	7.1
6	2,463,832.7	5.4	2,470,861.1	5.9	3,449,613.9	6.7	3,440,571.4	6.7
7	2,469,631.0	4.5	2,472,110.4	5.1	3,466,173.0	6.4	3,454,563.6	6.5
8	2,483,578.7	4.3	2,485,629.9	4.6	3,479,874.4	6.1	3,472,041.5	6.2
9	2,510,203.7	5.5	2,492,388.2	4.6	3,507,319.5	6.3	3,483,587.0	5.9
10	2,502,994.8	4.6	2,504,594.2	4.7	3,506,513.3	5.8	3,501,084.6	5.9
11	2,522,962.9	4.9	2,521,786.3	4.8	3,530,956.4	5.9	3,521,139.1	5.8
12	2,530,353.6	5.1	2,527,641.3	4.7	3,565,892.7	6.6	3,541,553.2	6.1
2018.1	2,554,843.7	6.4	2,551,196.0	5.5	3,581,961.2	7.0	3,573,130.0	6.4
2	2,569,313.3	5.9	2,570,764.6	6.2	3,610,769.0	6.9	3,596,261.3	6.9
3	2,584,208.4	6.0	2,578,361.8	5.8	3,633,741.2	7.0	3,616,028.6	6.7
4	2,584,177.1	5.6	2,590,840.7	5.7	3,630,231.3	6.2	3,628,930.4	6.6
5	2,609,834.8	6.5	2,600,274.3	5.9	3,663,596.0	7.0	3,643,255.3	6.6
6	2,632,341.1	6.8	2,622,268.3	6.1	3,697,098.0	7.2	3,671,929.8	6.7
7	2,634,789.9	6.7	2,637,421.8	6.7	3,698,558.1	6.7	3,698,202.0	7.1
8	2,642,505.0	6.4	2,651,503.4	6.7	3,722,900.0	7.0	3,718,480.0	7.1
9	2,661,729.3	6.0	2,652,829.5	6.4	3,751,107.7	7.0	3,734,526.2	7.2
10	2,682.252.6	7.2	2,674,506.5	6.8	3,776,777.5	7.7	3,759,646.9	7.4
11	2,687,143.0	6.5	2,692,974.8	6.8	3,790,490.4	7.4	3,786,039.7	7.5
12	2,700,362.4	6.7	2,699,882.3	6.8	3,824,043.9	7.2	3,808,950.3	7.6

주 : 3」 M2(광의통화) = M1 + 기간물 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 + 실적배당형 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제외

4」 M3(총유동성) = 현금통화 +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 + 금융채 + 상업어음매출 + 양도성예금증서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표지어음(1989년 11월부터 표지어음 포함)

* M1, M2는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종금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을, M3는 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대상금융기관으로 함

(10억원, 전년동기대비, %)

	화폐발행액		회사채 유통수익률 (3年)	CD 유통 수익률 (91物)	콜금리 (1日)	어음부도율 (금액기준)[5]		주 식	
	말잔액	증감률 (%)				서 울	전 국	평 균 지 수	거래량 (일평균 만주)
2016	97,382.3	12.2	1.89	1.49	1.34	0.08	0.11	1,987.0	37,677
2017	107,907.6	10.8	2.33	1.44	1.26	0.13	0.15	2,311.4	34,029
2016.6	91,555.1	15.2	1.79	1.43	1.28	0.19	0.21	1,977.0	46,740
7	91,926.5	14.2	1.65	1.36	1.23	0.03	0.08	2,002.5	38,419
8	92,875.6	14.1	1.65	1.35	1.23	0.06	0.09	2,036.7	35,478
9	96,128.2	10.8	1.70	1.34	1.24	0.19	0.19	2,042.6	46,588
10	94,898.6	12.2	1.78	1.35	1.23	0.08	0.10	2,036.0	33,185
11	95,936.1	12.8	2.02	1.42	1.23	0.04	0.06	1,981.8	30,048
12	97,382.3	12.2	2.16	1.54	1.22	0.07	0.11	2,021.7	28,743
2017.1	103,510.0	15.5	2.10	1.50	1.24	0.05	0.09	2,061.7	42,122
2	100,231.7	10.4	2.13	1.49	1.23	0.18	0.18	2,082.8	35,645
3	99,474.9	10.9	2.21	1.48	1.23	0.05	0.08	2,136.2	40,318
4	101,124.7	12.0	2.20	1.43	1.23	0.42	0.37	2,160.2	38,647
5	101,331.9	11.0	2.22	1.39	1.23	0.18	0.20	2,301.9	36,991
6	101,368.6	10.7	2.21	1.38	1.24	0.26	0.28	2,372.2	35,638
7	101,949.5	10.9	2.28	1.39	1.24	0.03	0.10	2,412.9	29,644
8	102,490.6	10.4	2.32	1.39	1.23	0.09	0.10	2,372.2	26,018
9	110,694.6	15.2	2.33	1.38	1.25	0.08	0.09	2,371.8	27,822
10	107,231.6	13.0	2.57	1.38	1.24	0.08	0.13	2,482.9	31,573
11	106,856.0	11.4	2.71	1.45	1.26	0.06	0.10	2,533.5	33,975
12	107,907.6	10.8	2.65	1.66	1.51	0.07	0.09	2,467.7	30,253
2018.1	108,534.8	4.9	2.72	1.66	1.49	0.11	0.15	2,520.9	37,516
2	112,751.8	12.5	2.82	1.65	1.49	0.05	0.09	2,439.1	40,451
3	109,523.6	10.1	2.83	1.65	1.49	0.09	0.12	2,451.6	38,471
4	109,613.4	8.4	2.79	1.65	1.47	0.17	0.19	2,458.2	49,714
5	110,517.0	9.1	2.86	1.65	1.50	0.14	0.22	2,461.3	64,103
6	110,069.3	8.6	2.81	1.65	1.49	0.09	0.14	2,394.5	49,741
7	110,474.5	8.4	2.75	1.65	1.49	0.02	0.10	2,284.3	34,134
8	110,584.7	7.9	2.66	1.65	1.50	0.01	0.07	2,283.8	28,203
9	116,454.7	5.2	2.40	1.65	1.54	0.09	0.14	2,307.3	31,960
10	113,859.8	6.2	2.45	1.68	1.52	0.04	0.09	2,153.5	33,439
11	114,080.9	6.8	2.40	1.71	1.51	0.17	0.18	2,083.3	31,723
12	115,389.5	6.9	2.30	1.91	1.77	0.03	0.07	2,070.1	40,168
2019.1	121,247.3	11.7	2.26	1.87	1.76	0.04	0.07	2,102.0	42,978
2	-	-	2.25	1.87	1.76	-	-	2,210.2	40,486

주 : 5」 전자결제 조정 전

7. 경기

(2015 = 100, %)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순환변동치		전월비	순환변동치
2015.12	102.0	0.1	100.4	101.9	0.2	100.5
2016. 1	102.0	0.0	100.0	101.8	△0.1	100.2
2	102.0	0.0	99.7	101.9	0.1	100.0
3	102.2	0.2	99.6	102.0	0.1	99.9
4	102.6	0.4	99.6	102.2	0.2	99.8
5	103.0	0.4	99.6	102.7	0.5	100.0
6	103.3	0.3	99.6	103.2	0.5	100.2
7	103.8	0.5	99.7	103.7	0.5	100.4
8	104.3	0.5	99.8	104.0	0.3	100.5
9	104.9	0.6	100.0	104.2	0.2	100.4
10	105.4	0.5	100.1	104.2	0.0	100.2
11	105.8	0.4	100.2	104.6	0.4	100.3
12	106.4	0.6	100.4	105.1	0.5	100.5
2017. 1	106.8	0.4	100.4	105.7	0.6	100.8
2	107.3	0.5	100.5	105.9	0.2	100.8
3	107.6	0.3	100.5	106.4	0.5	101.0
4	108.1	0.5	100.6	106.7	0.3	101.0
5	108.7	0.6	100.8	107.0	0.3	101.0
6	109.4	0.6	101.1	107.1	0.1	100.9
7	109.9	0.5	101.2	107.3	0.2	100.9
8	110.3	0.4	101.3	107.6	0.3	100.9
9	110.5	0.2	101.1	108.0	0.4	101.0
10	110.8	0.3	101.0	108.1	0.1	100.8
11	111.1	0.3	101.0	108.3	0.2	100.8
12	111.4	0.3	100.9	108.1	△0.2	100.3
2018. 1	111.9	0.4	101.0	108.3	0.2	100.4
2	112.1	0.2	100.9	108.7	0.4	100.4
3	112.4	0.3	100.8	109.1	0.4	100.6
4	112.4	0.0	100.5	109.2	0.1	100.5
5	112.8	0.4	100.5	109.4	0.2	100.4
6	113.0	0.2	100.4	109.5	0.1	100.3
7	113.2	0.2	100.3	109.5	0.0	100.1
8	113.1	△0.1	99.9	109.7	0.2	99.9
9	113.2	0.1	99.6	109.6	△0.1	99.7
10	113.2	0.0	99.3	109.7	0.1	99.6
11p	113.3	0.1	99.1	109.8	0.1	99.3
12p	113.4	0.1	98.9	109.8	0.0	99.2
2019. 1p	113.4	0.0	98.5	110.0	0.2	99.1

※ p는 잠정치임

8. 재정

(조원)

	통합재정지출[1] (GDP대비, %)[2]		경상지출	이자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통합재정수입[1] (GDP대비, %)[2]		국세수입	세외수입	자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1999	121.0	(21.0)	76.8	5.9	24.4	19.8	107.9	(18.7)	75.7	18.9	1.4	12.0
2000	129.3	(20.4)	87.2	6.9	22.3	19.8	135.8	(21.4)	92.9	26.7	1.4	14.8
2001	136.8	(19.9)	101.9	7.2	24.9	10.1	144.0	(20.9)	95.8	29.4	1.3	17.5
2002	136.0	(17.9)	106.3	6.8	29.4	0.4	158.7	(20.8)	104.0	33.5	1.5	19.7
2003	164.3	(20.3)	136.2	6.6	30.6	△2.5	171.9	(21.2)	114.7	35.1	1.5	20.7
2004	173.1	(19.8)	144.7	8.3	27.0	1.4	178.8	(20.4)	117.8	36.8	1.3	22.8
2005	186.6	(20.3)	158.9	8.7	24.6	3.0	191.4	(20.8)	127.5	37.8	1.3	24.9
2006	203.6	(21.1)	171.3	9.8	26.5	5.7	209.6	(21.7)	138.0	42.7	1.5	27.3
2007	206.6	(19.8)	173.3	10.2	26.2	7.1	243.6	(23.4)	161.5	50.5	1.9	29.7
2008	234.9	(21.3)	201.0	10.4	28.4	5.5	250.7	(22.7)	167.3	48.6	1.9	32.9
2009	268.4	(23.3)	215.1	11.5	35.2	18.0	250.8	(21.8)	164.5	49.8	2.5	33.9
2010	254.2	(20.1)	216.9	13.4	34.2	3.1	270.9	(21.4)	177.7	55.2	2.4	35.6
2011	273.7	(20.5)	235.5	14.6	34.3	3.9	292.3	(21.9)	192.4	58.5	2.5	38.9
2012	293.0	(21.3)	252.6	14.2	34.3	6.1	311.5	(22.6)	203.0	60.8	3.7	43.9
2013	300.2	(21.0)	268.0	13.4	34.0	△1.8	314.4	(22.0)	201.9	63.1	3.3	46.1
2014	312.4	(21.0)	280.5	14.1	31.0	0.9	320.9	(21.6)	205.5	62.9	2.7	49.8
2015	339.4	(21.8)	296.2	14.1	34.3	8.8	339.2	(21.8)	217.9	64.9	3.3	53.1
2016	354.4	(21.6)	310.0	14.0	32.6	11.7	371.3	(22.7)	242.6	68.4	3.4	56.9
2017	379.8	(22.0)	332.7	14.0	31.0	16.1	403.8	(23.3)	265.4	74.8	3.2	60.5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2]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2]		국가채무 (GDP대비, %)[2]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1999	△13.1	(△2.3)	△20.4	(△3.5)	98.6	(17.1)	17.2	20.7
2000	6.5	(1.0)	△6.0	(△0.9)	111.2	(17.5)	17.9	21.5
2001	7.3	(1.1)	△8.2	(△1.2)	121.8	(17.7)	17.8	21.8
2002	22.7	(3.0)	5.1	(0.7)	133.8	(17.6)	17.8	21.9
2003	7.6	(0.9)	1.0	(0.1)	165.8	(20.4)	18.2	22.7
2004	5.6	(0.6)	△3.6	(△0.4)	203.7	(23.3)	17.4	22.0
2005	4.9	(0.5)	△6.7	(△0.7)	247.9	(27.0)	17.8	22.5
2006	6.0	(0.6)	△8.4	(△0.9)	282.7	(29.3)	18.6	23.6
2007	37.0	(3.6)	6.8	(0.7)	299.2	(28.7)	19.6	24.8
2008	15.8	(1.4)	△11.7	(△1.1)	309.0	(28.0)	19.3	24.6
2009	△17.6	(△1.5)	△43.2	(△3.8)	359.6	(31.2)	18.2	23.6
2010	16.7	(1.3)	△13.0	(△1.0)	392.2	(31.0)	17.9	23.2
2011	18.6	(1.4)	△13.5	(△1.0)	420.5	(31.6)	18.4	24.0
2012	18.5	(1.3)	△17.4	(△1.3)	443.1	(32.2)	18.7	24.8
2013	14.2	(1.0)	△21.1	(△1.5)	489.8	(34.3)	17.9	24.3
2014	8.5	(0.6)	△29.5	(△2.0)	533.2	(35.9)	18.0	24.6
2015	△0.2	(△0.01)	△38.0	(△2.4)	591.5	(37.8)	18.5	25.2
2016	16.9	(1.0)	△22.7	(△1.4)	626.9	(38.3)	19.4	26.3
2017	24.0	(1.4)	△18.5	(△1.1)	660.7	(38.2)	20.0	26.9

주 : 1」 통합재정 기준　2」 GDP는 신계열('08 SNA) 기준

9. 해외지표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미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1] 상품수출 (BOP)		무역[1] 상품수입 (BOP)		경상수지	대외준비[2] (기말)	달러화 실효환율[3]	물가[4] 생산자	물가[4] 소비자	실업률[5]	노동생산성[6]
	전기대비연율(%)	달러	억달러	전기대비(%)	억달러	전기대비(%)	십억달러	억달러	2006=100	전년동기대비(%)		%	전기대비연율(%)
2016	1.6	57,860	14,570	△3.6	22,080	△2.9	△433	1,147	109.43	0.4	1.3	4.9	0.1
2017	2.2	59,880	15,534	6.6	23,609	6.9	△449	1,222	108.91	2.3	2.1	4.4	1.1
2018	2.9	62,610	. .	. .	. .	. .	. .	1,250	106.42	2.9	2.4	3.9	. .
2018.4			1,412.7	0.2	2,096.9	△0.3		1,412.7	103.20	2.7	2.5	3.9	
5	4.2	-	1,450.2	2.7	2,107.6	0.5	△101.2	1,450.2	106.06	3.1	2.8	3.8	3.0
6			1,431.4	△1.3	2,120.4	0.6		1,431.4	107.30	3.3	2.9	4.0	
7			1,408.2	△1.6	2,139.8	0.9		1,408.2	107.67	3.4	2.9	3.9	
8	3.4	-	1,390.7	△1.2	2,156.7	0.8	△124.8	1,390.7	108.17	3.0	2.7	3.8	2.2
9			1,418.8	2.0	2,191.3	1.6		1,418.8	107.62	2.7	2.3	3.7	
10			1,415.1	△0.3	2,197.8	0.3		1,415.1	108.51	2.9	2.5	3.8	
11	2.6	-	1,403.4	△0.8	2,119.3	△3.6	-	1,403.4	109.62	2.5	2.2	3.7	-
12	-		-	-	-	-		1,250	110.11	2.5	1.9	3.9	
2019.1								1,259	109.05	2.0	1.6	4.0	
2								1,255	109.31	. .	. .	. .	

연월중	통화[7] M2 전기대비(연율%)	금리(연%) Federal Funds Rate (목표)	재할인율[8] (기말)	프라임레이트 (기말)	단기[9] 국채 수익률 (기간평균)	장기[10] 국채 수익률 (기간평균)	산업생산[11] 전산업 전기대비(%)	산업생산[11] 제조업 전기대비(%)	제조업 가동률(%)[12]	수요관련지표 소매판매액 전기대비(%)	수요관련지표 주택착공호수 전기대비(%)	주가지수[13]
2016	7.1	0.50-0.75	1.25	3.75	0.32	1.84	△1.9	△0.8	74.6	3.1	5.6	19,762.6
2017	4.9	1.25-1.50	2.00	4.50	0.95	2.33	1.6	1.2	74.8	4.3	2.5	24,719.2
2018	3.9	2.25-2.50	3.00	5.50	1.97	2.91	4.1	2.5	75.7	5.0	3.6	23,327.5
2018.4	2.9	1.50-1.75	2.25	4.75	1.79	2.87	1.1	0.6	75.9	0.3	△3.8	24,163.2
5	5.4	1.50-1.75	2.25	4.75	1.90	2.98	△0.8	△1.0	75.1	1.2	4.2	24,415.8
6	6.4	1.75-2.00	2.50	5.00	1.94	2.91	0.6	0.7	75.5	0.2	△11.4	24,271.4
7	3.5	1.75-2.00	2.50	5.00	1.99	2.89	0.4	0.4	75.7	0.6	0.6	25,415.2
8	3.6	1.75-2.00	2.50	5.00	2.07	2.89	0.9	0.5	76.0	△0.1	8.1	25,964.8
9	2.9	2.00-2.25	2.75	5.25	2.17	3.00	0.2	0.2	76.1	△0.2	△3.4	26,458.3
10	2.2	2.00-2.25	2.75	5.25	2.29	3.15	0.3	△0.1	75.9	1.0	△2.3	25,115.8
11	2.2	2.00-2.25	2.75	5.25	2.37	3.12	0.6	0.3	76.0	0.1	0.4	25,538.5
12	9.7	2.25-2.50	3.00	5.50	2.41	2.83	0.1	0.8	76.5	△1.2	△11.2	23,327.5
2019.1	6.7	2.25-2.50	3.00	5.50	2.42	2.71	△0.6	△0.9	75.8	. .	. .	24,999.7
2	. .	2.25-2.50	3.00	5.50	2.44	2.68	. .	. .	. .	. .	. .	25,916.0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율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국제수지 기준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수, 명목기준

4) 생산자물가는 최종수요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전산업(농업부문 제외)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 기준(2009=100)

7) M1 = 민간보유화폐액 + 비은행금융기관발행 여행자수표 +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 예금금융기관의 NOW계정 및 AST계정 + 신용조합의 출자금 계정 + 저축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M2 = M1 + 예금금융기관의 익일물 RP + 미국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익일물 유로달러예금 + 예금금융기관의 저축예금 및 소액정기예금 + 일반투자가 보유 MMF - 예금금융기관 및 MMF의 IRA와 Koegh계정 예금, 평잔기준 8) 2003. 1. 9일 이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 만기 10) 10년 만기 11) 지수(2007=100) 증감률 12) 월별 수치는 계절변동조정 후 13) 다우존스 공업평균 주가, 기말기준

(중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 수출(FOB)		무역 수입(CIF)		경상수지	대외준비[1] (기말)	대미달러 환율 (Yuan/U$)[2]	
	전년동기 대비(%)	미달러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미달러		기 말	평 균
2016	6.7	8,082	20,976	△7.7	15,879	△5.5	2,022	30,105	6.937	6.642
2017	6.8	8,762	22,633	7.9	18,438	16.1	1,649	31,399	6.534	6.752
2018	6.6	9,776	24,870	9.9	21,359	15.8	491	30,727	6.863	6.617
2018.1			1,995	10.7	1,811	37.7		31,615	6.334	6.436
2	6.8	-	1,706	43.6	1,384	6.6	△341	31,345	6.329	6.316
3			1,739	△3.0	1,797	14.8		31,428	6.288	6.322
4			1,989	11.9	1,727	22.3		31,249	6.339	6.298
5	6.7	-	2,116	11.9	1,882	26.2	53	31,106	6.414	6.376
6			2,156	10.7	1,747	13.8		31,121	6.617	6.456
7			2,144	11.6	1,870	27.0		31,180	6.817	6.703
8	6.5	-	2,170	9.5	1,908	20.7	233	31,097	6.825	6.843
9			2,254	13.9	1,951	14.4		30,870	6.879	6.845
10			2,148	14.3	1,817	20.3		30,531	6.965	6.926
11	6.4	-	2,243	3.9	1,825	2.9	546	30,617	6.936	6.935
12			2,209	△4.6	1,641	△7.6		30,727	6.863	6.885
2019.1			2,176	9.1	1,784	△1.5		30,879	6.703	6.790
2			.	.	.	.		.	6.690	6.736

연월중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통화[3] M1	통화[3] M2	금리(기말, 연%) 재할인율	금리(기말, 연%) 금융기관 대출금리 (1년)	산업생산 전산업	산업생산 국유기업	소매판매[4]	주가지수[5]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2016	△1.3	2.0	21.4	11.3	2.25	4.35	6.0	2.0	10.4	3,103.64
2017	6.3	1.6	11.8	8.1	2.25	4.35	6.6	6.5	10.2	3,307.17
2018	3.5	2.1	1.5	8.1	2.25	4.35	6.2	6.2	9.0	2,493.90
2018.1	4.3	1.5	15.0	8.6	2.25	4.35	—	—	—	3,480.83
2	3.7	2.9	8.5	8.8	2.25	4.35	7.2	9.0	9.7	3,259.41
3	3.1	2.1	7.1	8.2	2.25	4.35	6.0	5.7	10.1	3,168.90
4	3.4	1.8	7.2	8.3	2.25	4.35	7.0	7.7	9.4	3,082.23
5	4.1	1.8	6.0	8.3	2.25	4.35	6.8	8.1	8.5	3,095.47
6	4.7	1.9	6.6	8.0	2.25	4.35	6.0	6.1	9.0	2,847.42
7	4.6	2.1	5.1	8.5	2.25	4.35	6.0	6.2	8.8	2,876.40
8	4.1	2.3	3.9	8.2	2.25	4.35	6.1	5.6	9.0	2,725.25
9	3.6	2.5	4.0	8.3	2.25	4.35	5.8	5.6	9.2	2,821.35
10	3.3	2.5	2.7	8.0	2.25	4.35	5.9	4.6	8.6	2,602.78
11	2.7	2.2	1.5	8.0	2.25	4.35	5.4	3.9	8.1	2,588.19
12	0.9	1.9	1.5	8.1	2.25	4.35	5.7	3.6	8.2	2,493.90
2019.1	0.1	1.7	0.4	8.4	2.25	4.35	. .	. .	. .	2,584.57
2	.	.	.	.	2.25	4.35	.	.	.	2,940.95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중국인민은행 고시환율 3)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정기예금+저축예금+기타예금), 말잔

4) 2월은 1~2월 누계치 5) 상해 종합주가지수(1990=100), 기말기준

자료 : 중국인민은행, 국가통계국,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일 본)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				경상수지	대외준비[1] (기말)	대미달러 환율[2] (¥/U$)		물가[3]		실업률[4]	노동[5] 생산성
			수출(FOB)		수입(CIF)						생산자	소비자		
	전기대비 연율 (%)	미달러	억엔	전년동기대비 (%)	억엔	전년동기대비 (%)	십억엔	억달러	기말	평균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2017	1.9	38,369	782,865	11.8	753,792	14.1	21,951	12,643	112.69	112.16	2.3	0.5	2	2.0
2018	0.8	39,289	789,515	4.1	759,031	9.7	19,093	12,685	110.04	110.42	2.5	1.0	2	0.7
2018.4			73,821.0	2.1	65,979.0	△0.4	3,182	12,683	106.28	106.07	2.0	1.1	2	2.1
5	0.6	-	68,222.8	7.8	62,013.2	6.0	1,891	12,560	109.27	107.54	2.0	0.6	2	2.2
6			63,268.7	8.1	69,042.4	14.0	1,887	12,545	108.93	109.70	2.6	0.7	2	0.8
7			70,538.3	6.7	63,260.5	2.5	1,199	12,587	110.76	110.05	2.8	0.7	2	△2.4
8	△0.7	-	67,479.3	3.9	69,753.1	14.6	2,038	12,563	111.55	111.42	3.0	0.9	2	1.8
9			66,878.0	6.5	71,358.9	15.4	1,827	12,593	111.03	111.02	3.0	1.3	2	△1.0
10			67,168.3	△1.4	65,927.2	7.1	1,849	12,597	113.70	112.01	3.0	1.2	2	△0.7
11	0.3	-	72,434.6	8.2	76,997.3	20.0	1,310	12,529	113.13	112.83	3.0	1.4	2	3.9
12			69,271.0	0.1	76,662.0	12.5	757	12,583	113.57	113.32	2.3	0.8	2	△1.1
2019.1			70,217.9	△3.9	70,775.3	1.9	453	12,710	110.04	112.14	1.5	0.3	2	△0.5
2			55,746.8	△8.4	69,903.2	△0.8	. .	12,793	108.60	108.97	0.6	0.2	2	. .

연월중	통화[6]	금리(기말, 연%)			광공업[8]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11]
	M3				생산	출하	재고	제조업 가동률	소매판매	민간기계 수주액[9]	민간건설 수주액[10]	
	전년동기대비 (%)	기준대출이율[7]	단기 프라임레이트	장기 프라임레이트	전기대비(%)				전기대비 (%)	전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2017	3.4	0.30	1.475	1.00	3.1	2.5	4.1	102.3	1.9	△1.1	1.7	22,765
2018	2.5	0.30	1.475	1.00	1.0	0.7	△1.9	103.0	1.9	3.6	△0.5	20,015
2018.4	2.7	0.30	1.475	1.00	△0.6	△1.8	△1.1	115.9	1.3	10.1	8.3	22,468
5	2.7	0.30	1.475	1.00	0.5	0.3	0.4	116.1	△1.7	△3.7	△8.0	22,202
6	2.7	0.30	1.475	1.00	△2.8	△3.4	0.9	113.1	1.4	△8.8	3.6	22,305
7	2.5	0.30	1.475	1.00	△0.2	△0.9	0.5	112.5	0.1	11.0	△9.7	22,309
8	2.5	0.30	1.475	1.00	△3.5	△2.6	△0.2	108.1	0.9	6.8	△0.1	22,494
9	2.5	0.30	1.475	1.00	1.2	△0.4	0.7	110.3	0.1	△18.3	9.4	23,159
10	2.3	0.30	1.475	1.00	△2.4	△1.8	1.1	107.5	1.3	7.6	△10.1	22,691
11	2.1	0.30	1.475	1.00	△6.7	△6.9	0.8	97.9	△1.1	0.0	△9.2	21,968
12	2.1	0.30	1.475	1.00	△8.2	△7.1	0.5	87.9	0.9	△0.1	1.4	21,032
2019.1	2.1	0.30	1.475	1.00	△8.9	△9.5	△0.2	. .	△2.3	. .	15.2	20,461
2	. .	0.30	1.475	1.00	. .	. .	. .	. .	. .	. .	. .	21,124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재무성발표 외환보유액 2) 동경시장 현지종가 기준 3)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2010 =100, 생산자물가 2010 = 100 생산자물가는 국내상품 기준 4) 계절변동조정 후 5) 제조업 2010년=100 6) M3 (구M2+CD)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준통화 + 양도성예금기준, 2008.6.9.개편, 평잔기준 7) 2006년 8월 11일자로 일본은행이 종전의 공정보합을 2001년 이후부터 소급하여 「기준할인률 및 기준대출이율」로 명칭 변경, 8) 광공업 2010년=100, 9) 선박 및 전력용 기계 제외, 10) 민간건설수주는 대기업 50사 대상, 11)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자료: 일본은행, 내각부, 재무성, 경제산업성, 생산성본부, IMF

(유로지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1) 2)]				경상수지[2)]	대외준비(기말)[3)]	대미달러 환율(U$/EUR)		물가[4)]		실업률(%)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생산자	소비자	
	전기대비(%)	유로	억유로	전기대비(%)	억유로	전기대비(%)	억유로	억달러	기말	평균	전년동기대비(%)		
2016	2.0	31,800	20,494	0.3	17,830	△1.2	3,466	7,458	1.051	1.107	△2.1	0.2	10.0
2017	2.4	32,900	21,955	7.1	19,606	10.0	3,637	8,030	1.200	1.130	3.0	1.5	9.1
2018	1.8	33,900	22,763	3.7	20,821	6.2	3,416	8,232	1.147	1.181	3.2	1.8	8.2
2018.2	0.4	-	1,842	△3.1	1,664	△2.8	357	8,155	1.219	1.234	1.6	1.1	8.5
3			1,869	1.4	1,668	0.2	349	8,296	1.232	1.233	1.9	1.4	8.5
4			1,874	0.3	1,696	1.7	355	8,178	1.208	1.227	1.8	1.2	8.4
5	0.4	-	1,877	0.2	1,710	0.8	313	8,161	1.169	1.181	3.0	2.0	8.2
6			1,909	1.7	1,744	2.0	292	8,043	1.168	1.167	3.6	2.0	8.2
7			1,892	△0.9	1,770	1.5	223	7,884	1.169	1.168	4.2	2.2	8.1
8	0.1	-	1,927	1.8	1,763	△0.4	328	7,863	1.160	1.155	4.3	2.1	8.0
9			1,905	△1.1	1,776	0.8	212	7,800	1.161	1.166	4.6	2.1	8.0
10			1,941	1.9	1,804	1.6	265	7,886	1.131	1.148	4.9	2.3	8.0
11	0.2	-	1,924	△0.8	1,766	△2.1	226	7,955	1.132	1.136	4.0	1.9	7.9
12			1,922	△0.1	1,766	0.0	162	8,232	1.147	1.137	3.0	1.5	7.8
2019.1			. .	. .	. .	. .	. .	8,366	1.144	1.142	3.0	1.4	7.8
2			. .	. .	. .	. .	. .	. .	1.137	1.135	. .	1.5	. .

연월중	통화 M3[5)]	금리(연%, 기말)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9)]
		초단기 여신금리	초단기 수신금리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	EURIBO[6)]	장기국채 수익률[7)]	전산업[8)]	제조업	건설업	소매판매액	신규차량 등록수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6	4.9	0.25	△0.40	0.00	△0.32	0.26	1.6	1.8	2.7	1.6	7.2	3,290.5
2017	4.9	0.25	△0.40	0.00	△0.33	0.52	3.0	3.1	2.7	2.3	5.7	3,504.0
2018	3.9	0.25	△0.40	0.00	△0.31	0.32	1.1	1.3	1.7	1.5	0.8	3,001.4
2018.2	4.2	0.25	△0.40	0.00	△0.33	0.71	△1.0	△1.9	△0.7	0.2	4.8	3,439.0
3	3.6	0.25	△0.40	0.00	△0.33	0.55	0.5	0.4	△0.2	0.7	4.8	3,361.5
4	3.8	0.25	△0.40	0.00	△0.33	0.63	△0.6	0.1	1.3	0.0	2.7	3,536.5
5	4.0	0.25	△0.40	0.00	△0.32	0.40	1.2	1.3	0.7	0.2	2.8	3,406.7
6	4.3	0.25	△0.40	0.00	△0.32	0.38	△0.6	△0.7	0.6	0.3	3.9	3,395.6
7	3.9	0.25	△0.40	0.00	△0.32	0.46	△0.8	△0.9	△2.0	△0.5	7.7	3,525.5
8	3.5	0.25	△0.40	0.00	△0.32	0.37	1.2	1.2	0.7	0.4	30.9	3,392.9
9	3.5	0.25	△0.40	0.00	△0.32	0.51	△0.7	△0.4	2.0	△0.4	△21.2	3,399.2
10	3.8	0.25	△0.40	0.00	△0.32	0.43	0.1	0.1	△1.4	0.7	△11.8	3,197.5
11	3.7	0.25	△0.40	0.00	△0.32	0.37	△1.7	△1.7	0.3	0.8	△8.9	3,173.1
12	4.1	0.25	△0.40	0.00	△0.31	0.32	△0.9	△1.0	△0.4	△1.4	△7.5	3,001.4
2019.1	3.8	0.25	△0.40	0.00	△0.31	0.19	. .	. .	. .	1.3	△2.5	3,159.4
2	. .	0.25	△0.40	0.00	△0.31	0.23	. .	. .	. .	. .	. .	3,298.3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역내교역제외 2) 계절변동조정 후, 연간은 계절변동조정 전 3)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 + SDR + IMF포지션 + 외환) 4)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5) 현금통화+요구불예금+만기 2년 이내의 정기예금+통지기간 3개월 이내의 예금+환매채+만기 2년 이내의 채무증서+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6) 3개월 만기 7) 10년 만기 8) 건설업 제외 9)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EU통계청, 블룸버그, Reuters 등

(독 일)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1]	무 역[2]				경상수지[2]	대 외 준 비 (기말)[3]	물 가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생산자[4]	소비자
	전기대비 (%)	유로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전기대비 (%)	억유로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2016	2.2	38,400	12,038	0.9	9,549	0.6	2,688	1,853	△1.6	0.5
2017	2.2	39,600	12,790	6.2	10,310	8.0	2,612	2,001	2.7	1.5
2018	1.4	40,900	. .	. .	. .	. .	2,491	1,982	2.6	1.8
2018.2	0.4	-	1,080	△2.3	885	△1.2	234	2,032	1.8	1.1
3			1,095	1.4	880	△0.6	228	2,043	1.8	1.5
4			1,093	△0.2	898	2.1	220	2,017	1.9	1.3
5	0.5	-	1,110	1.6	904	0.7	220	2,006	2.5	2.1
6			1,109	△0.1	914	1.1	247	1,948	2.9	1.9
7			1,103	△0.6	938	2.6	174	1,917	2.9	1.9
8	△0.2	-	1,104	0.1	917	△2.2	204	1,892	3.1	1.9
9			1,100	△0.4	924	0.7	194	1,865	3.2	1.9
10			1,110	0.9	931	0.8	198	1,904	3.3	2.3
11	0.0	-	1,107	△0.3	918	△1.3	189	1,911	3.3	2.1
12			1,123	1.5	929	1.2	178	1,982	2.7	1.6
2019.1			. .	. .	. .	. .	. .	2,030	2.6	1.4
2			. .	. .	. .	. .	. .	. .	. .	1.6

연월중	실업률 (%)[5]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전기대비, %)			주가지수[8]
		단기국채 수익률[6]	장기국채 수익률[7]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소 매 판매액	자본재 수 주	건설수주	
2016	4.1	△0.85	0.21	1.2	1.4	5.7	2.0	1.8	13.0	11,481.1
2017	3.8	△0.69	0.43	3.3	3.5	3.2	3.0	5.7	3.4	12,917.6
2017	3.4	△0.77	0.24	1.0	1.2	0.6	1.1	0.1	4.8	10,559.0
2018.2	3.5	△0.66	0.66	△1.3	△1.7	△3.1	△0.6	0.3	11.3	12,435.9
3	3.5	△0.75	0.50	1.4	1.4	1.4	0.5	△1.2	△16.1	12,096.7
4	3.5	△0.65	0.56	△1.2	△1.0	1.6	2.0	△3.9	1.5	12,612.1
5	3.4	△0.59	0.34	1.8	1.9	2.6	△1.7	4.7	4.2	12,604.9
6	3.4	△0.59	0.30	△0.7	△0.8	△1.7	0.7	△4.7	△3.7	12,306.0
7	3.4	△0.58	0.44	△1.7	△1.9	△6.0	△0.2	△1.9	1.6	12,805.5
8	3.4	△0.58	0.33	0.6	0.4	2.5	△0.2	4.2	△1.4	12,364.1
9	3.4	△0.56	0.47	△0.5	△0.1	2.3	△0.2	0.3	3.7	12,246.7
10	3.3	△0.82	0.39	△0.6	△0.5	△1.2	0.4	0.7	0.4	11,447.5
11	3.3	△0.72	0.31	△1.4	△1.5	△0.5	1.6	2.2	6.1	11,257.2
12	3.3	△0.77	0.24	0.2	0.2	△4.1	△3.1	△2.5	13.2	10,559.0
2019.1	3.2	△0.53	0.15	. .	. .	. .	3.3	. .	. .	11,173.1
2	. .	△0.52	0.18	. .	. .	. .	. .	. .	. .	11,515.6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통계청 자료 2) 계절변동 조정 후, 경상수지는 조정 전 3) 연방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 + 외환 + SDR + IMF포지션 + 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4) 공산품 기준 5) EU 통계청 기준, 계절변동조정 후 6) 3개월 만기

7) 10년 만기 8) DAX Index (1987.12.30 = 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영 국)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1]	무역				경상수지	대외준비[2](기말)	대미달러 환율(U$/£)[3]		실업률[4]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전기대비(%)	유로	억파운드	전기대비(%)	억파운드	전기대비(%)	억파운드	억달러	기말	평균	
2016	1.8	36,600	2,991	4.3	4,317	6.7	△1,028	1,350	1.2336	1.3551	4.9
2017	1.8	35,400	3,387	13.3	4,758	10.2	△684	1,508	1.3512	1.2887	4.4
2018	1.4	36,000	3,500	3.3	4,888	2.7	. .	1,727	1.2757	1.3349	4.1
2018.2	0.1	-	282	△4.6	376	△7.4	△178	1,542	1.3760	1.3962	4.2
3			285	1.3	403	7.1		1,576	1.4015	1.3974	4.2
4			277	△3.1	398	△1.1		1,548	1.3769	1.4068	4.2
5	0.4	-	286	3.2	405	1.8	△200	1,585	1.3298	1.3459	4.2
6			298	4.2	403	△0.5		1,555	1.3207	1.3284	4.0
7			294	△1.1	408	1.3		1,531	1.3124	1.3168	4.0
8	0.6	-	295	0.2	425	3.9	△265	1,584	1.2961	1.2877	4.0
9			299	1.3	408	△3.9		1,538	1.3028	1.3056	4.1
10			300	0.4	422	3.4		1,574	1.2765	1.3007	4.1
11	0.2	-	298	△0.8	422	0.0	-	1,672	1.2751	1.2897	4.0
12			291	△2.3	412	△2.3		1,727	1.2757	1.2662	4.0
2019.1			. .	. .	. .	. .		1,751	1.3100	1.2899	. .
2			. .	. .	. .	. .		. .	1.3261	1.3011	. .

연월중	물가		통화	금리(기말, 연%)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주가지수[10]
	생산자[5]	소비자	M4[7]	정책금리[8]	장기국채수익률[9]	전산업	제조업	소매판매	기업투자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2016	0.5	0.7	6.2	0.25	1.77	1.0	0.4	4.6	△0.2	7,142.8
2017	3.4	2.7	3.8	0.50	1.74	1.8	2.5	2.1	1.5	7,687.8
2018	2.9	2.5	2.0	0.75	1.75	0.7	0.9	2.8	△0.9	6,728.1
2018.2	2.6	2.7	4.2	0.50	1.90	0.0	△0.4	0.3	△0.6	7,231.9
3	2.5	2.5	2.3	0.50	1.69	0.0	△0.4	△0.4		7,056.6
4	2.5	2.4	1.2	0.50	1.81	△0.4	△0.5	1.0		7,509.3
5	3.0	2.4	1.9	0.50	1.69	△0.7	0.3	1.7	△0.5	7,678.2
6	3.3	2.4	1.7	0.50	1.72	0.8	1.0	△0.5		7,636.9
7	3.1	2.5	2.0	0.50	1.75	0.5	△0.3	1.2		7,748.8
8	3.0	2.7	1.1	0.75	1.75	△0.1	△0.3	0.3	△1.2	7,432.4
9	3.1	2.4	0.8	0.75	1.89	△0.5	△0.1	△0.4		7,510.2
10	3.3	2.4	1.0	0.75	1.81	△0.3	△0.5	△0.4		7,128.1
11	3.0	2.3	0.8	0.75	1.95	△0.3	△0.1	1.1	△1.4	6,980.2
12	2.4	2.1	2.0	0.75	1.75	△0.5	△0.7	△1.0		6,728.1
2019.1	2.1	1.8	0.5	0.75	1.65	. .	. .	1.2		6,968.9
2	. .	. .		. .	0.75	1.75	. .	. .		7,074.7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EU 통계청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3) Reuters 기준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 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제조업 산출물가 기준 6) 화폐발행액+은행의 자금결제용 영란은행 예치금, 평잔기준, 연간은 당해년도 12월의 전년동월대비 7)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요구불예금+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정기예금(CD 포함)+(민간보유 주택대출조합의 주식 예금 및 CD-주택대출조합보유 은행예금, CD 및 현금), 말잔기준 8) 영란은행 RP 금리 9) 20년만기 10) FTSE 100 Index(1984.1.3=1,000), 기말기준

자료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대 만)

연월중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 수출(FOB)		무역 수입(CIF)		경상수지	대외준비[1] (기말)	대미달러 환율[2] (NT$/U$)		실업률 (%)
	전년동기 대비(%)	미달러	백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백만 미달러	전년동기 대비(%)	백만 미달러		기말	평균	
2016	1.5	22,592	280,510	△1.7	230,980	△2.6	72,779	434,200	32.44	32.23	3.9
2017	3.1	24,408	317,490	13.2	259,580	12.4	82,839	451,500	29.66	30.41	3.8
2018	2.6	25,004	336,110	5.9	287,180	10.6	68,262	461,780	30.56	30.13	3.7
2018.2	3.2	-	22,370	△1.2	19,460	0.0	19,662	456,720	29.33	29.23	3.7
3			29,990	16.7	23,990	10.4		457,190	29.08	29.19	3.7
4			26,730	10.0	22,580	4.9		457,130	29.62	29.37	3.6
5	3.3	-	29,120	14.2	24,710	12.0	16,350	457,280	29.97	29.85	3.6
6			28,250	9.4	23,040	15.4		457,120	30.46	30.08	3.7
7			28,360	4.7	26,120	20.3		458,500	30.57	30.54	3.8
8	2.4	-	28,300	1.9	23,770	7.8	13,602	459,880	30.72	30.66	3.9
9			29,620	2.6	25,290	13.9		460,440	30.45	30.71	3.8
10			29,570	7.3	26,210	17.6		460,180	30.57	30.84	3.8
11	1.8	-	27,810	△3.5	23,160	0.9	18,648	461,380	30.85	30.80	3.7
12			28,610	△3.0	23,890	2.2		461,780	30.56	30.78	3.7
2019.1			27,300	△0.3	26,390	6.8		463,040	30.69	30.80	3.6
2			.	.		.			30.82	30.79	.

연월중	물가[3] 생산자	물가[3] 소비자	노동생산성[4]	통화[5] M1B	통화[5] M2	금리(기말, 연%) 재할인율	금리(기말, 연%) 프라임레이트[6]	산업생산 전산업	산업생산 제조업	소매판매	주가지수[7]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2016	△3.0	1.4	5.7	6.0	4.1	1.375	2.631	1.5	2.0	1.9	9,253.50
2017	0.9	0.6	2.1	4.0	3.6	1.375	2.630	3.7	4.4	1.1	10,642.86
2018	3.7	1.4	. .	5.7	3.1	1.375	2.630	3.7	4.0	3.4	9,727.41
2018.2	△0.2	2.2	10.7	5.2	3.8	1.375	2.631	△4.7	△5.2	15.7	10,815.47
3	0.6	1.6	5.3	5.5	3.6	1.375	2.631	5.9	6.1	5.2	10,919.49
4	2.5	2.0	6.9	5.6	3.6	1.375	2.631	8.3	8.9	3.6	10,657.88
5	5.6	1.8	0.7	6.4	3.7	1.375	2.631	7.4	7.6	5.3	10,874.96
6	6.7	1.4	13.2	5.9	4.1	1.375	2.631	0.0	0.3	4.9	10,836.91
7	7.0	1.8	0.9	5.8	3.7	1.375	2.635	4.7	5.3	3.6	11,057.51
8	6.8	1.5	3.3	5.2	3.4	1.375	2.635	1.1	1.6	0.6	11,063.94
9	6.3	1.7	10.9	5.2	3.3	1.375	2.635	1.7	2.0	3.0	11,006.34
10	5.7	1.2	△4.2	5.3	3.4	1.375	2.631	8.8	9.8	0.9	9,802.13
11	2.9	0.3	1.9	5.1	3.1	1.375	2.631	2.6	2.7	0.6	9,888.03
12	0.8	△0.1	. .	5.7	3.1	1.375	2.631	△1.1	△1.2	2.0	9,727.41
2019.1	0.8	0.2	. .	6.6	3.1	1.375	2.632	△1.9	△1.9	7.1	9,932.26
2		.	.	.	.	1.375	2.630	.	.	.	10,389.17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고시환율 3)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4) 제조업 5) M1B = 현금통화 + 당좌예금 + 보통예금 + 보통저축예금, M2 = M1B + 정기예금 + 외화예금 + 우편예금 + 환매거래잔액 + 외국인보유 현금, 평잔기준 6) 대만은행 7) 가권지수(1966 = 100), 기말기준

자료 : 금융통계월보(대만 중앙은행),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
대만행정원 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 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 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십억달러)

기간중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2006	780	1,106	1,315	2,774	2,321	3,005	949	396	1,944	4,530	1,012
2007	947	1,396	1,465	3,571	2,661	3,445	1,239	470	2,206	4,515	1,123
2008	1,054	1,695	1,549	4,604	2,932	3,770	1,224	559	2,402	5,038	1,002
2009	997	1,668	1,371	5,122	2,697	3,427	1,365	578	2,191	5,231	902
2010	1,250	2,208	1,613	6,066	2,648	3,423	1,708	755	2,129	5,700	1,094
2011	1,511	2,614	1,789	7,522	2,864	3,761	1,823	893	2,278	6,157	1,202
2012	1,566	2,464	1,824	8,570	2,685	3,546	1,828	919	2,074	6,203	1,223
2013	1,516	2,472	1,843	9,635	2,812	3,754	1,857	917	2,131	5,156	1,306
2014	1,455	2,456	1,799	10,535	2,857	3,905	2,039	891	2,155	4,850	1,411
2015	1,233	1,800	1,560	11,226	2,439	3,383	2,102	861	1,834	4,395	1,383
2016	1,265	1,793	1,536	11,222	2,466	3,497	2,274	932	1,860	4,950	1,415
2017	1,380	2,055	1,653	12,015	2,588	3,701	2,602	1,015	1,939	4,873	1,540
2018	1,428	1,909	1,734	13,457	2,795	4,029	2,690	1,005	2,087	5,071	1,656

기간중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006	975	734	345	1,064	376	1,266	421	431	551	2,701	13,815
2007	1,053	849	429	1,396	416	1,481	488	480	675	3,085	14,452
2008	1,110	952	534	1,785	520	1,643	515	554	765	2,935	14,713
2009	900	870	440	1,314	429	1,503	430	542	644	2,403	14,449
2010	1,058	848	479	1,638	528	1,434	489	583	772	2,455	14,992
2011	1,180	905	529	2,052	671	1,489	564	700	832	2,636	15,543
2012	1,201	839	501	2,210	736	1,337	544	668	874	2,677	16,197
2013	1,274	877	524	2,297	747	1,362	579	689	950	2,755	16,785
2014	1,315	892	545	2,064	756	1,379	574	710	934	3,036	17,522
2015	1,171	766	477	1,368	654	1,198	498	680	859	2,897	18,219
2016	1,078	784	471	1,285	645	1,238	512	670	863	2,669	18,707
2017	1,151	832	525	1,578	687	1,314	536	679	852	2,628	19,485
2018	1,199	910	549	1,576	770	1,437	555	709	714	2,809	20,513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10)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

(달러)

기간중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2006	37,829	5,906	40,440	2,111	37,794	37,019	24,857	837	1,765	33,340
2007	45,042	7,369	44,599	2,703	43,060	42,531	28,900	1,077	2,064	37,685
2008	49,084	8,850	46,661	3,467	47,191	46,681	32,198	1,049	2,418	40,689
2009	45,618	8,617	40,831	3,838	43,176	42,576	29,819	1,153	2,465	36,850
2010	56,357	11,293	47,513	4,524	42,182	42,641	26,973	1,423	3,178	35,658
2011	67,105	13,243	52,144	5,583	45,410	46,853	25,897	1,498	3,689	38,003
2012	68,321	12,369	52,577	6,329	42,371	44,089	22,172	1,482	3,745	34,470
2013	65,064	12,294	52,497	7,081	44,145	46,545	21,805	1,486	3,684	35,220
2014	61,547	12,112	50,702	7,702	44,616	48,219	21,727	1,610	3,534	35,457
2015	51,404	8,803	43,560	8,167	37,938	41,415	18,018	1,639	3,369	30,163
2016	51,861	8,701	42,418	8,116	38,200	42,461	17,876	1,749	3,604	30,662
2017	55,693	9,896	45,095	8,643	39,933	44,769	18,637	1,976	3,876	31,997
2018	56,698	9,127	46,733	9,633	42,931	48,670	20,311	2,016	3,789	34,349
기간중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대만	터키	영국	미국
2006	35,464	20,888	8,997	7,421	5,639	28,530	16,985	7,899	44,404	46,214
2007	35,342	23,061	9,589	9,755	6,124	32,748	17,781	9,563	50,316	47,869
2008	39,453	20,431	9,973	12,472	5,802	35,725	18,103	10,692	47,469	48,283
2009	41,014	18,292	7,975	9,181	5,926	32,413	16,960	8,882	38,601	47,008
2010	44,674	22,087	9,258	11,445	7,381	30,803	19,262	10,476	39,122	48,401
2011	48,169	24,080	10,205	14,321	8,083	31,869	20,912	11,141	41,650	49,816
2012	48,633	24,359	10,261	15,411	7,574	28,584	21,270	11,553	42,023	51,537
2013	40,490	25,890	10,764	15,997	6,908	29,238	21,888	12,395	42,981	53,032
2014	38,156	27,811	10,981	14,355	6,509	29,687	22,639	12,022	47,004	54,952
2015	34,612	27,105	9,674	9,510	5,803	25,822	22,374	10,915	44,495	56,718
2016	38,989	27,608	8,815	8,924	5,316	26,677	22,541	10,817	40,658	57,815
2017	38,449	29,938	9,319	10,956	6,180	28,359	24,292	10,537	39,800	59,792
2018	40,106	32,046	9,614	10,950	6,560	31,060	25,534	8,716	42,261	62,518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10)

라. 국제금리, 국제원유 및 1차 상품가격(기말)

	금 리 (%)			현물유가 (달러/BBL)		Reuter 지 수 ('31.9.18=100)
	LIBOR$ (3개월물)	미우대금리	T/Bill (3개월)	Dubai	Brent	
2015	0.61	3.50	0.15	32.13	35.75	2,234.58
2016	1.00	3.75	0.51	53.99	55.41	2,578.71
2017	1.69	4.50		63.77	66.82	2,371.84
2018	2.81	5.50		52.35	53.17	2,371.63
2016.6	0.65	3.50	0.26	46.83	48.42	2,396.12
7	0.76	3.50	0.27	38.68	41.01	2,365.34
8	0.84	3.50	0.33	44.83	46.18	2,431.30
9	0.85	3.50	0.28	45.37	47.71	2,452.59
10	0.88	3.50	0.35	45.83	46.69	2,550.01
11	0.93	3.50	0.49	45.67	49.86	2,578.32
12	1.00	3.75	0.51	53.99	55.41	2,578.71
2017.1	1.03	3.75	0.52	53.00	54.68	2,655.67
2	1.06	3.75	0.53	54.15	55.56	2,629.24
3	1.15	4.00	0.76	51.02	52.71	2,544.30
4	1.17	4.00	0.81	50.19	50.88	2,454.10
5	1.21	4.00	0.97	49.48	50.08	2,381.82
6	1.30	4.25	1.03	46.60	48.23	2,388.79
7	1.31	4.25	1.09	51.09	52.17	2,419.99
8	1.32	4.25	0.99	49.67	52.41	2,388.50
9	1.33	4.25	1.06	55.82	56.53	2,407.96
10	1.38	4.25	-	58.79	60.94	2,441.94
11	1.49	4.25	-	60.86	62.78	2,405.62
12	1.69	4.50	-	63.77	66.82	2,371.84
2018.1	1.78	4.50	-	65.75	68.83	2,348.73
2	2.02	4.50	-	63.29	64.46	2,353.21
3	2.31	4.75	-	66.09	69.13	2,293.67
4	2.36	4.75	-	70.73	74.87	2,294.16
5	2.32	4.75	-	74.28	77.13	2,329.29
6	2.34	5.00	-	75.56	78.60	2,335.29
7	2.34	5.00	-	72.85	73.07	2,327.04
8	2.32	5.00	-	75.16	77.15	2,308.80
9	2.40	5.25	-	79.99	82.95	2,318.12
10	2.56	5.25	-	74.90	73.86	2,367.41
11	2.74	5.25	-	58.57	58.44	2,378.12
12	2.81	5.50	-	52.35	53.17	2,371.63
2019.1	2.74	5.50	-	61.37	60.91	2,390.82
2	2.62	5.50	-	65.64	65.79	2,378.26

주 : 2015.1.2.일자로 석유공사에서 WTI(현물) 통계중지, 2017.10.19.일자로 국제금융센터에서 T/Bill 통계중지

本書의 發刊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人士

박환조(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안경우(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요균(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채윤(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김병철(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엄태균(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한은파견))
손정혁(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정현경(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이성준(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함진우(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신채용(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
오다은(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최정빈(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신태섭(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재우(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이용준(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성진규(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김연대(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김문수(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이상용(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
이숙경(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이해인(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
전유석(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정다운(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박근형(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이수현(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김선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김낙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오성태(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우형(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정혜경(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성기웅(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정지운(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김도익(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장현중(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이정아(기획재정부 지역금융팀)
배경화(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강승민(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차현종(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권오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서지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김영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이현우(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백경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조진희(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현수(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혜영(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전준희(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원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本書의 發刊을 위하여 協助하여 주신 人士

방우리(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이진수(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배현중(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조문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안재영(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송재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박준영(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종락(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성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유병하(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한종건(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김준하(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류재현(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양성철(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
이지우(기획재정부 핵심사업평가팀)
한시겸(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조문경(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허필중(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김명환(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신동선(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최경운(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강중호(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유동석(기획재정부 국채과)
권나림(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김희준(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김경수(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송윤주(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차한원(기획재정부 인사운영과)
석상훈(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
윤지영(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서준익(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이상윤(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심수현(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어지환(기획재정부 다자경제협력팀)
이주영(기획재정부 다자경제협력팀)
김종성(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이세환(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
박중민(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김민진(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박승환(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
김은지(기획재정부 국제통화과)
전종현(기획재정부 국제통화과)
이명진(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김연태(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문성호(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이상후(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김재오(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정동현(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 경제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 전화 : (044) 215-2736
- 경제백서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 경제백서

2019년 1월 일 인쇄
2019년 1월 일 발행

편집겸 발행인 기 획 재 정 부

인쇄 :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063)714-3967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www.moef.go.kr